

2001 연구보고서 230-8

#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방안

## Gender Sensitive Analysis in Labor Statistics

연구책임자 : 문 유 경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주 재 선 (본원 연구원)

이 성 립 (울산대학교)

## 발 간 사

노동통계의 주요 목적은 노동시장내의 다양한 참가자들의 규모와 구조, 특성은 물론 이들의 변화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통계는 노동시장 내 모든 관계자의 관점을 수용하고 서로 다른 노동환경을 상세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계의 생산과정은 사회실체의 어느 한 부분만을 부각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단순화과정과 부호화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통계의 특성은 통계의 생산과정에 대해 성 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남자는 일터,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취업한 여성 중 비공식부문에서 혹은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현실이, 여성취업자를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하거나, 측정방법과 조사비용의 한계에 의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노동통계가 노동시장에 있는 남녀의 규모와 구조 및 특성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통계의 주제선정에서부터, 분류, 측정방법,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성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참여실태를 정확하고 충분히 기술할 수 있는 통계의 생산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가 노동통계의 개선을 이루는데 일조함으로써 관련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 10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장 하 진

## 연구요약

본 연구의 출발점은 노동통계가 일하는 여성,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의 규모와 상태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이다.

통계란 있는 현상을 수량화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작업이다. 노동통계의 주요 목적은 노동시장내의 다양한 참가자들의 규모와 구조, 특성은 물론 이러한 것들의 변화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을 위한 정보일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분석, 고용 및 사회문제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의 입안, 실행, 감독, 평가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통계는 노동시장 내 모든 관계자의 관점을 수용하고 서로 다른 노동환경을 상세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통계의 생산과정은 사회실체의 어느 한 부분만을 부각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단순화과정과 부호화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때 부각 혹은 무시되는 부분의 결정은 설명대상의 우선 순위와 목적, 사용 가능한 자료수집의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노동통계를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양성의 노동상태가 평등한 관점에서 충분히 반영되는지, 왜곡 혹은 무시,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통계생산과정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간과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취업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비핵심적인 부문이나 비공식부문에서 혹은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측정방법이나 조사비용의 한계에 의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노동통계에서 여성의 노동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과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유엔세계여성대회와 UNDP, ILO, UNSD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노동통계가 여성의 노동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무급노동, 농업부문, 도시비공식부문 여성노동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여성의 실업과 불완전고용의 측정이 불확실하다는 인식하에 정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실업률을 산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노동통계의 주제선정과 개념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노동’의 범위와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분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관련정보의 수집과 분석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조사방법, 설문지, 노동력 접근법에서 발생가능한 성적 편견 혹은 왜곡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제5장은 통계자료의 발간시 성별분리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제6장은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목 차

발 간 사

연구요약

<b>제1장. 서론</b> .....	1
1.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
3.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6
<b>제2장. 성 인지적 노동통계의 전개</b> .....	7
1.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성 인지적 노동통계의 전개	9
가. UN과 성 인지적 노동통계	9
나. INSTRAW의 연구와 훈련	11
다. ILO와 성 인지적 노동통계	12
라. 국제기구의 보수 및 무보수노동 통계의 개발과 지원	14
2. 선진외국의 성 인지적 노동통계 정책	19
3. 국내 성 인지적 노동통계 정책 현황	22
<b>제3장. 주제 및 정의의 성 인지적 분석</b> .....	27
1. 주제의 선택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29
2. 노동통계의 정의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34
가. 경제활동의 개념 또는 ‘노동’의 범위	35
나. 노동력의 규모와 구조	38

**제4장. 노동력 측정방법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63**

- 1. 조사방법의 특징 및 젠더 쟁점 • 65
  - 가. 기업체 조사 • 66
  - 나. 행정기록 • 69
  - 다. 가구조사 • 70
  - 라. 특별조사 • 72
- 2. 설문지 • 74
  - 가. 설문지 구성과 젠더 쟁점 • 75
  - 나. 가구주 중심조사와 조사원 및 응답자 태도 • 81
- 3. 노동력조사의 젠더쟁점 • 82
  - 가. 노동력 조사의 접근법 비교 • 82
  - 나. 미국 및 일본의 노동력조사 • 89
  - 다. 국내 노동력조사 • 96
- 4. 노동력 측정에서의 성 인지적 개선 사항 • 130
  - 가. 통계청 • 131
  - 나. 노동부 • 142

**제5장. 통계자료의 발간과 보급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 145**

- 1. 통계자료 발간의 젠더 쟁점 • 147
- 2. 국내 노동통계 발간에 대한 분석 • 150
  - 가. 통계청 • 151
  - 나. 노동부 • 16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69

- 1. 결론 • 171
  - 가. 노동통계의 주제 • 171
  - 나. 용어의 정의 • 172
  - 다. 조사방법 • 173
  - 라. 가구조사의 설문지 구성과 조사과정 • 173
  - 마. 성별 분리 통계 작성과 발표 • 174
- 2. 정책제언 • 177
  - 가. 제도의 개선 • 177
  - 나. 기존 조사의 개선사항 • 178
  - 다. 통계생산을 위한 추가 조사와 연구 • 181

**참고문헌** ..... 183

**부 록** ..... 185

- 1. 「2000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 187
- 2.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경제활동) • 188
- 3. 「고용구조조사」 조사표 • 189
- 4.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조사표 • 194
- 5. 「매월노동통계조사」 조사표 • 195
- 6. 「임금구조기본통계개인조사」 조사표 • 197

## 표 목 차

<표 II-1> UN 세계여성회의 중 성 인지적 노동통계 관련 내용 .....	10
<표 II-2> ESCAP이 주관한 보수 및 무보수노동 프로젝트 관련 국제회의 ..	19
<표 III-1> 통계청 노동통계의 취업 주제 .....	29
<표 III-2> 노동부 노동통계의 취업주제 .....	29
<표 III-3>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통계 .....	30
<표 III-4> 성별 종사상의 지위별 종업원 규모별 취업자수(시부) .....	33
<표 III-5> 국가의 생산과 고용을 측정하는 생산범위 .....	36
<표 III-6> 상품 및 용역생산에 관한 SNA의 개념에 따른 시장의 활동의 실례 .....	37
<표 III-7>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결과 비교 .....	43
<표 III-8> 산업별 여성취업자와 유업자수 비교 .....	44
<표 III-9> 종사상의 지위별 여성취업자수와 유업자수 비교 .....	45
<표 III-10> 조사주기간동안 직장에 없던 근로자의 성별 비율(전체 근로자 중) .	49
<표 III-11> 한국의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규모추정 .....	50
<표 III-12> 성별 일시휴직자의 직종별 분포 .....	51
<표 III-13>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유럽공동체 15개 국가)(1997) ...	53
<표 III-14> 미국의 성별, 인종별 실망실업자와 실업자 비율(16세이상)(1984) .	54
<표 III-15> 미국의 6개의 대체 실업률 .....	55
<표 III-16> 실업관련 조사문항 개편내용 .....	56
<표 III-17> 성별 공식 실업률과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 .....	57
<표 III-18> 구직활동기간별 실업률 .....	58
<표 III-19> 주요 국의 비자발적 시간제의 성별 구성비(1993) .....	59
<표 III-20> 성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 .....	60
<표 IV-1> 기업체 기록의 문제점 .....	67
<표 IV-2> 노동력 접근법의 특징 및 장·단점 .....	88
<표 IV-3> 미국 신CPS 개편내용 .....	93
<표 IV-4> 일본의 노동력 조사 .....	94

<표 IV-5> 인구주택총조사 연혁 .....	98
<표 IV-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요변화 .....	101
<표 IV-7> 조사항목의 변화내용 .....	102
<표 IV-8> 고용구조조사 측정 개요 .....	104
<표 IV-9> 주요 노동력 조사의 특징 .....	105
<표 IV-10> 지역 및 성별 경제활동참가율(혹은 유업률) .....	106
<표 IV-11> 성 및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109
<표 IV-12> 산업별 취업자수 .....	111
<표 IV-13> 성 및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유업자) 분포 .....	112
<표 IV-14> 노동부 기업체조사의 특징 .....	116
<표 IV-15> 우리나라 노동력조사의 취업자(유업자) 판별 기준 및 최초질문 .....	120
<표 IV-1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분류 .....	122
<표 IV-17> 활동상태, 혼인상태, 종사상지위 및 성별 유업자 분포(1997) .....	124
<표 IV-18> 노동부 통계조사의 질문항목 비교 .....	128
<표 IV-18>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시간과 36시간미만 일한 이유의 질문순서와 답항 수정 .....	138
<표 IV-19>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망실업자에 대한 질문 추가 및 답항의 수정 .....	140
<표 V-1> 노동통계 발간의 성 인지적 쟁점 .....	149
<표 V-2> 국내 노동력조사와 발간자료 .....	151
<표 V-3>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발간사항 .....	152
<표 V-4> 경제활동인구조사항목과 답변범주(1) .....	154
<표 V-5> 경제활동인구조사항목과 답변범주(2) .....	155
<표 V-6> 경제활동인구연보 발간사항 .....	155
<표 V-7>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추가분석이 필요한 통계 .....	156
<표 V-8> 고용구조조사 조사항목과 범주 .....	158
<표 V-9> 고용구조조사보고서 발간사항 .....	160
<표 V-10>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의 조사항목 .....	162
<표 V-11>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발간 통계표 .....	164
<표 V-1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조사항목 .....	165
<표 V-13>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조사항목과 답변분류 .....	166

## 그림 목 차

<그림 Ⅲ-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상태별 분류와 정의 .....	41
<그림 Ⅲ-2> 고용구조조사의 상태별 분류와 정의 .....	42
<그림 Ⅳ-1> 노동력접근법의 분류체계 .....	86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
3.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6

---

## 1.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노동통계의 주요 목적은 노동시장내의 다양한 참가자들의 규모와 구조, 특성은 물론 그것들의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을 위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분석, 고용 및 사회문제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의 입안, 실행, 감독, 사정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통계는 가능한 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 내 모든 관계자의 관점을 수용하고 서로 다른 노동환경을 상세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계의 생산과정은 사회실체 중 어느 한 부분만을 부각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단순화과정과 부호화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부각 혹은 무시되는 부분의 결정은 설명대상의 우선 순위와 목적에 의해 좌우되며, 또한 사용 가능한 자료수집의 방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자료수집방법이 여러 형태의 한계에 부딪치고 측정의 우선 순위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사회의 본질적 인식에 보다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노동통계는 일과 실업상태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그대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노동통계는 핵심적인 고용 즉 공식부문의 정규적 고용과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실업현상을 규명하고 성격을 파악하는 데 성공적인 반면 그렇지 못한 부문 즉 비공식 부문이나 비정규일자리 등에서는 불충분하게 설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통계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모든 노동시장의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심부문에서 제외된, 무시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된 노동환경의 현실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수행업무의 종류, 수입 등 많은 점에 있어 남성근로자와 구별된다. 취업한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부문에 혹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하위 직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전세계적으로 남자의 6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내의 차별관행

#### 4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방안

과 가사노동과 육아 등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경제활동 참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핵심분야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통계의 주요 관심부문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통계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게 되면, 사용자는 남성근로자와는 다른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위치와 제약을 이해, 분석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평등을 위한 포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근로자 간의 차이와 유사점을 가능한 한 정확히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곧 노동통계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 이를 통해 사용자 및 노동시장 분석가, 정책 입안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보다 완벽해질 수 있으며, 결국 성 인지적 관점에서 생산자와 사용자들이 자료의 장단점을 평가한다면 자료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개선방법에 관한 해답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노동통계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UN과 IL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의 국가 경제 기여도가 남성에 비해 동등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통계는 국가경제의 현상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지하고, 부당한 인식,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이 초래한 남녀간 사회적 불평등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1995년의 세계여성북경대회에서는 여성의 노동상태를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 노동통계에서 향후 생산되어야 할 주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1998년의 ILO에서는 '성 인지적 관점을 강화하는 노동통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존의 통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분석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의 노동통계를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분석이란 첫째, 노동통계가 노동시장내의 남성과 여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충분히 보여주는가, 둘째, 기존의 통계에서 다루지 못한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일반적으로 노동통계는 가구, 기업체의 전수 혹은 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되거나, 공공기관의 행정절차에서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구성된다. 그러나 생산방법을 불문하고 통계과정은 1) 개념과 분류 정하기 2) 관련정보 수집, 분석하기 3) 자료발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이러한 세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각 단계별로 성 인지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제 2장에서는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과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들고 있다. 제 3장에서는 노동통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통계용어의 정의에 대해 성 인지적 분석을 적용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측정방법인 조사방법, 설문지구성 등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 5장은 생산된 통계자료의 발간 및 보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 차별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 6장에서는 제 2장부터 제 5장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성 평등한 관점에서의 노동통계산출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통계분석과 내용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문헌은 ILO(국제노동기구), CEDAW(유엔여성지위위원회) 등의 국제기구에서 출간한 문헌과 통계자료들과 각국의 통계국 또는 여성부 등에서 발간하고 있는 정책자료들이며, 국내의 정부 인정 공식 통계생산기준들과 통계결과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내용분석은 주로 조사방법이나 조사표, 조사지침서 등 측정방법의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 3.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는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노동통계에 대해 취급주제, 정의, 측정, 발표 등 전 생산과정에 걸쳐 성 인지적 분석을 함으로써 향후 노동통계의 성 평등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동력 규모와 구조파악을 위한 통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전개되어, 노동시장내의 임금이나 후생복지 등의 근로조건이나 지위파악을 위한 통계에 대해 성 인지적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성 인지적 노동통계의 전개

---

1.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성 인지적 노동통계의 전개	9
2. 선진외국의 성 인지적 노동통계 정책	19
3. 국내 성 인지적 노동통계 정책 현황	22

---

## 1.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성 인지적 노동통계의 전개

### 가. UN과 성 인지적 노동통계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분석의 출발은 여성이 유급, 무급노동 혹은 시장, 비시장노동의 상당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불리함이 연유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인식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제1회 「세계 여성의 해」 멕시코세계회의이다. 이 회의의 행동강령 제 161절에서 제173절까지는 ‘조사연구, 자료수집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제163절은 여성의 경제활동의 공헌에 대한 과소평가를 언급하고 있고, 제164절은 가구주의 개념의 문제점에 대해, 167절은 모든 조사자료의 성별 발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1)</sup>

세계여성회의의 후에 제 30회 UN 총회는 1976년부터 1985년까지를 「UN여성 10년: 평등, 발전, 평화」의 기간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중간시점인 1980년에 유엔여성 10년의 중간 점검과 후반기 계획을 목표로 코펜하겐에서 세계여성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행동프로그램 역시 여성에 관한 통계의 개선이 한층 구체적으로 촉진되어야 한다는 확인을 하고 있다. 특히 가정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분석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고용과정, 예를 들어 평가, 노동, 일, 고용, 사회적 생산성, 가구, 가족 등에 대한 조사기법과 개념들을 재검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2)</sup>

1985년의 나이로비 세계회의의 여성발전전략 역시 SNA개정을 의식하고 국민경제 계산과 GNP에 여성의 경제적 공헌을 반영시킬 것을 권하는 내용이 있다.

1995년에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 제 206절에서 209절까지는 성 인지적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와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에 대해 종합

1) UN(1995), *The Advancement of Women 1945-1995* (New York: UN), pp. 191-192.

2) *ibid.*, pp. 253-254, 문유경, 「성 인지적 통계자료 구축」, (서울: 여성특별위원회, 1999) pp. 9-10에서 재인용.

적이고 체계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비공식 부문의 참여를 포함한 경제에 여성과 남성의 완전한 기여에 대한 자료수집의 개선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계정에 포함된 무보수노동과 포함되지 않는 무보수노동 모두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발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적절한 측정 방법으로 시간사용 연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과소평가하는 측정방법을 개선할 것을 밝히고 있다(<표 II-1> 참조).

<표 II-1> UN 세계여성회의 중 성 인지적 노동통계 관련 내용

### 1. 멕시코 세계여성 행동계획(1975년)

제 163절 많은 여성들은 가사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가사는 어디에서나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통계상 경제활동인구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또 다른 대규모 여성집단은,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들의 상황이 주의깊게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주부로 잘못 분류되고 있다. 이런 일은 특히 가사노동을 하면서 추가로 자가수공업, 가내공업 또는 농업의 경우 무급 가족노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발생한다. 더욱이 실업통계는 경제활동인구의 일부로 인식되지 않는 여성(예를 들어 여성은 주부나 부인으로 분류된다)을 생략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성은 실제로 취업이 가능하고 취업을 원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 2. 코펜 하겐 세계회의 사업계획(1980)

제95절 현재 여성들이 발전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해 왔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또한 여성이 발전과정에 실제로 끼친 공헌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국가적·지역적 지표가 개발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중략.. 총국민생산에 무보수노동의 반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보수노동에 화폐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체계가 고안되어야 한다.

### 3. 나이로비 세계회의의 여성발전전략(1985)

제120절 모든 발전분야에 여성이 기여한 보수, 무보수의 공헌을 인정하고 이를 적절히 측정하여 국가회계, 경제통계, 국민총생산 산출에 반영시켜야 한다. 농업, 식량생산, 출산, 가사노동에 기여한 여성의 무보수 공헌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4. 제4차 세계여성 회의 북경행동강령(1995)

제206절

- (e) 비공식 부문의 참여를 포함하여 경제에 여성과 남성의 완전한 기여에 대한 자료 수집을 개선한다.
- (f) 모든 형태의 일과 고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지식을 다음 사항에 의해 개발한다.
- (i) 유엔체제의 국가계정에 이미 포함된 무보수 노동 즉 농업 특히 자급농업과 기타 비시장 생산활동 형태의 노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개선한다.
  - (ii) 현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과소평가하는 추정을 개선한다.
  - (iii)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고 남녀간의 보수 및 무보수 노동의 불평등한 분포를 가시화 한다는 관점에서 별도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러나 주요국가 계정과는 일치하는 종속 혹은 기타공식 계정에 가능한 반영을 위하여 무양가 즉 돌보기와 음식 준비와 같은 국가계정과 관계없는 무보수 노동의 가치를 계량적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적절한 포름에서 개발한다.
- (g) 보수 및 무보수 노동에서 남녀간의 차이에 민감한 시간사용 통계를 위한 국제 활동분류를 개발하고 성별분리 자료를 수집한다. 국가차원에서 국가적 강제를 조건으로 하여:
- (i) 보수 혹은 기타 무보수 활동과 동시에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여 계량적 측면에서 무보수 노동을 측정하기 위한 정기 시간사용 연구를 이행한다.
  - (ii) 계량적 측면에서 국가계정과 관계가 없는 무보수 노동을 측정하고 종속 혹은 주요 국가계정과는 분리되어 있으나 그와 일치하는 기타공식계정에 이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한다.

#### 나. INSTRAW의 연구와 훈련

UN의 세계 여성 회의에서 제시한 노동통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토대로 UN의 여성관련 기구와 노동관련 기구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유엔의 여성향상을 위한 연구훈련기관인 INSTRAW에서는 1986년 10월에 「여성의 소득과 비공식부문에의 참여와 생산의 측정에 관한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하였다.<sup>3)</sup> 이 회의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큰 개발도상국의 비공식 부문의 활동에 대한 규정과 위성국민계정

(SNA)의 생산경계의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물건은 행위 등 여성의 활동과 생산을 보충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동 기관에서는 노동통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성 인지적 통계 개발을 목적으로 1984년에 *Compiling Social Indicators of the Situation of Women*과 *Improving Concepts and Methods for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1988년에는 가구조사를 이용한 통계와 지표의 향상을 목적으로 *Improving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women Using Household Surveys*를 발표하여 가구조사시 흔히 나타나는 경제활동에 대한 성 격 편견 즉 남편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분석하고 그 대안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비공식부문의 여성에 관한 통계의 수집을 위한 워크숍<sup>3)</sup>의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다. ILO와 성 인지적 노동통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역시 1980년대 이후 여성 노동통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총회, 국제노동통계학자회의, 전문가회의 등에서 여성 노동통계를 주요 주제로 채택하여 통계개발에 힘쓰고 있다. ILO의 제 71총회(1985) 결의에서는 기존통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여성의 경제적 공헌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발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통계는 자주 여성 노동력에 대한 참가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생산노동에 대한 공헌이나 여성고용 이외의 측면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의 수집 및 그 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3) INSTRAW, “Expert Group Meeting on Measurement of Women’s Income and Their Participation and Production on th Informal Sector” Santo Domingo, 13-17 October, 1986.

4) 예를 들어 National Training Workshop on the Compilation of Statistics on Women in the Informal Sector in The Gambia 8-16 May, 1991 등이 있다.

해야만 한다. 특히 여성 노동력 비율, 고용, 실업, 불안전 취업의 측정에 관해서는 제 13차 ICLS의 권고에 충분한 배려가 주어져야만 한다. 고용에 있어서 격리완화의 성과를 감시하고, 또한 여성의 실업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상황이나 여성실업 대책, 여성고용촉진 대책의 경향에 관해서 정보를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제 71 회총회)<sup>5)</sup>

국제노동통계학자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ICLS)는 ILO의 주제로 약 5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노동통계 중 개선을 요하는 내용에 대한 통계학자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ILO에 권고하고 ILO에서는 이를 채택함으로써 전세계 노동통계의 기준을 정하게 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회의이다. 1982년에 개최된 제13차 회의 결의안은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을 확장하고, 동시에 세부적으로 정교한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누락되었던 여성의 경제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sup>6)</sup> 대표적인 예로서는 시장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라는 기존의 경제활동의 개념을 확장하여 자가소비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까지도 경제활동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정의에서 요구되는 최소 주당 근로시간수준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혹은 자가소비를 위한 농산물생산자로 일했던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과소평가 되어온 이들의 경제적 공헌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제30조 1항에서는 노동통계의 성별 분리수집을 권고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경제활동에의 여성참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얻기 위해 측정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제13차 국제노동통계학자회의 결의안 중 여성주제 관련 내용

30. (1) 발전에 있어서의 여성참가와 양성평등의 향상에 관한 계획을 개발하고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적절한 통계적 기초가

5) 岩崎俊夫, “統計指標としての經濟活動人口-概念と調査-” 『婦人教育情報』, no. 31 (1995, 3), p. 14.; ILO, “F170 Labour Statistics Recommendation, 1985”.

6) ICLS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와 고용, 실업, 불안정고용과 이에 연관된 주제에 대한 통계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수집되어야 한다.

(2) 더 나아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여성참여에 대해 좀더 정확한 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남녀를 편견 없이 포괄할 수 있도록 측정방법이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에서의 여성참여에 대한 저평가를 가져오는 성편견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연유한다. 무급노동이 완전하게 포함되지 못하는 것, 여성의 복합적 활동에 대해 응답자와 평가자가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 대리응답자를 사용하는 것, 필요하다면 조사는 가능한 편견의 특성과 원천과 정도를 밝히고 그러한 편견을 낮출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993년의 제15차 회의는 여성의 종사비율이 높은 비공식부분의 고용 통계에 대해 결의하고 있다. 이는 비공식부분의 활동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측정방법이 없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비공식부분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계조사의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sup>7)</sup>

## 라. 국제기구의 보수 및 무보수노동 통계의 개발과 지원

### 1) UNSD의 성 인지적 노동통계 개발

유엔연합 통계국(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SD) 역시 성별 평등한 발전의 전략으로서 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자원의 기회와 획득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밝힐 수 있는 통계개발에 힘쓰고 있다.<sup>8)</sup> 국제노동통계 학자회의에서 주로 노동통계의 전체 체계 안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반면 유엔연합 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SD)은 노동통계 외에 여성들의 종사비율이 큰 무급노동까지 포괄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의 노동을 측정하는 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7) ICLS

8) <http://www.un.org/depts/unsd>

회의로는 ILO의 협조하에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와 공동주관하여 1998년에 3월 뉴욕에서 개최한 국제전문가회의 ‘노동통계에서의 성 인지적 쟁점’(Gender Issues in Labor Force Statistics)을 들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성 인지적 노동통계정책 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1) 기존 노동통계의 포괄범위와 내용을 성 인지적으로 개선. (2) 기존 통계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노동시장 부문-비공식부문에 대한 통계의 개발. (3) 시간사용조사.

기존 노동통계를 성 인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첫째, 공식통계에서 누락될 소지가 큰 여성의 공식적인 노동활동을 경제활동으로 빠짐없이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즉, 비공식부문노동자, 임시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간헐적인 노동활동 등 현행 경제활동조사에서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는 집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도구를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는 남자와 여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통계를 적절하게 범주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제안된 주요 범주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에서의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직업이 증가하고 전일제 직업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용을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분하여 범주화. (2) 자영업자의 활동을 산업별로 범주화. (3) 불안정한 고용과 변형을 파악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범주화. (4) 공식, 비공식 부문에서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발간 방안을 연구. (5) 직업분류는 ‘노점상’-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직업범주-과 같이 보다 세분화된 범주 적용.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고용통계의 활용과 분석 면에서 정책적인 개선사항은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조건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가계와 가족 상황과 연결 지어 경제활동 통계를 분석하고 여성의 노동패턴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성 인지적 노동통계 정책 방안의 하나로 비공식부문에 대한 조사가 강조되고 있다. UNSD/ESCAP/ILO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비공식부문 워크숍’(Workshop on Statistics on the Informal Sector(Bangkok, 12-16 May 1997))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에 대한 측정기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성노동력이 비공식부문에 보다 집중되어 있는 반

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존의 노동통계 조사가 노점상인, 가사서비스종사자, 농촌비공식부문 등으로 구성된 미세규모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비공식부문의 노동시장상황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부문 통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1) 기존 조사자료분석을 통한 비공식부문에 참가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 규모 파악; (2) 계약조건에 대한 문헌연구; (3) 계약조건에 대한 질적인 시험조사; (4) 재택(Home-based) 근로자에 대한 연구방법 개발; (5) 비공식부문에 대한 가구-기업체 혼용조사 실시; (6) 현행의 노동조사나 가구조사에 조사문항 삽입; (7) 계약조건, 판매상품, 근로장소의 하위범주를 기존 분류체계에 도입.

시간사용조사는 가구원이 조사기간동안 경제 및 비경제 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보낸 시간을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 특히 일한 시간과 다른 활동을 한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농업종사자, 가내종사자, 자영업자에 대하여 시간사용조사가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Niemi, 1988). 현재 국제노동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 노동에 대한 측정과 가치평가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영역-비공식 부문, 가내노동에 대한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간사용조사의 유용성은 기존의 고용조사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무급의 노동-가정에서 행해지는 무급노동을 포함하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여성노동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여자가 행한 생산활동이 그것이 가내에서 행한 무급노동이건 노동시장에서 행한 보수가 주어지는 경제활동이건 그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해야 하는데, 시간사용조사는 여성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무보수노동에 보낸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치평가의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성 인지적 노동통계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시간사용조사는 현재 여성의 경제적 공헌도를 평가하는 가장 충실한 측정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특히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UNSD는 이와 같은 시간사용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적인 시간사용에

대한 행동분류체계를 개발하는 한편 시간사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 통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나라의 조사방법상의 기법을 공유하고 시간사용조사를 위한 방법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시간사용조사를 지원하고 있다.<sup>9)</sup> 특히 UNSD 홈 페이지에 시간사용조사 전문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시간사용의 실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기술을 공개하고<sup>10)</sup> 구체적으로는 매뉴얼, 설문지, 행동분류기준, 조사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게재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거나 이미 시행한 유럽연합통계(EUROSTAT)를 비롯한 28개 국가의 현황과 그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 2) UNDP와 시간사용조사

인간개발이란 사람들이 긴 수명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지식을 획득하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인간개발의 중요한 네 개 요소인 생산성, 평등성, 지속성, 권력부여는 성과 발전이라는 주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995년 이후 해마다 인간개발의 기회에 대한 성별 차이를 발표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수명과 교육수준의 차이에 비해 소득과 일과 관련된 능력과 기회의 남녀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sup>11)</sup>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무보수노동의 중요성을 통계적으로 밝힐 수 있는 통계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보수 및 무보수노동을 국가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워크숍」에서는 여성의 무보수노동의 측정기법의 개발과 정책화를 위해 비공식부문, 구조조사, 시간사용조사 등이 논의되었다.<sup>12)</sup>

9)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베닌, 뉴질랜드,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인디아, 멕시코, 유럽 각국 등에서 시간사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0) <http://www.un.org/depts/unsd/timeuse/tusresource.htm>

11)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참조

12) UNDP, UNSD, UNIFEM, 정부제2장관실, 여성개발원 공동주최(1997), *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참조.

보다 본격적인 활동으로 UNDP에서는 ‘아태지역 성평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Promoting Gender Equality in th Asia-Pacific Region)를 개발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과학 및 기술부문,’ ‘성 주류화부문’과 함께 ‘보수 및 무보수노동 부문(Paid and Unpaid Work)’의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NDP는 ‘보수 및 무보수노동 부문’의 프로젝트의 수행기관으로 ESCAP를 지정하였다. ESCAP은 보수 및 무보수 노동을 정책에 통합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고 활동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하는 지역전문가그룹(RRG, Regional Resource Group)을 결성하였다. 회원은 노동력 통계 전문가, 국민계정 전문가, 여성발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제1차 생활시간조사 지역전문가그룹회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 모두 5차례가 개최되어, 시간사용조사를 개발했거나 하려는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현재 시간사용조사 매뉴얼의 개발과 시간사용조사결과의 정책적 반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13)</sup>

ESCAP에서 보수 및 무보수노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한 지역전문가집단회의와 세미나를 정리하면 보면 <표 II-2>와 같다.

최근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된 여성노동통계 개발상황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기존의 노동통계조사에서 누락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무보수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주력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무보수노동이란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 가사노동, 자원봉사의 세분류로 나눌 수 있으며, 이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추정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시간사용조사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ESCAP의 보수 및 무보수노동 프로젝트의 회의안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시간사용조사결과를 국가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13) <http://www.unescap.org/stat/meet/techmeet.htm>

&lt;표 II-2&gt; ESCAP이 주관한 보수 및 무보수노동 프로젝트 관련 국제회의

회의 종류	일련 번호	일시	장소	회의명/주요 안건
지역 전문가 회의	1	1999년 8월 5-6일	방콕	회의결성, 목적과 향후 활동 사항 결정
	2	1999년 12월 6일	아메다바드	아태지역내 생활시간조사 필요성 인식제고
	3	2000년 9월 15일	방콕	시간사용조사를 이용한 가치평가를 국가정책에 통합
	4	2001년 3월 19-21일	방콕	시간사용조사 및 가사노동평가 가이드북 작성
	5	2001년 9월 28일	방콕	시간사용조사의 결과활용 가이드북 작성
워크샵 / 세미나	1	1999년 12월 7-10	아메다바드	시간사용연구에 대한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n Time Use Studies)
	2	2000년 9월 10-14	방콕	무보수노동의 통계 결과를 국가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워크샵 (Training Workshop on Statistical Aspects of Integrating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3	2001년 9월 24-27	방콕	보수 및 무보수노동의 국가체계의 통합을 위한 워크샵 (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 National Systems)

## 2. 선진외국의 성 인적 노동통계 정책

캐나다에서는 1995년에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의 정책과 법률 시행에 대하여 성 인적 분석(gender-based analysis)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각 부처의 정책과 법률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와 정책가, 분석가로부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자료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인 수요에 부응하여 여성지위경(STATUS OF Women in Canada)은 통계청(Statistics Canada)과 협력하여 「여성관련 통계자료 안내」(Finding Data on Women)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여성관련 통계자료 안내」는 여성통계자료에 대한 안내서로서 자료 찾기, 분석하기, 해석하기에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캐나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 자체를 제공하기보다는 여성지위와 관련된 경제, 사회, 법률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여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요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캐나다 정부의 성 인지적 노동통계 구축과 관련된 또 하나의 성과는 고용평등지표(Economic Gender Indicator)의 개발이다. 고용평등지표는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의 분포를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캐나다 전역에 걸친 여성의 전반적인 실상을 나타내는 혁신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여성의 경제적 실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개발되었다. 고용평등지표는 생활의 질과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수입과 소득, 보수 및 무보수 노동, 교육과 훈련의 세 영역을 들고 이들 영역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돌보기와 노인돌보기 등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이 자녀와 다른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제소득 또는 잠재소득과 수입, 안정성을 희생한 결과이므로 남성의 시장노동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은 1996년 인구조사에서 가사, 자녀돌보기, 노인돌보기의 세가지 영역에 대하여 무보수노동 시간을 조사하는 결실을 맺었고 무보수노동의 가치 평가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뉴질랜드에서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성 인지적 분석(Gender Analysis)이다. 성 인지적 분석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남녀 생활상의 차이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책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상의 성 인지적 분석을 위하여 성 인지적 자료의 제공이 필수 불가결하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남녀평등의 실현이 국가의 기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맞추어 노동 및 고용과 관련된 주요 정책적 이슈는 남녀간 경제적·정치적 권한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남자와 여자의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는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 남녀의 노동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며 통계가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 및 생활 전반에 걸친 남녀 평등의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통계정책 중의 하나가 남녀로 분리된 통계

자료의 제공이다. 스웨덴 의회는 1994년 성 인지적 통계(Gender Statistics)를 국가의 공식통계로 지정하여 국민에 대한 모든 통계는 성별로 조사, 분석되고 제공될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젠더 이슈와 문제들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공식 통계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모두 성별로 분리되어야 함을 통계법에 명시하고 있고(제 10조) 통계청(Statistics Sweden)에 성 인지적 통계 업무를 전담하는 남녀평등통계과(Division of Gender Equality Statistics)를 설치하였다. 이 부서에서 2000년에 발간한 통계보고서 「스웨덴의 여성과 남성. (Women and Men in Sweden)」에 시간사용, 고용, 임금 및 소득 등 노동과 관련된 통계를 포함하여 인구, 건강, 교육, 자녀보육, 노인보육, 폭력과 범죄, 정치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남녀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표준적인 고용통계표와는 달리 남녀간의 노동 상태의 차이를 잘 반영하도록 자료를 조직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실업을 나타내는 통계에 불완전고용률, 실업률, 잠재실업률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자영자의 분포를 고용인 규모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남녀간 직업 분리 현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와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이 우세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고용형태인 임시고용에 대한 통계는 5개의 범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Call in when needed; Project employment; Holiday/seasonal work; Trial and placement work; Other). 경제활동참가율도 자녀수와 자녀연령, 남녀의 연령별로 분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Current Population Survey’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생산과 다른 점은 경제활동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이외에 가구를 대상으로 남녀별 노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련된 개인 및 가족 상황을 함께 조사하는 다른 조사를 따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조사로서 National Longitudinal Survey(NLS)와 Panel Survey of Income Dynamics(PSID)를 들 수 있다.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1966년부터 실시한 NLS는 동일한 가구와 개인에 대하여 몇 년에 걸쳐 조사를 계속하는 시계열조사이며 표본 자체를 노동시장의 주변에 존재하는 유색인종, 청년, 여성, 빈민을 대표하도록 설정하

였다. 개인 및 가족에 대한 고용자료를 외에 몇 년간에 걸쳐서 교육과 직업이동, 결혼 및 출산, 직업훈련, 자녀보육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조사하고 있어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고용통계상의 남녀간의 차이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PSID 역시 시계열조사인데 정부의 통계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of University of Michigan-에 의해 실시되는 전국규모의 가구표본조사이다. 한 가구 및 개인에 대하여 몇 년에 걸쳐서 1년 동안의 경제활동과 고용상의 변화를 조사할 뿐 아니라 소득, 결혼상태, 가족구성, 출산과 입양, 이사 등 다른 인구학적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가사노동시간, 건강, 소비, 자산, 연금과 저축, 주거비와 음식물비 등의 조사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나라마다 성인지적 고용통계정책의 주제, 방향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여성부가 주도하고 통계담당부처가 지원하는 형태로 성인지적인 노동통계를 구축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통계담당부처에 전담과(Devision of Gender Equality Statistics)를 설치하여 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남녀간의 노동시장에서의 차이를 나타내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는 반면 성 인지적 고용통계를 따로 발간하지는 않았다.

### 3. 국내 성 인지적 노동통계 정책 현황

국내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조사를 통하여 국가의 기간 노동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청이 노동통계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시키는 직접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 인지적 노동통계정책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의 노동통계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선진국 고용통계 기준에 맞추어 노동조사의 내용과 질을 꾸준히 향상시켜왔고 비공식부문을 제외하고는 성 인지적 노동통계구축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통계청에서도 성 인지적 통계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1995년에 발간된 '여성의 사회활동실태 국제비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 직종별 종사자비율, 고령취업자비율, 실업률, 제조업 주당 평균 근로시간, 남녀간 제조업 임금격차의 노동통계를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다른 나라의 통계와 함께 수록하고 있다. 1999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는 여성의 취업에 관한 태도, 여성취업장애요인,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근로시간별 여성취업자비,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를 수록하여 여성노동활동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은 1999년에 생활시간조사를 통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성 인지적 노동통계정책의 현안인 무보수노동가치평가에 필요한 무보수노동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무보수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노동통계정책 실행의 기초를 구축하였다<sup>14)</sup>.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통계연보」가 성 인지적 관점이 잘 반영된 노동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해 있는 여성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존 통계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여 매년 「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기존 통계수집과 분석, 원자료의 재처리와 분석을 통하여 여성노동통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조사 자료의 범위 안에서 통계자료가 분석되는 한계가 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기회 확대 및 취업여건 개선, 근로조건 보호를

14) 생활시간조사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17,000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10분간격의 시간일지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시간사용을 조사하였다. 자기기입식으로 기입한 행동은 9개 대분류, 51개 중분류, 125개 소분류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이 조사에서 일 시간을 주업, 부업, 일 중 휴식, 일 관련 연수, 집에서 직장 일 한 시간, 근무지 청소하기, 작업복 갈아입는 시간, 근무 준비 등을 포함한 기타 일 관련 행동, 출퇴근 시간 및 일 관련 이동시간의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있고 무급노동은 농림어업 무급가족종사일, 농림어업을 제외한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구직활동, 일 관련 물품구입 시간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무보수 가사노동은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미취학아이 돌보기, 초중고 등학생 돌보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국에서 근로여성실태조사 및 연구, 여성관련 분석과 관리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고용관련 통계를 개발하여 조사하거나 분석하는 성 인지적 노동통계의 구축에 정책적 중점을 두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근로여성정책국에서 발간하는 노동통계관련 보고서나 발간물은 찾아보기 힘들고 홈페이지에서 여성관련 고용통계로서 고용상태, 경제활동인구, 임금 및 근로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고용상태는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여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해외노동통계와 ILO 노동통계연보(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의 여성 관련 통계자료를 재인용하고 있다.

현재 여성부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이념을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추진하고 있다. 두 분야에 걸친 성인지적 노동통계정책-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제도적 반영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통계자료 개발-이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98~2002)의 일환으로 실행 중에 있다.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이 참여하여 추진 중인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제도적 반영은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량을 근거로 가사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고 가사노동가치의 적용분야를 발굴하며 GDP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계정체계에 가사노동에 대한 위성계정을 설치하는 것이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통계자료 개발은 통계조사시 가능한 한 성별분류가 가능하도록 조사표를 설계하고 보완하며 경제활동인구조사표상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세분화시키는 한편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종사자 성별분류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실행시키고 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불완전취업, 18시간 미만 무급가족 종사, 구직활동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고, 활동상태 '가사'를 '육아'와 '가사'로 구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집계, 분석하여 매월 발표하고 KOSIS(통계청 DB), 연보, 경제활동인구조사 CD롬 등에 수록하여 제공하고 있다.

2001년 1월 29일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부장관이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성별통계작성 등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여성발전기본법 13조) 여성관련 통계 생산, 작성 및 제공을 여성부의 주요 정책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성 인지적 통계자료의 구축과 분석이 기대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구조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성별로 분리된 자료를 생산 가능하도록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주요 고용변수에 대해서만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파악하려면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무급가족종사자와 불완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고 있어서 여성 노동 상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만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여러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합하여 남녀간의 비교라는 차원에서 통계자료를 재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 주제 및 정의의 성 인지적 분석

---

1. 주제의 선택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29
2. 노동통계의 정의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34

---

## 1. 주제의 선택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분석대상은 정부승인 통계조사와 간행물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정부산하기관 혹은 정부출연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통계와 간행물 중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먼저 우리 나라의 통계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통계청과 노동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노동통계의 주제를 조사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통계청 노동통계의 취급 주제

통계조사명	노동 관련 조사 내용
인구주택 총조사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상태(유업자적 접근), 직업, 산업, 교육정도, 종사자의 지위별 유업자, 가구단위 취업상태
경제활동인구조사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직업, 산업, 교육정도, 종사자의 지위별 취업자, 성별, 학력별, 월별 분석
도시가계조사	전 가구의 가계지출, 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지출, 가구특성별 소득 및 지출을 연도별 분기별로 수록
고용구조조사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상태, 직업, 산업, 교육정도, 종사자의 지위별 유업자, 구직활동여부, 구직기간별 무업자, 권직관련 사항 등
농업총조사	농가, 농가인구, 경지면적 및 목초지, 작물, 가축가금 등
어업총조사	어업가구, 어가인구, 어업종사자, 어업경영상황 등

출처: 통계청(1998), 「통계정보소재안내」;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so.go.kr> "통계간행물 발간일정"; 조사보고서.

<표 III-2> 노동부 노동통계의 취급주제

통계조사명	노동 관련 조사 내용
매월노동통계조사	상용근로자수, 개별근로자의 규모, 성, 근로자종류, 입직률, 이직률,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내역별 임금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상용근로자수, 개별근로자의 성, 연령, 직종, 직급,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근속년수, 경력년수 등

(계 속)

통계조사명	노동 관련 조사 내용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상용근로자수, 성, 연령, 근속년수, 근로시간, 월급여액 등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사업장 기본상황, 산업별, 규모별,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직위별 근로자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현금급여총액, 현물지급비용, 퇴직금비용, 모직비, 교육훈련비, 법정 복리비, 법정의 복리비 및 기타노동비용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사업별, 직종별, 규모별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고용전망조사	근로자수 증감, 인력과부족상황, 근로자채용, 고용조정실시전망

출처: 통계청(1998), 「통계정보소재안내」;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노동통계 간행물 현황"; 조사보고서

<표 III-3>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통계

통계조사명	노동 관련 조사 내용	생산기관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가구상황, 가구주와 조사대상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활동상태, 여성의 보육실태, 취업력 등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	한국노동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전실태조사보고	기혼부인의 출산력과 경제활동 참여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노동통계들이다. 이들 노동통계는 전반적으로 ILO의 1985년 '협약 160'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나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족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통계조사가 부족하다. 가족 중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의 여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가구단위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파악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고용구조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단위의

조사로 가구주는 물론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활동상태, 가구주와의 관계를 모두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조사는 가구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주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은 기혼 여성과 타가구원과의 관계를 연결할 수가 없다. 이는 조사의 설계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여겨진다(부록 「조사표」 참조).

둘째, 가구의 소득과 분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맞벌이 부부가구가 증가하고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가구소득에의 기여정도는 가족내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이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도시가계조사」는 도시가구의 가계지출을, 근로자가구에 한해서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가 근로자가구 외에 자영업자 가구 등 다른 가구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가구 내에서도 성별로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가구전체의 소득과 가구주의 소득, 가구원의 소득이 조사되고 있지만 가구주와 가구원의 성별분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성별 가구에의 소득기여도를 분석하기 힘들다. 또한 여성가구주의 증가에 따라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소득수준의 통계분석이 없어 이러한 현상에 대한 기본통계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도시 비공식부문에 대한 통계가 빈약하다. 여성의 경제에 대한 기여는 남성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남성에 비해 자료수집이 어려운 비공식부문의 종사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비공식부문은 2차 노동시장을, 공식부문은 1차 노동시장을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윤진호, 1986). 이들의 노동력은 서로 상이한 특질을 지닐 뿐더러, 채용 혹은 취업 후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실업자로 이탈하기 까지의 경로와 취업시의 근로환경 등이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사로 양 부문의 상황을 모두 밝혀내기가 어렵다. 더구나 비공식부문은 지하경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과소집계될 개연성이 공식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공식부문의 규모파악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피고용인이 없이 가족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종업원이 4인 이하인 소규모 영세 사업체의 종사자 및 가내노동자 등이 포함될 것이다.<sup>15)</sup>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통계로는 비공식부문의 규모조차 정확한 파악이 힘든 실정이다. 우선 경제활동의 기본사항을 월별로 조사하고 있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5년 간격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경제활동편」은 종사상의 지위의 항목만 있고,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를 조사하지 않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는 파악이 되지만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용인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용구조조사」는 노동력에 관해 가장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조사로 종사상의 지위와 사업체규모를 모두 조사하고 있으나,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7)」에는 사업체 규모에 따른 통계표가 전무한 채 발간되어, 통계적 재분석을 해야 파악이 가능하다.

노동부의 통계생산은 사업체와 피고용인의 현황파악과 이에 따른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국의 경제활동상태가 파악되기 힘든 단점이 있다. 더욱이 노동부의 주요 조사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의 조사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와 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4인 이하 근로자들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매년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상용근로자수 1-4인 사업장의 고용,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규모의 근로자가 파악되고 있으나,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가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전체적인 비공식부문의 규모파악이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비공식부문의 성별 규모파악이 가능한 통계자료는 「1992 고용구조조사보고서」로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92년 시부에 거주하는 전체 취업자 1280만 3천명

15) Berned Becker and Eun Pyo Hong, "The informal sector and household satellite accounting: conceptual issues and experiences from a pilot projec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UNDP/UNSD/UNIFEM(1997), *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in Seoul, Republic of Korea, 28-30 May, p.224.

중 여자는 439만3천명, 남자는 841만명으로 집계된다. 여성 중 무급가족종사자와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영자, 상시고, 일용고를 합하면 224만 7천명으로 51.2%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남성취업자는 31.1%로 여성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여성은 시부 거주 취업자 2명중 1명, 남자는 3명 중 1명이 비공식부문에 취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4> 성별 종사상의 지위별 종업원 규모별 취업자수(시부)

단위: 천명

	계	여자		남자	
		1-4인	5인이상	1-4인	5인이상
총수	12,803	2,261	2,132	2,941	5,459
고용주	726	84	17	339	286
자영자	2,344	611	4	1,693	36
무급가족종사자	1,022	863	70	77	12
상시고	7,589	433	1,861	536	4,759
일용고	1,122	270	180	296	376

출처: 통계청(1993), 「고용구조조사」, pp. 230-231.

이와 같이 도시 비공식부문의 취업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규모 파악조차 9년전 자료에 의존해야 하고, 이들의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는 노동부의 「소규모사업체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인 상시고용자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무보수 노동에 관한 조사가 빈약하다. 무보수노동의 주요 유형으로는 가사노동, 무급가족종사자 노동, 자가소비를 위한 노동, 자원봉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노동은 남성이, 무보수노동은 여성이 참여도가 높다. 북경행동강령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완벽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보수 및 무보수 노동의 불평등한 분포를 가시화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사용조사를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9년에 본격적인 시간사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 무보수노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사용조사가 무보수노동의 경

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지만, 이 외에도 가구구성원이 경제활동이 가구전체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의 사업을 돕거나 농장일을 하는 자영업 가족의 경우 가구의 각각의 경제적 기여도와 무관하게 남자는 가구주로서 자영업자로, 여자배우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기가 쉽다. 이에 따라 여자의 경우 남자가구주와 동일한 비중으로 경제활동을 하여도 무급가족종사자로 결정되면서 중요한 결정권에서 소외되기가 쉽다. 따라서 이들의 실질적인 기여도와 사업 운영의 결정권, 자원 획득의 용이성 등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남성은 학교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일정 연령전까지 경제활동상태를 지속하나, 여성은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상태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보인다. 대표적인 이동유형의 하나로 출산이후의 노동시장 퇴장과 자녀양육기를 마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현상에 대한 횡단조사와 더불어 종단조사를 할 수 있는 생애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의 취업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조사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5년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와 1998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있다. 전자는 결혼, 출산과 같은 개인사 혹은 가족사에 따른 노동시장에의 참여변화를 추적하고 있어 종단적인 분석이 가능하나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의 15세 이상 이후의 기간을 회고한다는 점에서 정확성의 문제가 있고, 후자는 아직 종단분석을 할 정도로 조사결과가 축적되지 못하였고, 여성만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특수성이 간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2. 노동통계의 정의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현재 노동통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와 분류는 남녀가 반드시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같은 제약에 속박되어 있는

것도, 같은 기회와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인식 위에서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 가. 경제활동의 개념 또는 “노동”의 범위

노동의 범위설정은 노동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노동통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동은 한 국가에서 상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sup>16)</sup> 즉 노동에 대한 보상여부나 세무당국에의 신고여부, 활동의 간헐성과 계절성, 고용상태의 임시성 등에 구애되지 않고, 생산상품이나 용역의 목적이 판매, 물물교환, 가구내 자체소비 중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노동통계에서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가능성과 비용 등 현실적인 제약과 인식의 차이 등으로 이러한 통계의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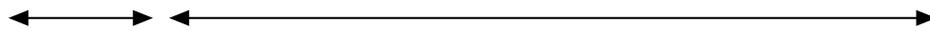
현재 노동통계의 노동범위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1982년에 개최된 제 13차 국제노동통계학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활동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노동력조사에 있어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그리고 불완전 고용의 정의를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경제와 비경제활동 사이의 정확한 경계는 임의적인 것이지만 정확한 경계가 지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 수 없이 마주치는 많은 경우에 통계처리하는 모호한 채로 있어 통계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킬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경제활동의 개념을 ‘시장을 위한 것이던, 물물교환을 위한 것이던, 혹은 자급자족을 위한 것이던,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과정과 그 생산품, 시장을 위한 모든 기타 종류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 그리고 재화와 용역을 팔기 위해 생산하는 가구,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1954년의 결의안에서 ‘임금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만을 언급한데 비해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6) Adriana Mata-Greenwood(2000), *Incorporating Gender Issues in Labour Statistics*, ILO, Bureau of Statistics, p. 16.

현재 노동통계에서 ‘일’의 개념은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향후 SNA로 표기)에 의해 정의된 상품생산과 용역의 제공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활동들은 ‘경제적’ 행위로 알려져 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일’은 시장판매나 물물교환을 위한 상품생산 및 용역제공 활동을 주로 포함하며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활동은 <표 III-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내 상품생산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때에만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가구 구성원에 의해서 무급으로 제공되는 가내 혹은 개인적 용역은 여기서 배제된다.

<표 III-5> 국가의 생산과 고용을 측정하는 생산범위

경제활동(SNA 생산범위에 포함된 활동)			비경제활동		
다른 사람(또는 조직)에 의해 공급되는 제화와 상품의 생산 <sup>a</sup>		자가사용(own final use)를 위한 상품의 생산 <sup>b</sup>	자가소비(own final consumption)를 위한 용역의 생산		
경제적 적정가에 판매되거나, 물물교환이나 물납(물품의 대금으로 물건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용된 상품 혹은 용역	공공부문에 의해 무료나 경제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제공되는 상품 혹은 용역		거주지의 소유자에 의해 생산된 가사서비스(housing services) <sup>c</sup>	유급 고용 가내 직원(domestic staff)에 의해서 생산된 가내 혹은 개인적 용역	무급 가구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가내 혹은 개인적(personal) 용역



시장(내)생산

시장외 생산

주 : <sup>a</sup> 중간생산물(intermediate inputs)처럼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을 포함한다.

<sup>b</sup> 자가최종소비(own final consumption) 혹은 총고정자본구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단, 자가최종소비(own final use)를 위해 생산된 상품의 총량이, 해당국의 총수요와의 관계에서, 양적으로 중요한 때에만 기록된다.

<sup>c</sup> 수반된 노동투입은 없다(No labour inputs involved).

<표 III-5>는 이러한 범주로 규정되고 있는 경제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

가소비를 위한 상품생산과 서비스의 종류를 SNA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자가소비를 위한 상품의 생산은 그 생산량이 총 공급량이 상당한 양이 될 때 SNA에 포함되고 있으나, 용역은 거의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차이는 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성(Sex)에 기초했다는 점이 제시되어 왔다(ILO, 1995). 게다가, 많은 활동은 여성의 활동을 노동의 범위에서 제외시킨다(UNDP, 1995). 그러므로 지금의 방식으로 규정되는 노동은 현재 정의된 '생산' 위주의 통계와 일치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같은 비중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시장외 생산'의 기여를 무시한다는 결점을 가지게 된다. 이들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생산적 본분에 있어서 여성참가를 경시하고, 소속사회의 복지를 위한 그들의 기여를 무시하고 있다는 중요한 근거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노동통계는 기껏해야 일부현실만을 반영하고 있었을 뿐이며, 이는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의 경제에 대한 총기여의 인식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주었다.

<표 III-6> 상품 및 용역생산에 관한 SNA의 개념에 따른 시장의 활동의 실례

SNA에 포함			제외
· 농작물, 과일, 야채의 재배나 수확	· 곡물의 탈곡과 제분	· 주택건축	· 약간의 수리를 포함한 주택의 청소, 장식, 유지
· 달걀, 우유, 음식물의 생산	· 버터, 버터기름과 치즈 제조	· 농장건축	· 가구 내구재, 차량, 기타 물품의 청소와 수리
· 동물 사냥	· 가축도살	· 보트와 키누 제작	· 식사준비와 시중
· 어패류 포획	· 가축의 보존처리(curing)	· 경작을 위한 토지 개간	· 육아, 자녀교육과 훈육
· 연료용과 건축용 나무벌채	· 고기와 어류의 보존처리		· 환자, 장애인 노인 돌보기
· 이영채집과 지붕얹기	· 맥주, 와인, 주정 제조		· 가구원과 그들의 물품수송
· 솥 굽기	· 씨앗의 기름짜기		
· 관석 채굴	· 바구니와 매트 엮기		
· 연료용 이탄 자르기	· 진흙 단지와 접시 만들기		
· 물공급	· 직물 제조		
	· 가구 제조		
	· 여성복과 남성복 만들기		
	· 비농산물로 만든 수공예품		

출처: 1993년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근거

## 나. 노동력의 규모와 구조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그리고 불완전고용의 통계는 또한 고용창출과 직업 훈련, 안정적인 수입, 빈곤 완화 그리고 유사한 목적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계획의 설계와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고용, 수입과 다른 사회경제적 특징간의 관계측정은 각기 다른 인구의 하위그룹이 적절히 고용되었는가와 각기 다른 형태의 경제활동의 수입발생능력,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고용조건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복지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람의 수와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국가들에 국가 통계계획을 개발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고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는 노동통계의 많은 주제에 관한 국제표준을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5년마다 열리는 국제 노동 통계인 회의(ICLS)에 의해 수립된다. 이러한 기준들 중 경제활동인구와 고용, 실업 그리고 불완전 고용에 관한 통계에 관하여 1982년 제 13차 ICLS에서 채택된 기준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ILO, 1983).

### 1)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의 측정에는 두가지 기준이 있다. 새로운 결의안은 '경제활동인구'를 다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결의안에서는 1954년 결의안의 주관심사였던 '노동력'보다는 '경제활동인구'를 언급하였다. 1954년 결의안에서 정의되고 지난 사반세기동안 통계문헌에서 사용된 '노동력'이라는 용어는 취업과 실업을 측정하는 특정한 접근법에 연결되어 왔으며, 또한 한 주나 하루같이 간단한 참조기간과 연결되어 측정된 취업자와 실업자인구의 양으로 인식되어왔다. 한편, 새로운 결의안에서는 '경제활동인구'라는 용어를 포괄적인 용어와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경제활동인구'를 재는 데는 '1년 단위'의 장기 조사기간을 측정하는 '평상활동인구(usually active population)'와 하루나 한 주 단위같이 단기 조사기간을 측정하

는 ‘현재활동인구(currently active population)’의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후자는 개념적으로 1954년 결의안에서 정의된 ‘노동력’과 같은 개념이다.

평상활동인구는 활동의 주패턴을 회상한 자료를 얻는 것이 목적일 때, 활동의 확실한 계절별 패턴을 얻으려 할 때, 자료수집활동이 한 해 동안의 반복되는 측정을 허용치 않을 때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는 농업과 기후의 전체주기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활동인구를 측정하는 조사기간은 1년 단위가 적당하다. ‘평상활동인구’의 측정은 ‘현재활동인구’가 주측정대상인 조사에서 보완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평상과 현재상태의 차이는 특별히 분석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으로 관련성이 있으며, 평상시에는 활동하였으나 현재조사기간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 그들의 상태에 대해 결정하는데 인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전년에는 거의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당시에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사람(예:퇴직자)’, ‘농번기 같이 계절적으로 일이 있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활동하였으나 농한기같이 계절적으로 일이 없을 때에는 활동하지 않는 사람(만약 조사가 일이 없을 때 실시되면)’, ‘일감이 있느냐에 따라 노동력이 되기도 안되기도 하는 사람’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을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주동안 일을 하지 않은 임시노동자’와 같은 사람을 포함한다.

평상노동인구는 특정 연령이상의 주된 활동상태가 지난 12개월과 같은 장기간에서 특정 기간동안의 주나 날짜의 숫자 내에서 취업 혹은 실업으로 정의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포함한다. ‘현재노동인구’의 정의는 그것이 한 주이던 하루이던 특정한 단기간동안 ‘취업’ 혹은 ‘실업’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취업과 실업의 정의는 조사 주나 날짜 단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노동인구’는 그것이 전(前) 12개월이나 그와 같은 장기적인 특정조사기간을 형성하는 주들(weeks)이나 날(days)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개인의 다양한 상태에 기초한 요약측정도구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만약 현재활동상태가 조사한 한 주(a reference week)로 결정된다면, 평상활동상태는 조사년도(The reference year)동안의 주들의 지배적인 상태로 정의된다고 하겠다. 만약 현재활동상태가 하루동안의 조사기간(a reference day)로 결

정된다면, 통상활동상태는 조사년도 동안의 날들의 지배적인 활동으로 정의된다 하겠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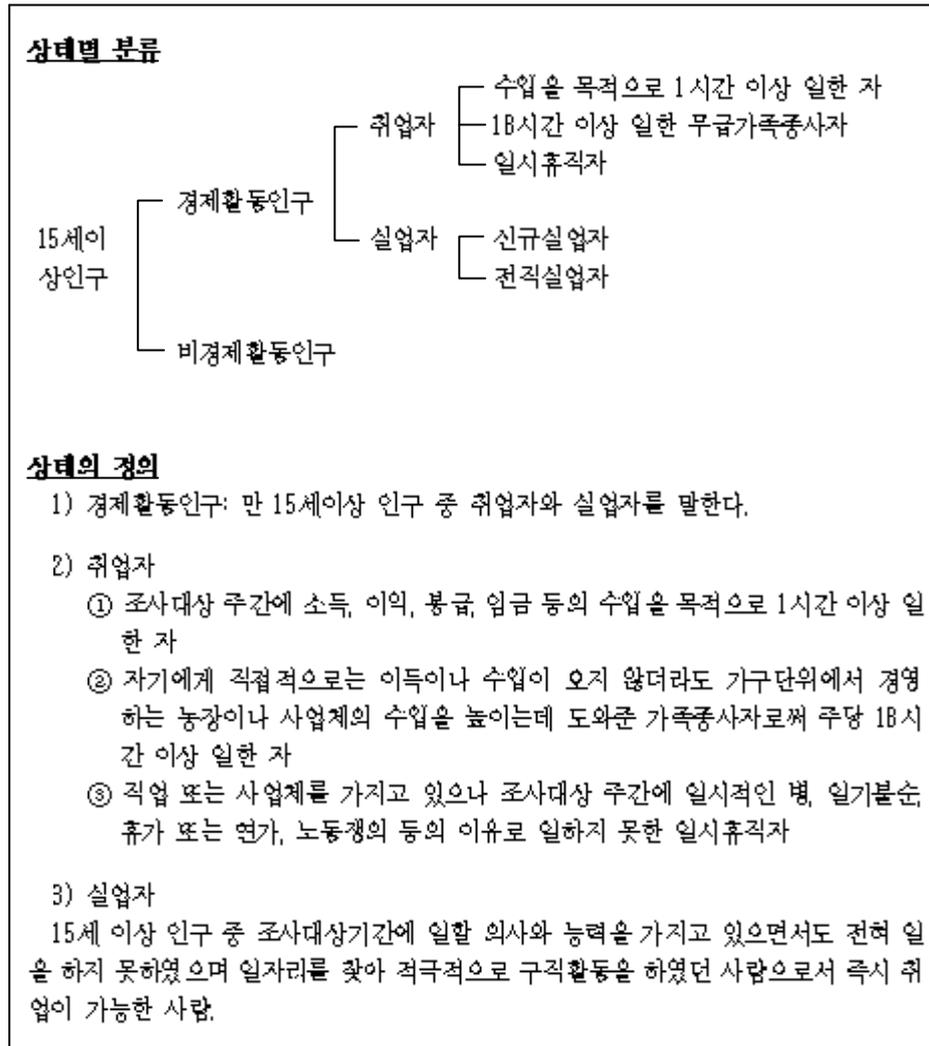
이와 같이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하여 볼 때 노동력 조사는 주요 조사로 하고 평상활동인구조사로 누락되기 쉬운 취업유형을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겠다. 여성의 취업상의 특징상 여성은 계절노동과 임시노동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의 취업을 누락시키지 않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평상활동조사가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의 조사는 역시 노동력 조사와 평상인구조사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기본사항 파악을 주요 목적으로 매월 1회 실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노동력접근법으로 고용구조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목적으로 5년마다 조사되고 있는 「고용구조조사」는 평상활동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경제활동편」은 1990년과 1995년은 평상활동 접근법을, 2000년 조사는 노동력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의 세 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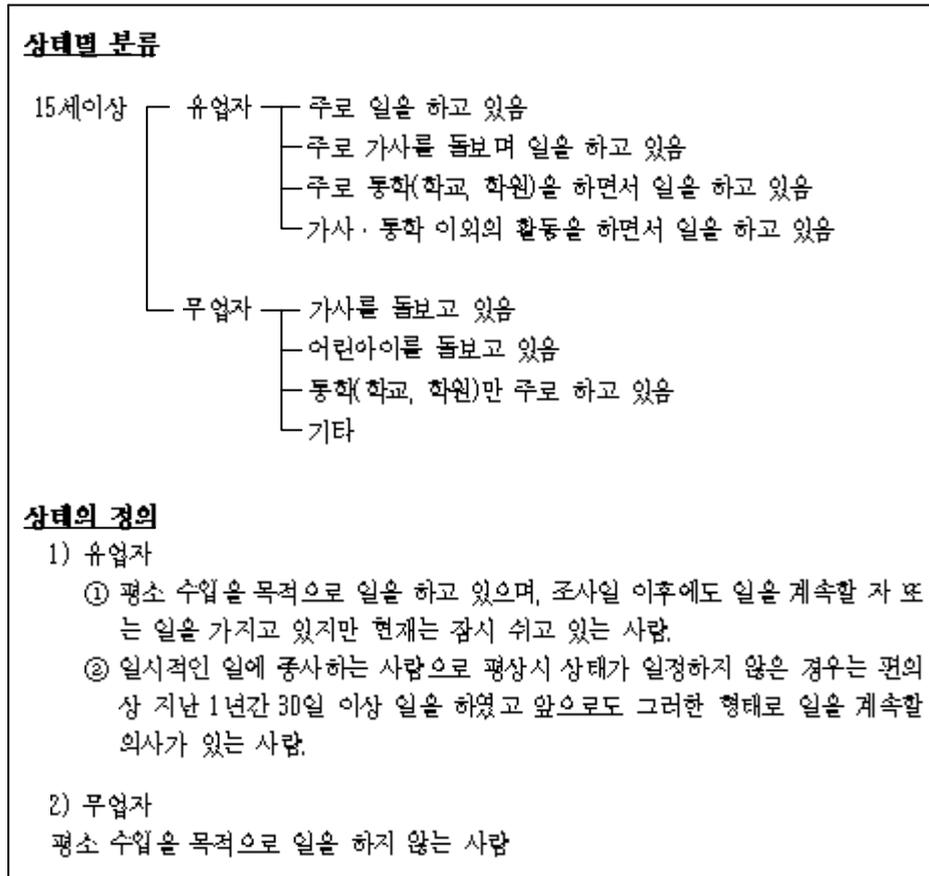
17) M.V.S. Rao and F. Mehran(1990), "Salient features of the new international standards on statistic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Rapph Turvey(ed.)(1989),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bour statistics*, London: Pinter Publishers, pp. 61-62.

<그림 III-1> 경제활동인구조사<sup>1B)</sup>의 상태별 분류와 정의



1B) 통계청(2000),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p. 6.

<그림 III-2> 고용구조조사<sup>19)</sup>의 상태별 분류와 정의



이와 같은 두 가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비교하면 취업자(혹은 유업자)의 규모가 남성은 그다지 큰 편차가 없으나 여성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주어 여성의 취업상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조사기준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대표적 두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조사의 조사결과를 동일년도에 한하여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 통계청(1998), 「고용구조조사보고서」, (통계청), p. 19.

&lt;표 III-7&gt;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결과 비교

조사명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구조조사	비고
조사방법	노동력조사	평상활동인구	
주요기준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일함 매일 15일이 포함된 1주간(연평균)	1년에 30일 이상 일함	
조사대상일시	1997.1.1-1997.12.1	1997.9.1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조사결과	취업자(A)	유업자(B)	차이(A-B)
여자	8,891천명	6,763천명	2,128천명
남자	12,772천명	12,176천명	596천명
계	21,106천명	18,928천명	2,178천명

출처: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1997 고용구조조사보고서」.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노동력접근법에 의한 취업자수가 21,106천명으로 평상활동인구접근법에 의한 취업자수 18,928천명보다 2,178천명 많게 집계되고 있다. 이는 노동력접근법의 기준인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가 평소에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1년에 30일 이상 일하는 자보다 많다는 것으로 노동력접근법의 취업자 기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로 보면 취업자수와 유업자수의 차이가 남자는 60만명에 약간 못 미치는 반면, 여자는 200만명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평상활동인구조사가 임시직 또는 계절취업자가 많은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오히려 누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여성취업자와 유업자의 산업별분포와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t;표 III-8&gt; 산업별 여성취업자와 유업자수 비교

단위 : 천명

	경제활동인구	고용구조조사	증감
계	8,686	6,763	1,923
농림어업	1,150	1,311	-161
광공업	1,599	1,165	434
사회간접	5,936	4,288	1,650
건설업	217	139	78
도소매음식숙박업	3,058	2,123	935
전기운수창고금융업	578	494	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085	1,532	553
계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3.2	19.4	-6.1
광공업	18.4	17.2	1.2
사회간접	68.4	63.4	5.0
건설업	2.5	2.1	0.4
도소매음식숙박업	35.2	31.4	3.8
전기운수창고금융업	6.7	7.3	-0.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4.0	22.7	1.4

출처: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1997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이 두 접근법에 의해 나타난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비교하면 노동력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집계된 농림어업종사자는 115만명으로 평상활동 인구조사인 「고용구조조사」의 131만 1천명보다 16만1천명이 적게 집계되고 있다. 반면 광공업과 사회간접서비스는 각각 43만4천명, 165만 명이 집계되고 있다. 물론 이 두 조사의 조사설계와 조사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동일 년도에 동일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력 조사는 2차, 3차산업의 여성취업자를, 평상활동인구조사는 1차산업의 여성취업자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종사상의 지위를 비교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자영업주와 임시직, 일용직은 노동력조사에 의한 취업자수가

훨씬 많이 집계되고 있어 비공식부문과 비정규직의 노동력규모에 대한 조사가 조사방법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통계조사 결과의 이용시 여성취업자의 경우 조사기준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보다 정확한 규모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III-9> 종사상의 지위별 여성취업자수와 유업자수 비교

	경제활동인구	고용구조조사	증감
계	8,686	6,763	1,923
비임금근로자	3,490	2,806	684
고용주/자영업자	1,777	1,075	702
무급가족종사자	1,713	1,731	-18
임금근로자	5,196	3,725	1,471
상용	1,972		-
임시	2,349	3,324	-
일용	874	401	473

## 2) 취업

1982년의 제13차 회의에서 채택된 취업에 관한 국제적 정의는 1954년에 영국의 ICLS에 채택한 취업의 초기정의와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새로운 정의는 취업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정교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20)</sup>

첫째로 ‘유급노동’과 ‘자영업’ 사이에 기본적 구분을 짓고 각각의 분류에 알맞는 분류를 발전시킨 점이다.

‘유급노동’에 속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일한 사람: 조사기간동안 현금 또는 그런 종류의 임금이나 월급을 위해 얼마간 일을 한 사람

20) 7장 pp. 63-64.

(2) 직업이 있으나 일하지 않은 사람: 조사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일하지 않았으나 공식적으로 일자리가 있고 그들의 현재 직업에서 일을 해 온 사람.

‘자영업’에 속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일한 사람: 조사기간동안 현금이나 그런 종류의 이익 혹은 가족 소득을 위해 얼마간 일한 사람
- (2) 사업이 있으나 일하지 않은 사람: 사업체나 농장 혹은 수행중인 서비스업 무 등의 사업체를 가지고 특정한 이유로 조사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

이와 같이 유급노동과 자영업의 구분과 함께, 결의안에서는 조사시 조작적 개념으로 (1)의 ‘얼마간의 일’의 개념을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일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시 휴직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 일자리’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1954년의 정의 하에서는 일시 휴직인 사람은 실업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실업자와 동일하게 분류되는 것이 부정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으며, 1982년 회의에서는 이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일시 휴직을 하고 있으나 고용주와 직업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취업자로 간주하게 되었다.

직업을 공식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유급노동자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르며, 자영업자는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 (i) 지속적인 임금이나 월급의 수령
- (ii) 이러한 돌발적 상황이 끝났을 때 일로 돌아간다는 확약이나 복귀날짜에 대한 합의
- (iii) 부재 기간 동안 다른 일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없이 보상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인 기간

둘째, 근래의 취업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정의의 또 다른 새로운 특징은 무급 가족종사자에 대해 과거의 그것이 채택했던 최소시간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그

래서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무급가족종사자는 만약 조사기간동안 일을 하기만 했다면 몇 시간이나 일했는가에는 상관없이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으로 포함하기 위한 최소시간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나라에서는 규정된 시간보다 적게 일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표시하고 나누어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의 분류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 새로운 정의는 가족사업을 돕지는 않지만 그들 자신과 가구의 소비를 위해 경제적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내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 전에 언급했던 경제활동의 개념에 따라 이러한 무급가족종사자는 조사기간동안 농산물을 그들 자신이나 가구만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의 활동을 하는데 종사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측정을 위하여 그들은 그 생산품이 '가구의 총 소비에 중요한 기여를 했을 때'만이 비로소 '취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한 정의하는 문장은 어느 정도의 가변성이 있으며 각 국가의 상황에 비취 정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동업자에 대한 강조이다. 고용주와 자영업자 그리고 생산자의 동업자는 자영업으로 간주하며 '일을 한' 사람과 '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경우에 따라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새로운 정의는 경제활동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가 혼재하는 사람에 대한 우선률(priority rule)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현금이나 그런 종류의 것을 받는 도제는 유급노동으로 간주되어 다른 유급노동에 속하는 사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일을 한' 사람과 '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조사기간동안 학생, 가사노동자와 그리고 조사기간동안 다른 비경제활동에 주로 종사한 사람으로서 동시에 앞의 유급 노동이나 자영업에 종사한 사람을 다른 취업자의 분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나누어서 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대의 구성원을 유급노동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직업의 국제 기준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ccupation)에 명기된 것

과 같이 정규적인 구성원과 일시적인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다(regular and irregular).

이상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정의와 차별성을 갖는 1982년의 취업의 정의는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여성의 비중이 높은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재인식이다. 무급가족종사자로 간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철폐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참가에 대한 낙인이 줄게 되었다. 또한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을 인정함으로써 이 부분의 참여비율이 높은 여성들의 노동상태에 대한 파악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둘째, 임시 휴직을 취업자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시 휴직의 비율이 높은 여성들의 취업상태를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직업유지’를 하고 있는 임시 휴직자 즉 휴가, 병가 등의 권리가 있는 유급 노동자는 법규에서 보호하고 있는 전형적인 노동자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정기적 유급 고용상태에 있고, 공식적 부문에서 일을 한다. 이들의 규모는 기업체의 인사관행, 현행 법령이나 노동자비율, 휴가자격을 다루는 단체협약에 많이 좌우될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휴가가 다양하고 관대한 국가의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바꾸어 말하면 법률이나 단체협약이 불리한 국가에서는 이들이 취업자로 간주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법이 미치지 않는 유급 노동자의 규모가 상당한 국가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취업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비중이 높은 무급가족종사자, 계절노동자, 비공식부문의 노동자, 시장의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에서 벗어날 경우 이들이 ‘공식적인 직업유지’로 간주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은 취업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이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lt;표 III-10&gt; 조사주간동안 직장에 없던 근로자의 성별 비율(전체 근로자 중)

국가	여성	남성
핀란드(1991)	15.2	11.4
스웨덴(1994)	11.3	6.4
캐나다(1994, 5월)	6.4	4.5
스페인(1993, 첫 3개월동안)	4.5	4.5
베네수엘라(1993 첫 6개월동안)	3.6	1.9
타이(1991, 8월)	1.4	2.5

출처:

핀란드: Statistics Finland, Labour Force Statistics 1991 헬싱키 1992 스웨덴: Statistiska Centralbyran, Arbetskraftsunders., ninge i maj 1994

캐나다: Statistics Canada, The labour force, 1994, 5월

스페인: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Encuesta de Poblaci... Aciva, Resultados detallados, cuarto Trimestre de 1993, 마드리드, 1994

타 이: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port of the Labour Force Survey, 1991 8월 베네수엘라: Oficina Central de Estadística e Inform,ica, Indicadores de la Fuerza de Trabajo, Primer Semestre 1993, 1993, 겨울

Adriana Mata-Greenwood(2000)에서 재인용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취업자의 정의를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첫째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의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급가족종사자도 다른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뚜렷한 근거가 없이 18시간 이상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18시간 미만자는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고 있어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가 과소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1시간 이상 18시간 미만인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9년 현재 무급가족종사자는 1,918,000명(「1999 경제활동인구연보」)으로 이 중 여성은 1,819,000명으로 94.3%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8시간 미만의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여성일 확률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이 기준이 다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무급가족종사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의 취업실태조사」(1992)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여성취업자 1,628명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는 607명이고 이 중 일시 휴직자는 3

명, 1-18시간 미만인 자는 6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1-18시간 미만인 자의 비율이 18시간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0.998%를 차지한다. 이 비율을 현재의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인 1,819,000명에 곱하면 18,153명이 나오며, 이 규모가 현재 공식 조사에서 누락되고 있는 1-18시간 미만의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11> 한국의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규모추정

	여성취업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18시간 이상	601명	1,819,000명
18시간 미만(일시 휴직자 제외)	6명	18,153명(추정)
18시간 미만 비율	0.998%	-
전체	607명	1,837,153명(추정)
조사년도	1992년	1999년

취업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은 일시 휴직자에 대한 파악이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일시휴직자를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1995)」에는 이에 추가하여 「가족의 병, 사업체의 사정(기계고장, 원료 미확보, 화재 등)과 함께 「여성 취업자로서 출산휴가중이나 직장에 반드시 복귀할 것이 명확한 경우」를 덧붙이고 있다<sup>21)</sup>.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휴가, 병가 등의 휴직은 그 직업이 공식부문일 때 가능하며 특히 정규직일 때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지만 비정규직이나 비공식부문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후자부문의 종사비율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 일시 휴직자에서 누락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시휴직자의 직종별 분포는 이러한 추정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일시 휴직자의 비율은 전체 취업자 830만 8천명 중 9만 8천명으로 1.2%를 차지한

21)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5권 경제활동」(1997), pp. 10-11.

다. 직종별로 비율은 큰 편차를 보이는데 고용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전문직의 경우 6.0%의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농림직은 0.2%로 제일 낮은 비율을 보이고 비정규직과 비공식부문 종사자가 많은 사무직은 서비스판매직, 조직원 및 조립직 등도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보여 이들이 일시휴직자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시휴직자의 정의시, 보다 정교하고 확대된 개념이 필요하다.

<표 III-12> 성별 일시휴직자의 직종별 분포

단위 : 천명

	총수	입법직	전문직	기술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및 판매직	농림직	기능직	조직원 및 조립직	단순 노무직
취업자	8,303	22	360	705	1,116	2,912	1,017	645	282	1,255
일시휴직자	98	0	21	11	7	26	2	9	2	21
비율	1.2	0.0	6.0	1.6	0.6	0.9	0.2	1.4	0.7	1.7

### 3) 실업

실업통계는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다. 실업통계는 완전고용정책과 프로그램을 입안, 실행, 사정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공공적인 논쟁의 주요한 주제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모든 남녀를 파악하는 것과 그들의 특징을 세심하게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다른 형태의 직무를 행하고 다른 종류의 산업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업정의의 기반이 된 판단기준은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여성과 남성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서로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 판단기준은 또한 그들이 이들 판단기준에 관계하는 방식과 실업으로 파악된 남녀의 실제 규모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실업의 국가적 정의는 일자리의 총 부족상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한 주의 짧은 조사기간동안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된다. 적극적 구직활동은 실업에 대한 국가의 정의에서 중심적인 개념이며,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탐색의 주요 지표이다. 그런데 이 지표의 적용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정보교환을 위한 장구가 존재하고 그 장구가 널리 사용되는 그런 환경에서 유급고용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노동교환이 도시에만 가능하고 지방에서의 일자리가 제한되어 사실상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직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역에서 유급노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또한 구직자가 공공이나 민간 직업소개소에 의뢰하거나 신문의 채용광고를 이용하기보다는 비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곳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구직자들은 그들의 활동이 구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가구조사 인터뷰에서 이에 관해 질문할 때 일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UN, 1995). 더구나 노동이동이 제한되어 있거나 차별이 있어서 등의 이유로 그들의 기술에 맞는 적당한 일이 없다고 믿고 있거나, 직업을 찾는데 있어서 구조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에 부딪쳐 일을 원하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활발한 구직활동여부로 실업을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여성이다(UN, 1995).

실업관련통계는, 이와 같이 여성이 처하게 되는 제약의 모든 형태를 조사함으로써 여성들의 실업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은 설사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취업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들(취업희망자)을 실업자의 개념에 포함하여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노동력 조사결과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취업희망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이들을 실업자로 분류한다면 여성의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통계에서는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8천9백만명으로 66%가 여성이다. 만약 이들을 실업자에 포함시킨다면, 여성 실업률은 12%에서 19%까지, 6% 이상 상승할 것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

은 10%에서 12%의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표 III-13>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유럽공동체 15개 국가)(1997)  
단위: 백만명, %

	총계	여성비율 (%)	남성 <sup>1)</sup>	여성 <sup>1)</sup>
취업자	150.1	41.9	87.2	62.9
실업자	18.1	48.8	9.3	8.8
공식실업률(A)	10.8	-	9.6	12.3
비경제활동인구	135.7	63.2	50.0	85.8
취업의사가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8.9	65.8	3.0	5.9
구직활동 중이나 일할 수 없었던 사람	1.7	57.4	0.7	1.0
대체실업률(취업희망자 포함)(B)	15.2	-	12.4	18.9
B-A	4.4	-	2.8	6.6

출처: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1998 - 5, 에서 재인용하여 재편집함.

주 1) 남성과 여성수는 총계와 여성비율을 이용하여 구함.

미국의 경우도 취업희망자 중 일자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구직행위를 하지 않은 실망실업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음을 보여 준다. 노동통계국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실업자와 실망실업자의 비율을 보면 실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44.4%에 불과하나 실망실업자는 62.9%로 여성의 실업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업률의 채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조사는 인종간의 차이도 포함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실업자 중 백인남자의 비율은 42.2%로 가장 높으나 실망실업자 중에서의 비율은 24.8%로 감소한다. 반면 흑인남자의 경우는 11.7%에서 14.8%로 약 3.1%포인트 증가함을 보여준다. 백인여자 역시 6.9% 포인트 증가하고 있으나 흑인여자의 경우 14.1% 포인트 증가로 차이가 가장 두드러져 실업의 개념설정에서 있어 성별 상태의 차이뿐 아니라 인종간의 차이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14> 미국의 성별, 인종별 실망실업자와 실업자 비율(16세 이상)(1984)  
단위: %

	실망실업자	실업자
계	100.0	100.0
남 자	38.1	55.6
여 자	62.9	44.4
계	100.0	100.0
백인남자	24.8	42.2
흑인남자	14.8	11.7
백인여자	39.4	32.5
흑인여자	24.8	10.7

출처: BLS, Employment and Earnings, January 1985, Annual Average, Terry F. Buss and F. Steven Redburn, *Hidden Unemployment: Discouraged Workers and Public Policy* p. 24에서 재인용.

미국은 공식통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필요성에 의한 대체실업률을 개발하여 공식통계와 대안통계를 동시에 발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현재 6가지 실업률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Ⅲ-15>와 같다.<sup>22)</sup>

미국의 경우 실망실업자의 정의를 '지난 해에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현재에도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직장이나 일자리가 있으면 근로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적 요인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노동시장적 요인이란 직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구직활동을 하여도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숙련이나 교육수준이 낮아 직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차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한계 실업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적당한 직장이나 일자리가 있으면 일할 수 있고, 지난 해에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따라서 한계 실업자의 범주에는 실망실업자와 함께, 앞의 조건을 만족시키나 가사, 육아, 학업,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22) 김태홍·문유경,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pp. 37-40.

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실업률의 개발은 실망실업자 혹은 한계실업자의 범주에 있어 여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업통계에서 여성실업의 규모가 과소추정되거나 이들 집단의 특성이 왜곡될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표 III-15> 미국의 6개의 대체 실업률

대체 실업률 지표	정 의	실업률 <sup>1)</sup>
U-1	-15주이상 실직된 사람/경제활동인구	1.2
U-2	-직장상실자+임시직을 그만 둔 사람/경제활동인구	2.4
U-3	-실업자/경제활동인구( <b>공식 실업률</b> )	4.6
U-4	-실업자+실망실업자/경제활동인구+실망실업자	4.8
U-5	-실업자+실망실업자+한계실업자/경제활동인구+한계실업자	5.3
U-6	-실업자+한계실업자+경제적 이유의 시간제근로자/경제활동인구+한계실업자	7.6

주 : 1) 2001년 3월 기준임. <http://stats.bls.gov/newsrels/htm>

출처: Bregger & Haugen(1995).

우리 나라에서는 실업자를 조사대상기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자로 정의하고 있다. IMF 체제도입 이후로 공식적인 실업통계가 실업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의해 실업관련 조사표 문항을 추가하여 1999년 11월 이후 개편된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조사표는 미국 등에서 개발한 다양한 대체실업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편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lt;표 III-16&gt; 실업관련 조사문항 개편내용

개편내용	1999년 10월 이전	1999년 11월 이후	의의
구직활동기간	없음	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	비구직자에게 취업희망여부를 확인함
추가취업희망자의 취업능력여부	없음	취업이 가능한 경우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취업이 가능한 경우 구직관련 문항을 추가로 질문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행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
비구직 취업희망자의 비구직이유	1. 본인의 교육, 기술, 경험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원하는 임금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3.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5. 목아 6. 가사 7. 동학 8. 건강상의 이유 9. 기타	1. 권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3.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 목아, 가사 8. 동학 9. 기타	실망실업자의 정의에 고려하여 시장적 요인과 비시장적 요인을 분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없음	구직활동의 빈도	구직활동의 적극성을 조사

그러나 공식적으로 다양한 실업률에 대한 산정기준과 통계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여성의 실업규모 측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공식실업률을 보면 2000년 현재 남자는 4.6%, 여자는 3.3%로 여자가 1.3%포인트 낮게 나타난다. 남자의 실업률이 높은 현상은 경기의 상승 혹은 침체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며, 특히 경기침체에 남자의 실업상승률 폭이 여자보다 크게 상승하여 실업수치가 높았던 1998년과 1999년은 남녀차가 2.0%포인트로 더욱 벌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실업률과 별도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여 실업률을 계산할

경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진다. 1996년의 경우 남성 2.9%, 여성 3.1%로 여성이 높으며, 경기침체기인 1998년은 공식실업률에 비해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이 대폭 증가해 남성은 9.3%, 여성은 10.8%로 여성은 공식실업률의 약 두 배 가까운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우 실망실업자를 포함한다면 실업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실망실업자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해 이들 집단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표 III-17> 성별 공식 실업률과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공식실업률	남자	2.3	2.8	7.6	7.1	4.6
	여자	1.6	2.3	5.6	5.1	3.3
실망실업자포함 실업률	남자	2.9	3.6	9.3	-	-
	여자	3.1	4.8	10.8	-	-

출처: 인터넷: <http://www.nso.go.kr> 통계 KOSIS; 김태홍, 문유경,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통계청(1999, 2000),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실업의 정의에서 성 문제를 보다 잘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구직활동기간의 선정문제이다. 지난 1주일 기준을 했을 때, 육아, 가사일 등 다른 책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동안에는 일할 수 없으나 그 후에 곧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업에서 제외된다. 예상대로, 이러한 집단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은 조사기간에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는 별도로 핵심 실업인구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이 이 적용범위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회원국들간의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를 위해 1년에 1번씩 EuroStat(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기준에 의해서 표준화된 실업률을 작성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구직활동기간을 4주로 정의하고 있다.<sup>23)</sup>

23) 강순희·전재식·이계오, 「실업통계의 개선방안」 pp. 26-27.

우리 나라 역시 OECD 회원국으로서 1998년 조사부터 구직활동기간을 1주와 4주의 이중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1주를 기준으로 한 실업률을 주요 실업률로 취급하고 있으며, 4주 기준은 OECD 보고용으로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직활동기간에 따른 실업률의 차이를 보면 2001년 1사분기 현재 공식실업률은 4.8%인 반면 OECD 기준으로는 5.0%로 약 0.2% 포인트 상승한다. 성별로 분석할 경우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8>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의 경우 구직활동기간을 4주로 연장했을 경우 전체 실업률은 변함이 없지만 성별로 큰 차이를 보여 남자는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여자는 0.3%포인트 증가하고 있다.<sup>24)</sup>

<표 III-18> 구직활동기간별 실업률

		1주(A)	4주(B)	차이(B-A)
한국 <sup>1)</sup>	전체	4.8%	5.0%	0.2%P
일본 <sup>2)</sup>	전체	2.1%	2.1%	0.0%P
	남자	2.1%	1.8%	-0.3%P
	여자	2.2%	2.5%	0.3%P

주: 1) 한국은 2001년 3월 기준임.

2) 일본은 1992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01년 3월 고용동향"; Elder and Sorrentino(1993), p. 58.

#### 4) 불완전취업

불완전고용통계는 노동시장의 결함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에 있어서의 통계를 완전하게 한다. 근로시간이 관련된(time-related) 불완전고용(전통적 용어로는 가시적 불완전고용-visible underemployment)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완전고용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를 반영한다. 근로시간관련 불완전고용은 실업과 유사하게 추가노동을 위해 노동시장에 압력을 가하는 고용

24)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1992년의 미국 실업률 기준으로 재계산한 것으로서 일본의 산출기준과의 주요 차이중의 하나가 구직활동기간이다.

자들의 실정을 반영한다. 근로시간 관련(time-related) 불완전고용의 국가경의는 상당히 변화하였으나, 대체로 짧은 조사기간동안 추가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고용된 사람들 중에서)과 한계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불완전취업과 관련하여 여성의 실업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통계 중의 하나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수에 대한 측정이다.<sup>25)</sup>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는 비자발적 이유 때문에 희망하는 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993년의 OECD 회원국의 전체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여성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70%대를 나타낸다. 남성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터키로 85.7%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다. 독일은 가장 높아 87.2%를 나타내고 있으며 덴마크, 벨기에도 80%가 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I-19> 주요 국의 비자발적 시간제의 성별 구성비(1993)

단위: 천명, %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그리스	100.0 ( 60.4)	-	-	영국	100.0 ( 774.3)	32.9	67.1
네덜란드	100.0 ( 42.7)	39.3	60.7	이태리	100.0 ( 345.3)	34.4	65.6
뉴질랜드	100.0 ( 95.4)	34.0	66.0	일본	100.0 ( 680.0)	27.9	72.1
독일	100.0 ( 369.0)	12.6	87.2	캐나다	100.0 ( 759.0)	32.9	67.1
덴마크	100.0 ( 99.3)	16.1	83.9	터키	100.0 ( 11.0)	85.7	14.3
멕시코	100.0 ( 1.1)	0.9	2.3	포르투갈	100.0 ( 65.8)	23.7	76.3
미국	100.0 (2844.0)	37.2	62.8	프랑스	100.0 (1056.8)	21.1	78.9
벨기에	100.0 ( 142.4)	16.1	83.9	핀란드	100.0 ( 72.0)	43.1	56.9
스페인	100.0 ( 113.1)	22.7	77.3	호주	100.0 ( 525.4)	36.9	63.1

주: ( ) 안의 숫자는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수를 나타냄.

자료: OECD(1995), 'Employment Outlook', pp. 87~93

25) 김태홍·문유경,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pp. 43-45.

비자발적 시간제에 취업한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여성의 실업상황이 공식적인 실업의 정의에 의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며 다양한 실업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우리 나라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개념을 공식 통계에서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문지에 해당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비자발적 시간제의 규모파악을 위해 '일거리가 없어서 주당 36시간 미만을 일한 취업자'로 조작적 개념정의를 하고 이들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1998년 1월에는 남자가 약 25만명, 여자가 약 22만명으로 남자가 약 3만명 가량 많게 집계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남녀 모두 규모가 증가하고, 동시에 여자가 남자보다 규모가 커져 6월에는 남자 약 31만명, 여자 약 35만명으로 여자가 약 4만명 가량 많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규모의 변화는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시간제나 임시직에 취업을 하지만 추가로 더 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III-20> 성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

단위: 명

		199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부분취업자	남 자	258,748	305,010	254,004	283,774	264,026	310,460
	여 자	225,690	289,934	312,474	310,470	316,556	345,794
	전 계	484,438	594,944	566,478	594,244	580,582	656,254

자료: 통계청(1997, 199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들에 대한 성별 규모파악에 대한 정기적 작업이 필요하다.

##### 5) 비공식부문 고용

비공식 부문의 고용통계는 모든 노동자,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제기여를 알아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전통적 고용통계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들의 규모를 동한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공식 부문의 활동이 행정적 등록과 공식적 조직구성의 효과적 실시에 좌우되는 측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며, 경제발전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추정되는 큰 규모의 사업체를 측정하는 데 그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비공식 부문에 대한 개별적 통계를 내는 국가는 거의 없다.

비공식 부문의 경제단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판단기준을 사용한다면, 그 국가정의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어떤 판단기준은 비공식 부문의 경제단위를 상당한 수의 유급노동자를 가지지 못한 경제단위로 정의한다. 다른 판단기준은 소속 피고용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제단위(즉,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관련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소속 피고용인은 표준노동법률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다)를 비공식 부문의 경제단위로 정의한다. 또 다른 기준은 이 두 판단기준을 서로 다르게 조합하기도 한다. 국가정의가 여기에 주된 일이 비공식 부문에 있는 사람만을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부수적 일이 비공식 부문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에만, 비공식 부문 외에 주된 일이 있는 사람들이 고려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여성보다는 남성 사이에서 보편적일 것이다.

국제기준이 권고한 바처럼, 설사 경제단위가 비공식부문에서의 포함을 위한 판단기준을 만족시킨다 해도 특별한 활동의 제외여부를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여성은 이들 많은 상황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 활동의 배제는 여성근로자를 상당히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비공식 부문에서의 국가통계는 농업활동이 그 포함을 위한 판단기준을 만족시킬 때조차도 이를 제외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농업의 특별한 특징에 적용하고 시골지역으로 조사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특별한 측정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골지역 조사는 조사 실행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특히 농업이 노동력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러하다. 비공식 부문의 정의는 또한, 자가사용(own final use)을 위한 생산에만 종사하는 경제단체를 배제시킨다. 이 경제단위에 관련된 대부분의 노동자는 여성이다. 그 배제이유는 이들 활동의 목적이 고용이나 현금소득(cash income)의 발생에 있지 않고, 가구의 수요

를 위한 제공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을 하고 있으나 이는 비공식 부문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다룬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비공식 부문에서의 포함을 위한 판단기준(등록과 사업체의 규모면에서)을 만족시킬 것이다. 유급 가내근로자(paid domestic workers)의 배제에서, 이와 유사한 논거가 적용될 수 있다. 가정부, 경비원, 운전기사, 정원사 등의 이들 노동자들은 가계에 종사한다. 그러나 가계의 목적은 고용이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직 가계 자체의 수요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계고용은 비공식 부문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가계의 피고용인 역시 그러하다. 미묘하게 다른 상태는, 유급고용직의 가정부(homeworkers with paid employment jobs)의 경우이다. 이들은 그들의 고용주가 공식부문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비공식 부문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비공식부문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다만 학계의 일반적인 정의는 도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가내노동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등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무급가족종사자, 가내노동자,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의 여성비율은 상당히 높지만, 이들에 대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여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력 측정방법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

1. 조사방법의 특징 및 젠더 쟁점	65
2. 설문지	74
3. 노동력조사의 젠더쟁점	82
4. 노동력 측정에서의 성 인지적 개선 사항	130

---



노동관련 통계가 여성의 노동력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앞장에서도 언급된 정의와 분류 문제로부터 노동력 측정, 그리고 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난다. 본 장은 이들 원인 중 특히 노동력 측정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노동력 측정과 관련된 젠더 쟁점은 크게 세 부분 즉 조사방법, 설문지,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부분은 측정방법에 있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각 부분이 서로 연관되어 노동력 조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보통 한 국가의 노동력의 측정은 설문지를 통한 가구조사가 일반적이다. 이는 조사방법에 있어 가구조사가 수집자료의 기본적 개념, 종류와 범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조사목적에 부합한 정의와 적용대상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구조사의 일반적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으로, 가구조사에서 설문지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잘 정의된 설문지만이 신뢰성 있는 노동력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성 인지적 통계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의 진행 방법과 각 항목의 내용 및 분류 정도는 경제활동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설문지가 얼마나 성을 잘 인지하도록 만들어졌느냐, 다시 말해 얼마나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성을 편견 없이 잘 드러나게 했느냐에 따라 측정된 노동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설문지 작성에 고려되는 요인 중 하나가 어떠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상태에 접근할 것인가이다. 노동력조사의 기준기간을 1년의 주된 활동으로 측정하느냐 아니면 1주간의 활동을 통해 측정하느냐에 따라 설문지 작성 형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노동력을 측정하는 조사방법의 특징과 설문지, 노동력접근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 조사와 연관된 국내 노동력조사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성 인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조사방법의 특징 및 젠더 쟁점

노동통계를 수집하는 대표적 방법은 가구조사(household-based surveys), 기

업체조사(establishment-based surveys), 행정기록(administrative records)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 방법은 적용범위와 수집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 적용에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체조사와 행정기록 통계의 경우 이들은 수집이 용이할 뿐 아니라 조사항목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계의 성격상 통계조사의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즉 기업체의 기록들은 보통 임금과 관련된 근로시간, 근속기간 등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하나, 만약 이것들이 임금과 관련 없는 경우 정확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행정기록 또한 이것이 행정상 필요에 의해 작성됨에 따라 통계조사에 사용된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들 조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발간된 노동통계의 성격을 이해하고 성 인 지적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가. 기업체 조사

기업체조사는 개별기업체기록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통계정보를 얻는 조사이다. 자료수집은 기업체의 기록을 근거로 수집되므로, 기업이 영세하여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업의 경영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기업체의 조사의 장점은 특정기간동안의 고용시간, 임금과 근로기간에 대한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사항목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시계열을 얻을 수 있고, 남녀 취업자의 노동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기업체조사는 기업체에 대한 노동력 수요를 파악하고 예측하게 함으로서 남녀노동력 수요전망에 훌륭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체조사 통계는 경제활동의 일반적 상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젠더의 관심을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그 유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통 기업체조사는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작성되지 않는다. 기업체의 통계는 자주 종건기업체 이상 정규직 피고용자만 포함하고, 계절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임시근로자와 같은 한계근로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기업체 혹은 임시, 하청과 비정규형태의 유급노동에 대한 노동력 비율이 큰 국가의 경우 심각한 통계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조사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통 기업체의 기록은 임금과 출근에 관련된 기록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만을 한다. 따라서 기업체 기록은 통계 작성에서 원하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기업체가 그들의 기록이 통계의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록을 수정하여 작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표 IV-1>은 기업체 기록과 통계조사의 목적을 대비해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 중 고용인원, 근로시간, 임금에 관해 정리하고 있다. 물론 <표 IV-1>에서 제시한 것은 기업체 기록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각 국의 산업구조와 노동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IV-1> 기업체 기록의 문제점

구분	통계조사 목적	기업체 기록	통계의 문제점
고용인원	피고용자의 수	▶직장내 정규직피고용자의 수를 기록함	▶두개이상 직장을 가진 피고용자의 경우 중복집계 됨. 특히 여러직장을 가진 피고용자가 한 성(性)에 집중되었다면 겹더 차이에 영향을 미침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등의 근로자가 통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근로시간	실 근로시간	▶법적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가, 결근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함 ▶기업체 규약에 따른 근로시간만을 기록함	▶기업체는 근로자와 계약한 법적 근로시간 혹은 기업체 내규에 따른 근로시간만을 기록함에 따라, 통계정의에 따른 실 근로시간을 알 수 없음 ▶정확한 피고용자의 실 근로시간을 알 수 없고, 기업마다 근로시간에 대한 규칙이 달라 기업체간의 비교가 어려움
임금	피고용자의 실제 중 임금	피고용인의 정규임금만을 기록함	▶성과급 혹은 추가급여 등 일회성 급여에 대한 기록은 제외함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보통 기업체가 고용인원을 기록할 때 개별 직장의 피고용자의 수를 기록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록은 최근 선진국 등에서 증가하는 두 개 이상의 직장<sup>26)</sup>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이중 기록을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체는 고용인원에 대한 기록에 종종 시간제와 임시직 등의 근로자를 배제하기도 한다. 이것은 불완전부문의 노동시장에 우세한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노동 파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체 조사의 목적 중 하나가 노동력의 수요추정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것은 노동력 수요예측에 심각한 통계적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작업시간의 경우 기업체는 근로자와 계약한 법적 근로시간 즉 초과근로시간과 휴가, 결근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체 기록은 그 속성상 급여와 관련된 기업체내의 근로시간만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통근시간이 급여와 관련된다면, 기업체기록에는 통계조사의 정의와 관계없이 이를 근로시간의 한 부분으로 기록하지만, 역으로 작업장에서 보낸 시간이 급여로 연관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통계정의와 부합한다 할지라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의 기록이 각 기업의 내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 조사는 기업체간 혹은 근로자간의 비교는 거의 의미가 없다.<sup>27)</sup> 수입에 있어서도 기업체 기록은 피고용인에 대한 정규임금만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고, 성과급 혹은 추가급여 등 일회성 급여에 대한 기록은 제외한다.

이외에도 기업체의 조사는 젠더 쟁점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특징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기업체 기록들은 보통 근로자의 연령, 교육수준 혹은 이외 기술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 심지어 남녀근로자도 분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업체 조사<sup>28)</sup>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정

26)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직장을 동시에 갖는 근로자는 드물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많으며, 시간제 등의 확산으로 여러 직장을 갖는 근로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7) 다시 말해, 기업체는 각기 다른 임금지급과 근로시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비교는 무의미하게 된다.

28)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체조사를 보면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상용근로자수 1~4인 사업장),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매월노

확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나, 젠더 관심을 구체화하기에는 그 정의와 범위에서 제한이 있으며, 젠더 특징에 대한 유용성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 나. 행정기록

행정기록은 보험회사, 사회보험기관, 세무소 혹은 노동감독청 등에서 행정기관 기능의 한 부분으로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행정기록은 동기, 업무상상해, 파업과 같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고, 혹은 보험가입자와 수입, 직업과 근로시간, 등록된 사업과 이들의 크기와 산업 등과 같은 물리적 단위와 특징들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다.

통계로서 행정기록은 추가적 자료수집의 절차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기록은 기관의 운영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작은 지역과 인구일지라도 행정관리 상태에 있다면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며, 동일 기록 항목에 대해서는 좋은 시계열(time series)을 제공할 수도 있다.

행정의 일환으로 작성된 기업기록 혹은 행정기관의 자료들의 가장 큰 특징이며 단점은 제한된 적용범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 조사가 젠더 특징에 대한 유용성에 한계를 갖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예를 들어, 보험기록에 나타난 고용통계는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것만을 포함하며, 고용사무소에 기록된 실업과 불완전고용에 관한 통계는 구직을 하는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실업보험수혜자에 관한 기록의 경우 실업 시 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혹은 계약시간보다 적게 일을 할 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피고용자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업무상 상해에 관한 통계 또한 감독관에게 보고되거나 혹은 보상받은 상해에 제한하여 기록된다. 즉 근로감독관에게 보고되거나 보상계획을 가진 업무상 상해에서 다루어진 정보에만 의존하여 기록된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보다 불완전한 고용상태에 있기 때문에

---

동통계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등 노동부가 실시하는 조사와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등 통계청이 실시하는 조사가 있다.

보상계획의 행정절차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은 업무상 상해에 대한 통계에서 저집계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산업쟁의에 관한 통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수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법적 파업으로만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통계는 산업쟁의에 직접 참여한 근로자만을 집계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보고서는 산업쟁의에 참여한 근로자를 성 혹은 연령대 등으로 분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기록은 기업체 기록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 통계수집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다. 이에 행정기록은 통계에서 목적하는 정의와 다른 경우가 많다. 행정기록통계는 그 기관의 업무에서 다루는 사람만을 기록하게 되는데, 보통 노동관련 행정기록의 경우 공식부문의 전일제(full-time) 정규근로자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 임시 및 계절근로자, 하청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등은 자주 동일범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근로형태가 여성에게 있어 보편적인 형태임에도, 행정기록은 이들 집단의 기여와 특징을 완전히 반영하는 데는 그다지 유용한 출처가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정기록의 정보종류에 따라 젠더 차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기업체조사 통계와 유사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가구조사

가구조사는 가구를 조사단위로 하여 가구원으로부터 설문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는 조사로서, 전체인구(인구센서스<sup>29)</sup>) 혹은 표본인구(가구표본조사)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집계된다. 이에 가구조사통계는 기업체 혹은 행정기록과는 달리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하청업체 종사 근로자와 소규모 생산업체의 유급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집단의 근로자를 다룰 수 있으며, 취업, 실업, 불완전고용, 근로시간, 유급자영업의 수입, 업무상 상해, 노동조합참여

29) 가구조사가 전체인구를 다루고 있지만,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국가에서는 군인, 집단가구, 일부기관 등을 적용대상 집단에서 제외하고 있다.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변수의 결합된 분석을 통해 성 인지적 통계발간을 가능하게 하는 조사방법이다.

무엇보다 가구조사의 장점은 기록과 행정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에 비해, 수집자료의 종류와 범위, 기본적 개념, 자료항목의 정의와 분류에서 훨씬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구조사가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가장 보편적인 조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구조사는 기업체조사와 행정기록과는 다른 젠더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가구조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젠더 쟁점은 설문지, 접근법, 응답자와 조사원의 태도 등이다. 접근법이 설문지의 질문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설문지의 젠더 쟁점에 포함하여 분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세 영역에서의 젠더 쟁점을 고려하고 있다.

먼저 설문지에서 젠더 쟁점은 인지적 문제, 분류문제 등이 언급될 수 있다. 인지적 문제는 일의 개념과 정의에서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할 가능성의 문제이며, 분류문제는 직업, 산업 등과 질문의 답항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의 세분화와 누락의 문제이다. 접근법의 문제는 설문지 질문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젠더 쟁점으로 나타난다. 즉 어떠한 접근법으로 노동력을 조사할 것인가는 설문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접근법은 노동력의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젠더 쟁점은 '3. 노동력조사의 젠더 쟁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응답자와 조사원의 태도에 대한 젠더 쟁점은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의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와 주관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통계적 오류를 말한다. 응답자는 설문지의 정의를 잘못 이해할 수 있고 간혹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답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활동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혹은 수입과 같은 예민한 항목에 대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경제활동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 질 때 더욱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반면 조사원의 경우는 정보에 대한 부호화 작업에서 통계의 오류를 발생하고 있다. 즉 동일한 응답이 남자나 혹은 여자나에 따라 다르게 부호화됨으로서 나타나는 젠더 오류이다. 예를 들면, 농업에 종사하는 남자는 취업자와 자영업자로 분류되나 여자의 경

우는 비경제활동인구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부호화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원에게 응답의 부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설명하는 적당한 부호화도구(지표와 지시)가 주어졌는가와 여부(예를 들어, 일반 예시문을 조사원 혹은 부호화작업자에게 제공했는가 여부)는 중요하다.

이와 같은 단점에도 가구조사는 기업체와 행정기록의 노동통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노동통계의 젠더 관심을 반영하기에 이상적 자료원임은 틀림없다. 그리고 실제 측정방법에서 쟁점이 되는 설문지, 접근법의 대부분은 가구조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 라. 특별조사

특별조사는 대개 기존 노동력 조사를 통해 측정하기 어려운 조사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대표적인 조사로는 비공식부문조사와 시간사용조사를 들 수 있다. 이들 조사는 숨겨진 여성노동부분을 가시화하고, 비공식부문의 노동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남녀의 노동상태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

### 1) 비공식부문조사

비공식부문조사는 특별히 소규모 기업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설계된 조사이다. 대개 비공식부문의 기업체는 공식부문에 비해 조사하기 어렵고, 높은 이직률<sup>30)</sup>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단계에 걸쳐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첫 단계는 표본틀을 만드는 단계로 비공식부문의 경영자와 기업체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sup>31)</sup>. 이때 접근되는 방법은 가구조사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첫 단계에서 파악된 표본틀을 이용하여 기업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기업체의 정보는 보통 경영자로부터 직접 얻게 된다<sup>32)</sup>.

30) 이직률이 매우 높음으로 표본틀(sampling frame)로서 사용될 주소록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매우 어렵다.

31) 첫 단계의 조사는 비공식부문의 표본틀을 만들기 위한 단계로서, 만약 다른 조사에서 원하는 비공식 부문의 표본틀을 만들 수 있다면 이 조사를 기반으로 바로 기업체 단위 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즉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

비공식부문에는 법적 틀로 본다면 불법의 경계에 존재하는 사업체가 많이 있다. 그래서 비공식부문은 어느 정도 과소 보고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공식부문에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생계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다수의 여성노동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성인지적 노동통계의 분석에서 비공식부문조사는 여성노동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조사이다.

## 2) 시간사용조사

시간사용조사는 가구조사의 특별한 형태로서 한 가구원에 의해 사용된 모든 활동을 시간흐름에 따라 조사한다. 여기서 모든 활동이라 함은 조사기간동안의 경계 혹은 비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시간사용조사는 일반적 가구조사에 비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고 오류 또한 감소시키는 데 유용한 조사이다. 특히 일한 시간과 다른 것을 한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거나, 농업종사자, 가내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일한 시간과 일하지 않은 시간이 자주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사용조사가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시간사용조사는 고용측정에 있어 다중 활동과 한계 활동, 그리고 실업측정에서 구직활동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특별히 시간사용조사는 고용시장뿐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다수의 근로자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시간사용조사는 전체 일한 시간, 즉 경제 혹은 비경제 활동에 대해 사용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게다가, 시간사용조사는 일을 한 활동의 시간표와 형태를 알 수 있게 하여, 유사한 직업을 가진 남녀간의 시간사용을 통해 왜 여성이 관리직에 승진되는 기회가 적은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시간사용조사에서 응답자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활동상태 혹은 근로시간에 관해 정확히 기록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짧은 조사기간동안 수행된 활동의 종류, 이들 활동의 내용과 그들 각각에 관한 사용된 시간에 관해서

32) 왜냐하면 비공식부문에 속하는 기업체는 대부분 본인 혹은 본인과 가족종사자로 경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시간사용조사는 성 역할이란 사회적 관념 속에 묻혀있던 여성의 노동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일한 것’과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활동 구분을 전통적 가구조사에서보다 명확히 함에 따라, 여성의 전체 노동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시간사용조사는 무급가사활동과 다른 비시장활동의 많은 부분을 일로 간주하여, 이들 활동에 대해 매우 세밀히 측정한다. 이에 응답자는 각 활동종류에 따라 세밀히 분리해 정보를 기입해야한다.

시간사용조사는 여성의 노동을 가시화하는 수단이며, 노동에 대한 젠더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이다. 선진국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조사가 실시중에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9년 통계청에서 첫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 2. 설문지

노동력 통계는 기업체 조사와 행정기록의 보고를 통해 수집되기도 하나 이들 조사의 제한된 적용범위로 인해 한 국가의 노동력 실태조사는 가구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구조사는 조사원이 설문지를 통해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가구조사는 조사목적에 맞는 설문지 작성에 세세한 주의가 요구된다. 설문지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개념의 명확한 전달과 더불어 물론 남녀의 경제활동상태를 누락 없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설문지의 구성이 경제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조사원과 응답자 모두에게 주관적 이해를 허용하게 되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통계의 오류와 한 쪽 성에 대한 노동력 저평가의 원인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잘못된 통계결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시간의 낭비로 직결되며, 이로 인한 정책결정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설문지의 구성과 자료수집과정은 통계의 신뢰성뿐 아니라 성 인지적 통계작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노동력 조사의 설문지 특징을 살펴보고 조사원과 응답자의 설문 태도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 가. 설문지 구성과 젠더 쟁점

설문지 구성 등에 의해 잘못 측정되는 오류를 비표본오차라고 한다. 표본오차가 수학적 방법에 의해 그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비표본오차는 수학적 계산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설문지 구성이 실제 측정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문지를 통해 나타나는 통계오차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나타난다. 첫째는 설문지의 질문구성이 조사 목적을 모두 포함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와 같은 오류는 보통 연구자의 전문 지식 부족이나 혹은 조사비용과 시간의 한계로 나타난다. 두 번째 원인은 설문 항목의 정의, 분류와 단어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자와 응답자 모두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설문지는 이와 같은 오류의 요인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한 국가의 노동력을 측정하는 조사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노동력 조사의 설문지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젠더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핵심 단어 중심의 질문 방식, 일시휴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측정, 조사원과 응답자의 태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젠더 쟁점은 정의와 인지의 문제이고, 두 번째 젠더쟁점은 분류와 누락의 문제로, 그리고 세 번째 젠더쟁점인 조사원과 응답자의 태도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의식, 그리고 이로 인한 성별역할과 관련된 문제로 나타난다.

#### 1) 인지적 문제

설문지를 구성할 때 경제활동의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 설문지의 첫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거름질문(filter question) 혹은 선도질문(leading question)이라 한다. 거름질문은 경제활동의 분류와 면접과정에서 수집되는 모든 하위 정보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의 오류는 전체 면접과 조사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통 노동력과 관련된 최초의 거름질문은 응답자가 취업자의 범주에 속하는

가를 구분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국가마다 취업자의 범주를 분류하기 위한 문항은 조금씩 다르나 그 첫 질문은 '주로 무엇을 했는가?',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주된 활동(일)이 무엇인가?' 등으로 시작하고 있다. 첫 질문을 보면 '주된 활동', '일', '수입이 되는 일' 등과 같은 눈에 띄는 단어(어구)가 있는데, 이를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핵심단어라고 한다. 핵심단어를 이용한 설문 방식은 노동력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조사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들 단어는 응답자의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취업자 범주를 정하는 데 중요하다.

문제는 '일', '수입'과 같은 용어가 응답자에 따라 얼마든지 주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많은 경우 응답자는 전통적 개념의 일 즉 임금, 이윤 목적으로 한 유급노동만을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수입이란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수입이 있는 일이란 유급노동을 하며 이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여긴다. 이런 식의 개념이해는 정규직 임금근로만을 수입 있는 일로 간주하게 되어 비공식부문의 노동을 취업자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비공식부문의 다수가 여성임을 고려하면, 상당부분의 여성이 통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작업장이 집안인 경우, 여성들은 자신의 일을 수입이 있는 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보통 정식 고용계약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일하는 것이 편법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 가족기업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일에 참여하는 횟수가 적고 비정기적일 때 자신들의 활동을 경제적인 활동으로서보다는 남편을 돕는 내조의 일환으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과 수입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이해는 대개 성 역할의 문화적 인식에 의해 나타난다. 성 역할에 대한 문화적 인식은 여성이 가정주부로서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가정한다. 즉 남성은 임금소득자로, 그리고 여성은 가사책임자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으며, 이를 보편적이고 고정된 행태로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많은 경제적 활동을 부차적인 일로 간주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SNA의 경제활동 정의에 따르면 여성에 의해

수행된 활동들은 경제활동의 경제선상에 있기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자가소비를 위해 수행된 활동들은 더욱 이와 같은 경제선상에 서게 된다. 그리고 경제선상에 있는 경제활동은 응답자와 대리 응답자, 그리고 여성 응답자 자신에 의해 잘못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활동’ 혹은 ‘임금 또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일’과 같은 개념은 경제활동의 형태와 보수(임금)의 크기에 따라 주관적 이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영업 경력 혹은 응답자가 가구의 다른 가구원에 대한 고용경력을 응답할 때 주관성을 가질 수 있다. 조사에 사용되는 결근, 구직과 같은 개념을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는가는 설문지 설계와 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지적 쟁점에 대한 조사가 1987년 미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실시된 적이 있다.<sup>33)</sup> 미국에서 실시된 실험연구는 유급노동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려 했던 것으로, ‘지난 주 수행한 유급노동’에 대한 응답이 집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당시 대학생들 중 일부 학생들은 헌혈, 이웃집 잔디 깎기, 이웃집 애보기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들의 활동을 다른 학생과 대학교 직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보았다. 결과는 이들의 노동을 유급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을 유급노동으로 인정한 집단들을 보면, 대학생들이 대학교 직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유급노동’의 개념이 종사상지위에 따라 달리 생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급노동으로 분류한 다수의 학생들은 지급형태가 현금이 아닐 경우는 이를 경제활동에서 단호히 배제시키고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응답자는 현금 이외의 지급형태의 경우 이를 보상차원으로 생각하기 보다 호의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OECD 회원국으로 하여금 ‘유급노동’을 ‘화폐 혹은 재화(money or goods)로 받을 수 있는 일련의 활동’으로 질문을 재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력의 측정문제는 정규직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국가나 혹은 농가

33) Anker, R., Khan, M. E., and Gupta, R. B.(1987) 'Biases in measuring the labour force: Results of a methods test survey in Uttar Pradesh, India', *International Labour Review*, no. 2, March-April.

여성의 경제활동을 측정할 경우 훨씬 예민하게 언급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연구가 ILO에서 지원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인도 Uttar Pradesh의 세 지역에서 행해졌는데, 연구 목적 중 하나가 농가여성의 경제활동 측정에 있어 설문지 작성 형식과 응답자 차이가 수집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조사는 1,621가구의 표본을 특별 조사계획에 따라 계층적으로 나누고 세 개의 서로 다른 설문지에 남자조사원과 여자조사원, 대리응답자와 응답자 본인으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첫 번째 설문지는 '주된 활동(main activity)', '보조 활동(secondary activity)', '수입을 위한 노동(any work for earnings)'과 같은 핵심어구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설문지는 설문 목록 속에 14개의 활동들을 나열하고 그 중 응답자가 참여한 것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설문지는 활동목록과 함께 핵심단어형 질문을 묶어 만들었다. 설문 결과를 보면, 활동목록 형태의 설문지를 사용한 경우가 핵심언어를 사용한 형태의 설문지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sup>34)</sup>, 응답자의 경우 남자 조사원과 여자 조사원 그리고 대리응답자와 응답자 본인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설문지형태 자체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결론은 1983-1984년에 실시한 Costa Rica와 인도의 Kerala에서 실시한 ILO의 방법론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Costa Rica 조사는 '유급, 이윤 혹은 가족수입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초기 보고된 2,055명의 응답자에게 활동표(activity list)를 통해 다시 조사해 보았으며, 활동표를 이용한 결과 이 중 102명이 조사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설문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응답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남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들 특히 성 역할이 뚜렷할 경우

34) 활동목록을 이용한 설문형태에서는 88.3%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고, 반면 핵심언어 형태의 설문지는 15.7%를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1961, 1971, 1981년사이의 인도 인구조사에서도 여성노동력비율은 그 차이가 10-70%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구조사의 핵심단어를 조사 때마다 달리 사용한 것과 인도여성의 의식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1971년 인도의 인구조사에서는 사회·문화적 인식으로 인해 많은 인도여성들이 전일제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정주부가 더 '주된 활동'이라 생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이 매우 낮게 보고되기도 하였다.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는 곧바로 성별 자료의 신뢰성과 관련될 것이다.

## 2) 분류와 누락

설문지를 설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분류와 누락의 문제이다. 노동통계 전반에 있어 분류와 누락의 문제는 직업<sup>35)</sup>, 종사상지위<sup>36)</sup>, 소득<sup>37)</sup>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류와 누락의 문제는 설문지와 관련된 문항설계의 문제로만 좁혀보고자 한다. 누락문제는 분류문제와 별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누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질문과 답항으로 구성된다. 먼저 질문과 관련하여 젠더 쟁점은 첫째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인지적 문제이며, 둘째 구성된 질문이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경제활동들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이며, 셋째 필요한 질문이 빠진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 
- 35) 직업분류의 문제는 첫째 서로 다른 성격의 직업군을 하나로 묶는 데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국제직업표준분류인 ISCO-BB의 경우 기술자와 부교수를 같은 대분류 집단으로 묶고 있고, 운전자 직업군이 요리사 직업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서그룹에 자료입력사원을 포함하는 등의 문제이다. 둘째로 여성의 직업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분류된 문제이다. 즉 여성이 우세한 직업군에 대해 세분류 정도가 남성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이 우세한 직업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 36) 종사상지위의 분류 문제는 첫째 무급가족종사자의 분류 문제이고 둘째는 세분류의 문제이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분류문제는 분류되지 않는 문제와 남편과 동등하게 파트너로 일한 가족기업의 여성에 대한 분류문제이다. 국제표준종사상지위 분류인 ICSE-93에 의하면 가족기업을 경영할 때 남편과 파트너 관계로 일한 여성은 경영자 혹은 자영자로 분류되어야 하나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세분류 문제는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피고용인, 고용주, 자영자의 경우 그 하위분류를 보면, 피고용인은 정규직 피고용인 외에도 파견근로자, 임시피고용, 근로단체 구성원 등으로, 그리고 자영자의 경우 생계형 자영업자, 생산자조합의 구성원 등 세분류가 가능하며 세분류를 할 경우 여성의 지위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다.
- 37) 수입통계는 통상 사회보장급여, 비정기적 급여, 자영업의 수입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1998년 제16차 ICLS는 수입통계의 집계에 사회보장급여를 포함하고 정기 혹은 비정기의 유급노동과 자영업의 모든 수입을 포함한 수입통계 정의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국가는 유급노동과 자영업 수입을 분리하여 수집하거나 사회보장급여를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문제부터 보면, 구성된 질문이 노동시장의 활동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이다. 일시휴직자의 판단기준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일을 쉬고 있을 때는 판단하기 쉽지만, 행상, 임시직 일용노동자, 가내수공업자들처럼 소속할 직장이나 사업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장사가 안되거나 일거리가 없어 잠시 휴식할 때 이를 일시휴직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통계 집계단계에서 누락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질문의 순서는 남녀 노동실태파악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지난주의 근로시간을 먼저 묻고 다음으로 평소 1주간 근로시간을 묻고 있다. 이는 평소 36시간 미만 일을 하더라도 지난주에만 36시간 이상 일을 하면 모두 전일제근로(full time) 분류함에 따라, 가사 등의 이유로 평소에 36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사람(하지만 지난주는 36시간 일한 사람) 특히 여성에 대한 분석이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로 질문이 빠진 경우는 고용형태<sup>38)</sup>와 근무형태<sup>39)</sup> 등의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설문지의 문항 수는 비용과 관련되어 있어 무작정 늘리는 것만이 좋은 방안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파악에 중요한 핵심질문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과 근무형태 또한 남녀의 노동형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질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질문뿐 아니라 답항의 분류도 성인지적 통계수집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된다. 만약 답항이 너무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중요한 항목이 답항에 빠질 경우 남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원인 파악이 어렵게 된다. 포괄적 의미의 답항은 원인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많이 발견되는 데, 「고용구조조사」의 경우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묻는 질문을 보면, 여성은 성희롱과 남녀차별대우가 회사를 그만두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임에도 답항은 이를 회사내 인간관계 때문이란 포괄적 대답만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 경우 인간관계 때문과 함께 직장내 성희롱과 남녀차별대우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퇴직에 대한 성 인지적 방안일 것이다. 또한 비구직 이유를 보면, 많은 여성이 채용경쟁

38) 임금근로자 혹은 비임금근로자

39) 전일제 근로자 혹은 시간제 근로자

에서 자주 차별을 받아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답항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나. 가구주 중심조사와 조사원 및 응답자 태도

현재 대부분의 국가의 노동력 설문은 가구주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 가구주를 중심으로 가구원의 노동력을 파악하는 방식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구성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복지정책<sup>40)</sup>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가구단위 조사는 대개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 장의 설문지에 15세 이상 가구의 가구원 모두를 기재하는 형식을 따르고, 설문지 작성은 가구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가구주 중심조사가 장점이 있음에도 많은 학자들은 이런 방법의 조사가 많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가구를 대표하는 응답자는 주로 남성가구주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응답자가 남성일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서 왜곡된 응답을 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sup>41)</sup> 남성은 가장으로 혹은 생계부양자로서 자신의 경제활동을 과장해서 말하는 반면, 배우자의 경제활동은 다소 축소하거나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 예<sup>42)</sup>로 방글라데시에서 원조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방글라데시 여성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 때 이 여성은 닭을 기르고 야채를 재배하고 쌀을 정미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동일한 질문을 남성에게 했을 때 그는 여성의 활동에 대해 요리하고 가사를 돌보았다고 응답했었다.

40) 예를 들면 여성가구주 혹은 1인 가구주의 종대와 같은 거주유형의 변화를 분석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찾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

41) UN(1984), *Improving Concepts and Methods for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 United Nations.

42) Waring, M(1988), *If Women Counted - A New Feminist Economics*, Harper: Sanfrancisco.

이와 같이 응답자가 누구냐<sup>43)</sup>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상당히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집 근처에서 가사를 돌보며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누가 응답자이나, 응답자의 성(性)이 무엇이나,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활동의 상태분류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성별분업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나라는 응답자 뿐 아니라 조사원의 성과 태도에서도 통계수집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국가의 대규모 조사에서 조사원은 응답자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계층일 때가 많고 때때로 조사원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응답자를 이끌려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 특히 남성조사원이 조사할 경우 이런 태도를 보이며, 이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sup>44)</sup>. 남성조사원은 여성조사원에 비해 여성은 가정주부라는 선입관이 높으며, 조사시 대표 응답자를 남성으로만 하거나 혹은 여성응답자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더라도 가능하면 남성과 함께 면접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 가부장적 사회라면 남성과 함께 조사의 응답자로 임하는 여성은 자신의 경제활동을 축소해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과를 편향되게 할 것이다.

### 3. 노동력조사의 젠더쟁점

#### 가. 노동력 조사의 접근법 비교

노동력조사의 측정에 대한 접근법은 경제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그 방법론 또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노동력 접근방법을 보면, 19세기 노동력 조사에서 제시되었던 유업자 접근법(gainful worker approach)을 비롯하여, 노동력 접근법(labour force approach), 징후적 접근법(symptomatic

43) 우리 나라의 경우는 초기 설문지의 응답자로 가구의 가구주를 원칙으로 했으나 현재는 가구주와 그 배우자로 하고 있다.

44) R. Anker(1990),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A critique of current definitions and data collection methods,"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bour statistics*, ILO

approach), 노동활용 접근법(labour utilization approach), 잉여노동력 접근법(labour surplus approach), 한계생산성 접근법(marginal productivity approach) 등 여러 가지 접근법이 노동력 접근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접근법의 영향은 비공식부문과 불완전고용이 높은 개발도상국가 혹은 이들의 고용상태에 접해 있기 쉬운 여성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본격적인 노동력 조사에 사용되었던 방법은 유업자 접근법이다. 유업자 접근법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방법으로 일을 한 유업자와 하지 않은 무업자를 나누는 방법이다. 유업자 접근법은 한 국가의 노동력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긴 했으나 전쟁과 실업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여러 가지 접근법이 노동력 조사에 시도되었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력 접근법이다. 노동력 접근법은 현상태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호 배타적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각 국가에 권고하는 있는 접근법이다.

각 접근법은 한 국가의 노동력을 파악하는 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두 접근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노동통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1) 유업자 접근법

유업자 접근법은 전체인구를 직업이 있는 유업자와 그렇지 않은 무업자로 나누는 후, 유업자에 대해 다시 직종별 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에서 유업자란 일정한 연령 이상의 인구 중에 일상적으로 소득이 있는 직업<sup>45)</sup>(gainful occupation)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업자접근법은 1870년 미국센서스 조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접근법은 경제활동의 주요 패턴을 회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계절별 패턴을 가지거나 반복하여 나타날 때 유용한 접근법이다. 이에 유업자 접근법의 조사기간은 통상 1년 단위가 많이 사용된다.

유업자접근법은 1년 동안 주 활동을 통해 개인의 평상활동상태를 관별하게 된

45) 소득이 있는 직업이란 종사자가 그 직업에서 돈 또는 돈에 상당하는 가치를 얻거나 또는 시장성 있는 물품의 생산에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즉 기준기간 동안 일한 주(周) 혹은 일(日)이 많으면 유업자로, 그렇지 않으면 무업자로 구분하게 된다. 이것은 1주간의 활동상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기준(priority criterion)을 적용하여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노동력 접근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대개 유업자 접근법은 한 국가의 노동력 측정이 노동력 접근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적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유업자 접근법은 평상시에는 경제활동을 했으나 현재조사기간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 즉 지난해에 주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조사시점을 전후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계절적으로 일이 있을 때에는 경제활동을 하나 농한기와 같이 계절적으로 일이 없을 때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일을 하나,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을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주동안 일을 하지 않은 사람 등과 같이 평상시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을 유업자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업자 접근법으로 수집된 통계는 또한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sup>46)</sup> 첫째, 시간의 개념이 없다. 즉 특정한 기준시점이 시점이 명기되지 않아 소득 있는 직업에 언제 종사했는지 알 수가 없다. 둘째, 활동의 개념이 없다. 즉 조사 당시에 그 직업에 종사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셋째, 처음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은 보고할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전체 노동력 인구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조사 직전 며칠동안 일을 한 사람은 무업자로 구분되며, 조사 직전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절적인 일이나 병 등으로 일시휴식을 하고 있을 때는 유업자로 인정된다.

유업자 접근법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과 더불어 심각해진 실업문제로 정부 및 시민의 관심이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자료수집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게 되었다. 그리고 유업자 접근법의 문제점의 논의는 이를 중심으로 많은 실험적 조사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 2) 노동력 접근법

194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서는 유업자 접근법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접

46) 한상복, 권태환(1986), 「경제인구학」, 서울대출판부, p. 230.

근법으로서 노동력 접근법(labor force approach)이 사용되었다.

1950년의 세계 인구센서스계획과 관련하여 국제연합과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각국의 노동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취업자 접근법과 노동력 접근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1970년 들어 노동력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고 노동력 접근법을 통해 집계한 통계를 경제활동인구의 국제비교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력 접근법은 1일 혹은 1주 동안의 경제활동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취업자 접근법에서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취업상태 여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노동력 접근법은 두 개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노동활동 또는 구직활동 등 '실제활동' 개념이며, 둘째는 '시간기준' 개념이다. 즉, 이 방법은 어느 특정한 기간 내에 활동한 노동 또는 구직의 유무에 따라서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한다.

노동력 접근법은 총노동가능인구 중에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를 측정함으로써 노동력공급의 총계적 측정을 가능케 하도록 고안되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가정 즉 노동가능연령인구가 명확하고, 개인의 활동상태를 서로 배타적인 범주로 분류할 수 있고, 총 노동공급량은 경제활동인구의 크기로 측정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가정에 의하면 노동력 접근법은 한 국가의 남녀 노동력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최적의 접근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른다. 먼저 노동가능연령인구의 범위를 잡을 수 있다는 가정은 일정연령 이상의 인구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던가 보편화된 퇴직연령 또는 연금해당연령이 공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노동연령의 상·하한선을 정확히 정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15세-64세를 노동가능연령인구의 범위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을 노동가능연령으로 보고 있는 등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연령을 잡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력 접근법은 전체인구를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서로 배타적인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가정 또한 여러 면에서 무리수가 있다. 노동력 접근법의 기본구조는 일정 연령(15세 혹은 16세 이상)이상의 인구를 특정기간(보통 1주일)동안 일을 했는지 여부를 통해 두 집단(일한 집단과 일하지 않은 집단)으

로 분리하고 일하지 않는 집단은 구직여부와 취업가능여부를 통해 이를 다시 분리한다. 여기서 일을 한 집단을 취업자라 하고, 일을 하지 않은 집단 중 구직을 했고 일할 수 있는 집단을 실업자로 구분하고, 구직을 하지 않았고 일 또한 할 수 없는 집단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리한다<sup>47)</sup>.

<그림 IV-1> 노동력접근법의 분류체계



하지만 이와 같은 분류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 취업자의 범위가 최소 노동시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18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취업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미국의 인구센서스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으면 노동시간에 관계 없이 취업자로 간주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5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취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ILO의 경우 1시간

47) 노동력접근법은 개인이 세 가지 기본 범주 중 오직 한군데에만 들어갈 수 있게 우선 순위법칙(Priority Rules)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순위법칙이란 활동상태의 분류 시 기준기간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을 경우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활동을 구분한다는 의미이다. 즉 일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되며 학교에 다니며 일을 찾고 취업의사가 있는 학생은 실업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우선순위법칙의 결과로 취업은 언제나 기준기간동안 얼마동안의 시간에 그 일을 하였느냐에 상관없이 다른 모든 활동에 우선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단 한 시간 일한 것도 취업으로 분류된다.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의 범주에 간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최소노동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나에 따라 여성 취업자 수는 일정부분 변동을 보일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의 범주에는 비경제활동적인 요인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즉 직장은 갖고 있지만 조사기간 중에 일시적 병이나,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시 휴직중인 사람은 취업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일하게 일기불순, 대기,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는 조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실상 이런 비경제활동적인 요인이 경제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여부는 노동력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달렸다. 조사의 목적이 생산량 또는 노동생산성의 측정에 있다면 이런 비경제활동적인 요인은 경제활동의 정의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어느 한 주간의 노동공급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런 비경제활동적인 요인들도 경제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겠다<sup>48)</sup>. 그리고 실업자 범주는 이외에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분류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 실업자의 조건은 ①현재 일을 하지 않고, ②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③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만약 구직활동을 못했으면 특별한 이유 즉 일기불순, 대기,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우선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가의 여부는 그리 간단히 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직장이 없고 구직을 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할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학력졸업자의 경우 업무의 수준이나 보수 및 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의 성격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일할 의사가 있다고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바라는 근로조건 및 이들의 구직활동의 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야만 노동공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일의 성격에 대한 언

48) Hauser, P. M., "The Measurement of Labour Utilization", *Malayan Economic Review*, 19:1-5, 1974.

급이 없이 구직활동을 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여성의 경우 직장이 없는 상태로 일할 의사가 있으나 적극적 구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과거 구직경험이 있으나 일을 찾을 수 없어 포기하거나 혹은 가사일 등의 이유로 조사기간 동안 구직을 못한 경우가 많다. 특별히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 찾기를 단념한 사람을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구조상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훨씬 많다. 실망노동자를 실업자로 간주하는 국가들로 있지만 대부분은 실망노동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킨다.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가정을 만족한다면 노동력 접근법은 노동공급

<표 IV-2> 노동력 접근법의 특징 및 장·단점

접근법	특징	장점	단점
유업자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70년 미국센서스조사에서 처음 실시.</li> <li>▶노동가능인구를 유업자와 무업자로 구분.</li> <li>▶경제활동인구의 통상활동상태를 회상술 통해 수집함.</li> <li>▶조사기준기간은 통상 1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절근로자, 비정규근로자, 불규칙적으로 노동할 공급하는 경제활동인구 파악.</li> <li>▶이론적으로 계절노동과 임시노동형태 등 불규칙적 노동이 많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는데 유리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시점과 활동의 개념이 없어 조사당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언제 종사했는지 알 수 없음.</li> <li>▶조사기준기간이 길어 신속한 경제활동인구 파악이 어려움</li> <li>▶처음 직장을 찾는 사람은 보고할 직업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에서 제외됨</li> </ul>
노동력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기준기간 동안(통상 1주)의 경제활동상태를 반영(현상태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반영)</li> <li>▶노동가능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함. 그리고 이들 집단중 오직 한 집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법칙을 적용함</li> <li>▶경제활동인구의 국제 비교에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시점과 활동에 대한 개념이 확실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취업 여부와 산업활동을 잘 보여줌.</li> <li>▶경제활동을 배타적인 세 범주로 구분함에 따라 누락되는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짧은 기준시점의 단면적인 활동상태를 파악함에 따라 계절, 임시, 일용 등 불규칙 취업자들의 경우 누락 가능성이 높음.</li> <li>▶국가마다 노동가능연령, 취업자의 최소노동시간 등의 기준이 일정치 않음.</li> </ul>

량을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인구의 크기로써 측정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취업자들은 모두 똑같은 양의 노동을 제공하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노동공급량은 노동시간, 노동의 강도 및 노동에 들이는 개인의 정성 여부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취업자들은 이러한 노동공급요인들에 있어 다양성을 보인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자들도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고, 노동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취업과 실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이는 총노동공급량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실제 노동력 접근법의 가정은 정규직 임금근로가 보편화된 사회가 모델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농업부문의 비율이 높은 국가 특히 제 3세계 국가의 경우, 노동력의 규모를 측정하는 데 노동력 접근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 나. 미국 및 일본의 노동력조사

### 1) 미국의 노동력조사

미국의 대표적 노동력조사는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이다. CPS는 미국정부가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력의 인구학적 특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 월 1회 실시하는 노동력 조사로서, 인구통계국(Bureau of the Census)이 조사하고,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자료분석 및 월별 실업률의 보고를 담당하고 있다.

CPS는 1940년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인구를 조사하면서 시작되었고, 현재의 조사명칭은 1942년에 인구통계국이 설립되어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CPS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CPS의 분석과 월별 실업률에 대한 보고가 1959년 노동통계국으로 이전되면서 지금과 같은 업무분담체계가 세워졌고 동시에 표본수가 8,000가구에서 60,000가구로 증가했다.

CPS는 1967년과 1994년 두 차례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특히 1994년에 개

편된 CPS는 인구통계국과 노동통계국이 1986년 이래 전문가를 모아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조사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설문지의 전반적 개편은 물론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컴퓨터활용 입력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설문지의 개편은 1967년 개편 이후 미국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많이 변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서비스업의 증가, 제조업의 감소와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성취업의 증가가 주요 개편의 이유였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①새로운 직업과 고용형태가 나타났고, ②자영업이 증가했고, ③또한 시간제의 증가로 인해 여러 직장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④실업의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1967년 설문지 개편의 동기<sup>49)</sup>를 주었고 1994년 1월 공식적으로 개편된 설문조사가 실시되기까지 여러 차례 시험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1994년 CPS 개편은 통계수집상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었으며, 크게 두 가지 측면의 개선이 있었다. 첫째는 설문측정상의 방법으로 면접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설문지의 개선이다. 컴퓨터 활용 면접방법은 크게 4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컴퓨터 활용은 동일한 응답자에 대해 과거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응답대조를 통해 오차를 줄일 수 있고, 둘째 설문지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음 질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해당의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셋째 자료수집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재 잘못과 범위를 벗어나는 응답을 제거할 수 있고, 넷째 자동으로 주 시스템에 전송하게 됨으로서 자료상실의 오류를 감소시켰다.

조사표는 크게 3가지의 방향에서 개선되었다. 첫째 질문내용과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둘째 질문순서에 의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sup>50)</sup>을 제거하

49) 설문지의 개편 필요성을 보면 ①조사표상의 용어나 개념의 변화, ②문항과 개념의 모호성으로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경우 문제, ③질문의 형식으로 잘못된 질문의 순서, 혼돈을 야기시키는 질문, 면접자의 추측에 의존해야하는 질문 등에 대한 문제, ④실당 실업자 등의 측정이 애매하다는 문제, ⑤CPS와 BLS의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of Establishment 조사 결과상의 차이가 점차 증가되는 문제, ⑥4-B-4 순환방식조사 방식의 문제, ⑦노동시장과 노동력의 상태를 좀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 등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변화, 여성취업의 증가 등과 더불어 나타나면서 설문지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며, 셋째로는 개인적 인지로 인한 누락을 방지하는<sup>51)</sup>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된 조사항목은 고용관련 6개 항목(일, 복수직 근로, 근무 시간, 시간제, 산업과 직업, 소득), 실업관련 3개 항목(구직활동, 일시해고, 실업 기간), 그리고 비경제활동 관련 2개 항목(은퇴한 사람, 실망실업자)으로 총 11개 항목의 내용이 개편되었다.

개편의 내용을 보면, 구CPS에서 모호했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관한 질문을 명확히 하고, 이들 질문순서를 바꿈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했다. 또한 개편된 CPS는 비자발적 시간제근로 혹은 실망실업자의 분류가 가능한 한 명확히 드러나게 하였고, 컴퓨터를 활용한 면접을 통해 조사시간의 단축과 조사원의 실수를 줄인 것이 조사방법의 중요한 변화이다. <표 IV-3>은 신CPS의 변경내용을 구CPS와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활동상태에 있어 신CPS는 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무급가족종사자를 활동상태를 묻는 첫 답항 속에 포함하여 이들이 취업자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고 있다.

비자발적 시간제근로를 묻는 질문은 질문을 구체화함으로써 비자발적 근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바꾸었으며, 실업자에 대한 파악도 적극적 구직과 소극적 구직을 세분화함으로써 오류를 줄이고 있다. 또한 실망실업자는 정의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을 찾아본 경험과 지난주에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 판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미국 CPS는 한마디로 보다 정확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개편되었다. 변화된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를 반영하고 이로 인해 변화된 남녀 노동력을 측정함으로써, 전체 노동력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무엇보다 CPS 개편은 여성노동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수정되었다. <표 IV-3>은 대표적으로 수정된 항목을 구CPS와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제시된 것은 모두 여성노동통계와 직접 관련된 것이지만,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부분은 활동상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와 실망실업자

50) 질문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비해당”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순서조정을 하였다.

51) 추가질문을 통해 활동의 범주에서 누락될 수 있는 인구를 걸러내고 있다.

에 대한 수정이다.

활동상태에 대한 질문수정은 무급가족종사자를 직접파악하기 위해 질문순서와 방법을 수정하였다. 신CPS는 활동상태의 구분에 대한 질문에서 먼저 가족사업이 있는지를 묻고 그 다음에 '지난 주에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하였는지'를 물어 보고 있다. 그리고 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다시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했는지를 직접 물어봄으로써, 무급노동에 종사하는 다수의 여성노동누락을 방지하고 있다.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의 경우 구CPS는 평소 주 35시간 미만 일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묻고, 그 이유가 경기침체 혹은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응답한 사람에 대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로 분류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질문이 지난 주 35시간 미만 일한 사람에게만 묻는다는 데 있었다. 즉 평소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난 주 35시간 이상 일하면 전일제 근로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CPS는 평소근로시간을 묻고 다음으로 지난주에 평소보다 적게 일했는지 혹은 많이 일했는지를 물은 후 지난 주 일한 시간을 묻는 방법으로 질문순서를 바꾸고 있다. 그리고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여러 단계의 질문을 추가하고 있다.

실망실업자의 경우 구CPS는 비취업자로서 직장을 원하지만 시장적 요인으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취업의사 유무에 주관성이 비구직 사유가 3가지만 제시되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신CPS는 실망실업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더했다. 두 가지 질문은 지난 12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경험과 지난주에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다. 그리고 비구직 이유에 대한 답항도 3가지에서 11개로 증가하여 비구직 이유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외 신CPS는 양성 모두의 노동상태를 편견 없이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으며, 이로 인해 보다 성 인지적이고 보다 정확한 노동조사로 개선되었다.

<표 IV-3> 미국 신CPS 개편내용

	구CPS	신CPS
활동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등이 일하는 사람을 일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음.</li> <li>• 자원봉사자를 일하는 것(working)으로 분류할 가능성 있음.</li> <li>• '일한다(working)'는 용어가 애매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사업의 유무를 우선 묻고,</li> <li>•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하였는지 물어봄.</li> <li>• 무급가족종사자를 직접 파악.</li> </ul>
복수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동시에 갖는 근로자에 대한 질문이 없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개 이상의 직장이 있는가 묻고 도합 몇 개의 직장을 갖는가 물어봄.</li> <li>• 해당되는 경우 각 직장에 대해서 근로시간 등을 구분하여 조사함.</li> </ul>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일(at all jobs)에서의 근로시간 대신 한가지 일에서의 근로시간만 대답할 가능성(특히 여러 직장을 가진 경우).</li> <li>• 35시간~46시간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관습시간 혹은 휴업시간을 질문하므로 35시간미만 근로자 절단과 차이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평소 근무시간을 질문.</li> <li>• 그 다음에 지난주에 평소보다 일을 적게 했는지, 몇 시간 적게 했는지 물어봄.</li> <li>• 그 다음에 지난주에 관습을 했는지, 몇 시간 했는지 물어봄.</li> <li>• 그리고 실제 일한 시간을 물어봄으로써 오차를 최대한 줄임.</li> </ul>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full time을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 없음).</li> <li>• 35시간 미만 근무 이유를 묻는 질문은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 못함.</li> <li>• 지난 주 35시간 미만 일한 자에게만 질문이 국한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3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full time을 원하는지를 물어본 다음,</li> <li>• 원하는 사람에게 왜 시간제근로를 택하였는지 이유를 물어봐서 경제적 이유 여부를 체크하고,</li> <li>• 경제적 이유를 띤 사람에게 35시간 이상의 일이 주어지면 일할 수 있는지 물어봄.</li> </ul>
산업 및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달 같은 질문을 반복하므로 번거로움.</li> <li>• 사실상 같은 직무인데 약간만 다르게 답해도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li> <li>• 종사상 지위를 나중에 질문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달과 차이 있는지 묻고 차이 없을 경우 끝냄.</li> <li>• 근무처 종류 및 종사상 지위를 먼저 물어봄.</li> </ul>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당수입 계산이 쉽지 않을 수 있음에도 모두에게 주당수입을 질문함.</li> <li>• 시간외수당, 팁 등을 모두 포함한 주당 소득계산은 복잡하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받는 주기를 먼저 묻고 이하의 질문들은 이 급여주기에 맞추어서 진행됨.</li> <li>• 다음에 시간외수당 등을 받는지 질문.</li> <li>• 그리고 받는 금액을 질문한 다음,</li> <li>• 시간당 임금으로는 얼마인지 질문.</li> </ul>
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활동을 '적극적'과 '소극적'으로 나눈 후 지난 4주 동안 직장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active)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만 실업으로 분류.</li> <li>• 그런데 적극적 구직과 소극적 구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li> <li>• 또한 직장을 찾아보았느냐(looked for work)의 질문을 좀게 해석할 경우 쉽게 No라고 대답함으로써 비정활인구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을 찾기 위해 무언가 했느냐'로 질문함으로써 구직의 질문을 넓게 시작함.</li> <li>• 적극적 구직과 소극적 구직을 세분화함으로써 오류를 줄임.</li> </ul>
실망 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취업자이면서 직장을 원하지만 시장적 요인들로 인해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정의하는데 이는 매우 주관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 질문.</li> <li>• 지난주에 일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는지 질문.</li> </ul>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 연구회,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방향에 관한 종합보고서」(1996), pp. 89-102의 내용을 재편집 함. 미발간자료.

## 2) 일본의 노동력조사

일본의 주요 노동력 통계는 총무성 통계국에서 작성하며 크게 「노동력 조사」, 「노동력특별조사」, 「취업구조기본조사」의 3가지가 조사되고 있다. 「노동력조사」는 기본적인 고용 및 실업상태만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노동력특별조사」는 「노동력조사」를 보충하여 실업 및 불완전취업 상태, 취업이동 상황 및 비경제활동인구 상황 등 노동력 전반에 관한 상태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조사한다. 그리고 「취업구조기본조사」는 일을 한 유업자와 하지 않은 무업자에 대한 구조분석을 통해 행정의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t;표 IV-4&gt; 일본의 노동력 조사

	노동력조사	노동력특별조사	취업구조기본조사
목적	국민의 취업 및 미취업상태의 변화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고용대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국민의 실업 및 불완전취업 상태, 취업이동 상황 등 취업 및 미취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고용대책 등의 기초자료 생산	일본인구의 취업, 미취업의 기본구조를 전국 및 지역별로 파악하여 각종정책의 기초자료 생산
대상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주기	1947년 7월부터 매월조사	1949년 수시 조사 1977년 매년 3월 1회 조사 1984년 매년 2월 1회 조사 1999년 매년 2월, 8월 2회 조사	1955-1982년 : 3년주기로 조사 1987년 이후 : 5년주기로 조사
조사시점	매월말 1주간	2월말, 8월말 1주간	10월 1일
표본규모	약 4만가구(10만명)	약 4만가구(10만명)	약 43만가구(110만명)
조사항목	14개	37개	49개
접근법	노동력 접근법	노동력 접근법	유업자 접근법
결과공표	월 - 전국 분기, 연 - 전국, 10개 권역별	전국	전국, 지역

이에 조사항목을 보면 「노동력조사」가 가장 적은 14개 항목을 조사하고 「노동력특별조사」는 37개 항목을, 그리고 「취업구조기본조사」는 46개 항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먼저 취업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 「노동력조사」는 취업시간, 종사상 지위, 종업원 규모, 산업, 직업, 전직, 전업 희망 의식 및 구직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조사하고 있으며, 「노동력특별조사」는 이외에 35시간미만 일한 이유, 구직여부, 취업한 시기 및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취업구조기본조사」는 「노동력특별조사」의 취업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연간수입, 부업에 관한 사항, 1년 전의 상태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실업자 항목의 경우에도 「노동력조사」는 취업의 형태 및 구직활동이유만을 조사하나, 「노동력특별조사」는 구직경로, 구직기간, 전직유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하며, 「취업구조기본조사」는 무업자에 대하여 취업희망 유무 및 이유, 구직활동유무, 취업 희망시기를 조사한다. 비경제활동인구에 관한 사항은 「노동력조사」에는 없으며, 노동력특별조사는 취업 희망여부, 비구직이유, 희망하는 일의 종류 및 1년간의 구직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규모와 주기를 보면 「노동력조사」는 매월 마지막 1주간에 있어 4만 가구(약 10만명)에 대해 고용과 실업상태를 조사하고 있고, 「노동력특별조사」는 연 2회 4만 가구(약 10만명)를, 그리고 「취업구조기본조사」는 5년 주기로 43만 가구(약 110만명)를 조사하고 있다. 접근방법은 「노동력조사」와 「노동력특별조사」가 노동력 접근법으로, 「취업구조기본조사」는 유업자 접근법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동력조사」는 취업과 실업의 노동동향에 대한 신속한 분석을 목적으로 간단한 항목만 조사함에 따라 조사항목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조사항목의 변경은 1945년 5월 취업희망의 여부, 원하는 취업시간 등 실업자의 문항을 강화하여 변경한 후 상세해진 않아도 가능한 남녀 노동활동을 포괄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해왔다. 1959년 1월은 추가취업희망시간 항목을 폐지하고 대신 원하는 일의 형태, 기업체 규모, 전직 희망 여부를 추가하였고, 1983년 10월은 구직이유를 추가하여 질문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급변하는 고용·실업에 대한 상세하게 분석하는 데 「노동력조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통계국은 연 1회 실시하던 「노동력특별조사」를 1999년부터 2월과 8월로 연 2회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노동력특별조사」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슷하나 이보다 강화된 형식의 조사이며 「노동력조사」의 특별 조사 형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력특별조사」는 남녀 고용형태<sup>52)</sup>, 전직관련 사항, 취업이동과 기업체 규모와 수입 등의 질문을 포함하여 「노동력조사」에서 분석할 수 없었던 남녀 노동상태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력특별조사」는 「노동력조사」와 동일한 표본크기로 인해 전국단위<sup>53)</sup> 분석이 되는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지역단위의 남녀 통계는 「취업구조기본조사」를 통해서만 조사·발간되고 있다.

#### 다. 국내 노동력조사

우리나라의 각종 노동관련 통계는 대부분 통계청과 노동부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통계청은 주로 가구조사를 통해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기업체조사를 통해 취업자에 대한 노동력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통계청의 노동력 조사는 노동력 규모와 노동력 상태를 파악하여 노동력의 총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대표적인 조사로는 「인구주택총조사」, 「고용구조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있다. 반면 노동부의 조사는 사업체의 근로자수와 변동,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등을 통해 종사자 수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파악하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노동력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등이 대표적인 조사이다.

52) 고용형태는 정규직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노동자 파견사업소의 파견사원, 즉 탁 및 그외 등 5개 문항의 답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3) 단 「노동력조사」는 분기별자료를 이용하여 10개 권역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 1) 측정개요

### 가) 통계청

통계청은 현재<sup>54)</sup> 총 44종의 조사통계와 8종의 가공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44종의 조사통계 중 노동관련 조사는 총 21종<sup>55)</sup>이고 이중 9종이 전수조사, 12종이 표본조사 형태로 조사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고용구조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초점을 두고 측정방법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 조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력 조사로서, 각종 노동력 동향의 기초자료와 국제노동통계의 비교자료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측정방법에서 언급될 수 있는 모든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성 인지적 통계구축의 중심에 서 있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 (1)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파악하여 각종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계획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적 규모의 통계조사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총조사」와 「주택총조사」를 하나로 합친 고유명칭<sup>56)</sup>이며, 우리나라는 1925년 국세조사란 명칭을 사용한 이후에 총인구조사, 인구센서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여 오다가 1990년 총조사부터 센서스(Census)에 해당하는 통계조사를 '총조사'로, 이외 통계조사를 '조사(Survey)'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사주기는 1949년 제6회 인구총조사 이래 5년<sup>57)</sup> 간격으로 실

54) 2001년 1월 1일

55)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인구총조사(경제활동편), 산업총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광공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정보통신산업통계, 가구소비실태조사, 고용구조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어가경제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도시가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단, 사회통계조사는 불규칙적인 주기로 노동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했다.

56) 일본과 중국에서는 인구조사에 해당하는 통계조사를 국세조사(國勢調査)와 인구조사(人口普查)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57) 단 6회(1949년)와 7회(1955년) 사이, 8회(1960년)와 9회(1966년) 사이는 6년 간격으로 실시되었고, 1970년 이후 5년 간격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lt;표 IV-5&gt; 인구주택총조사 연혁

회 수	조사 기준일	명 칭	조사 항목수	특 징
1	1925. 10. 1	간이국세조사	-	· 최초의 인구조사
2	1930. 10. 1	조선국세조사	-	· 최초로 직업등 경제활동사항 포함
3	1935. 10. 1	조선국세조사	-	
4	1940. 5. 1	국세조사	-	
5	1944. 5. 1	간이국세조사	6개	· 전쟁동원을 위한 특수기능인력조사에 중점
6	1949. 5. 1	총인구조사	11개	· 최초의 인구센서스 · 최초로 인구이동 사항 포함
7	1955. 9. 1	간이총인구 조사	12개	· 군사경험 및 징용여부 사항 포함
8	1960. 12. 1	인구주택국세 조사	18개	· 최초로 주택에 관한 조사 실시 · 노동력 개념 설정 · 경제활동 및 출산력 사항의 20% 표본집계
9	1966. 10. 1	인구센서스	전수 8개 표본 6개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및 출산력)
10	1970. 10. 1	총인구 및 주택조사	전수 6개 표본 9개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이동 및 일부 주택에 관한 사항) · 노동력접근법
11	1975. 10.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전수 7개 표본 9개	· 5%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이동 및 일부 주택에 관한 사항) · 노동력접근법
12	1980. 11.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전수 7개 표본 11개	· 15%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이동) · 노동력접근법
13	1985. 11.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전수 16개	· 전항목 전수조사 · 성씨, 본관 및 종교에 관한 조사 실시 · 유업자접근법
14	1990. 11. 1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 33개 표본 12개	· OMR 기법 도입 · 소득항목 포함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이동) · 유업자접근법
15	1995. 11. 1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 17개 표본 11개	· 기본항목 중심으로 조사 · 종교항목 조사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인구이동) · 유업자접근법
16	2000. 11. 1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 20개 표본 30개	· 지식·정보화사회 및 복지관련 항목추가 · 수지도도를 활용한 기본도 작성 및 조사구 설정 · 지방 분산형 PC 입력 방식 도입 · 응답자기입식 조사방법 부분 적용 · 노동력접근법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1992),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침서(2000),

시되고 있으며, 2000년 11월 현재 16번째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와 주택에 관한 총조사이며, 경제활동은 1930년 조선국세조사에서 처음 포함시켰고, 1960년 총조사에서 20%표본 집계한 것을 시작하여 매년 5~15%를 표본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를 집계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는 노동통계조사라고 볼 수 없지만, 바로 이와 같이 표본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총조사는 경제활동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조사접근법이 때 번 달라짐에 따라 시계열적 비교가 어렵고, 설문내용도 매우 제한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조사 접근법의 경우 1970년부터 1980년까지는 노동력 접근법을, 그리고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유업자 접근법으로 조사되었다가 16회 조사인 2000년 조사에는 다시 노동력 접근법으로 바꾸어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을 보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항목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여 1990년 조사에는 전수 33개 항목 표본 12개 항목의 조사를 실시했다. 1995년 15회 조사 때 이들 항목을 기본항목 중심으로 대폭 줄여 조사하기도 했으나, 2000년 조사에는 다시 지식·정보화 사회 및 복지관련 항목을 추가하게 되면서 조사항목이 50개(가구원 관련 사항 29개, 가구 관련 사항 16개, 주택관련 사항 5개)로 전수 20항목, 표본 30개 항목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가구원 관련 사항 중 5개 사항(경제활동,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현 직업근무연수)이 노동력 관련 사항이다.

## (2)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경제활동의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경제활동인구에 관한 조사는 내무부 통계국에서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하지만 1963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따른 자료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조사명칭을 「경제활동인구조사」<sup>58)</sup>로 개편하였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에서 매 분기<sup>59)</sup>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주기를 보면, 1963년부터 1982년 상반기까지는 분기마다 실시되었다가 1982년 7월부터는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월 단위 조사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고, 1987년 1월부터는 중학교 입학 및 재학이 보편화됨에 따라 14세이던 하한연령을 1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1963년 5,100가구를 조사하였으나 1972년(제1차 표본개편) 13,500가구, 1977년(제2차 표본개편) 21,000가구로 점차 규모를 증가시켰고, 1988년 7월은 현재 조사 가구수와 동일한 32,500가구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표본수의 증가와 함께 제고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1989년부터는 시·도별자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접근법은 과거 분기별 조사를 실시할 당시는 지난 3개월 간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한 유업자접근법과 노동력접근법을 병행하는 설문지를 사용하다가, 1963년부터 유업자접근법은 제외하고 노동력접근법으로만 조사하고 있다.

조사항목을 보면, 1960년대는 취업여부에 대한 질문, 실업이유, 취업시간, 직업, 산업 등 주로 취업과 관련된 항목만 조사하였으나, 1969년 설문지부터는 실직기간과 구직경로 등 실직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고, 이후 1980년에 들어오면서 구직경로, 취업가능성유무 등 실업자에 대한 문항과 취업의사, 비구직이유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실업에 관한 항목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더불어 더욱 보강되었다. OECD 가입으로 인해 실업률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업자 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한 고용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업보조지표생산의 필요성으로 인해,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 연구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조사표를 개편하게 되었다. 이때 개편된 실업의 개념은 1주와 1개월의 구직기간을 동시에 조사하여, 1주는 국내 실업률 산정에 그리고 1개월은 국제비교 실업률 산정에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의 범주로 숨어있던 많은 여성 실업자를 실업자의 범주로 이끌어

58) 1962년 8월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란 명칭을 사용함.

59) 3월, 6월, 9월, 12월로서 연 4회 실시되었다.

낼 수 있게 하였다.

<표 IV-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요변화

연도	변화내용
1963	·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시 · 조사대상 5,100가구 · 분기별 조사, 연기식 조사표(조사표 1매에 여러명 조사) 사용
1969	· 다목적표본 설계 · 조사대상 5,600가구
1972	· 제 1차 표본개편 13,500가구
1977	· 제 2차 표본개편 21,000가구
1980	· 조사항목 확대, 단기식 조사표(조사표 1매당 1명 조사) 사용
1982, 7	· 조사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
1983, 6	· ILO 권고안에 따라 조사표 개편
1985, 1	· 단기식 조사표 사용
1987, 1	· 조사대상을 14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 계절조정실업률 작성
1988, 7	· 제 4차 표본개편 32,500가구
1989	· 분기별로 시도별 자료 공표
1992	· 제 5차 표본개편 32,500가구
1994, 6	· 시도별 인구추계가 공표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시도별 자료가 생산되기 시작한 1989년부터 시계열 조정
1998, 1	· 조사표 개편(실업률 국제비교를 위해) · 시도별 자료의 월별자료 공표
1999, 1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도입
1999, 7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을 기초로 표본 개편과 함께 시계열조정(1991.1-1999.6)
1999, 11	· 제 16차 국제노동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불완전 취업 및 구직단념자 통계 작성 관련 연구검토를 반영하여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조사항목을 보완

출처 :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경제활동인구조사 30년」(199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지침서」(2000).

또한 1999년 11월부터는 1998년 제 16차 국제노동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불완전 취업자 및 구직단념자 통계 작성 관련 연구 검토를 반영하여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조사항목을 보완한 조사표를 작성했다. 이에 2000년 현재

조사항목의 수는 총 33개 항목으로 인적사항 7개, 취업자 관련항목 11개, 실업자 관련 항목 14개,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항목 15개로 구성되어 있다<sup>60)</sup>.

<표 IV-7> 조사항목의 변화내용

	'63	'64-'68	'69-71	72-79	'80-'82	'83-'84	'85-'97	'98	'99-'00
지난 1주간 활동상태	○	○	○	○	○	○	○	○	○
취업여부	○	○	○	○	○	○	○	○	○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	×	×	×	○	○	○	○	○
1주간의 구직(활동)여부	×	×	×	×	○	○	○	○	○
취업시간	○	○	○	○	○	○	○	○	○
36시간미만 일하는 이유	×	×	○	○	○	○	○	○	○
1개월간 구직(활동)여부	×	×	×	×	×	○	×	○	○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 여부	○	○	○	○	○	○	○	○	○
추가취업 가능성	×	×	×	×	×	×	×	○	○
추가취업 또는 전직가능시기	×	×	×	×	×	×	×	×	○
추가취업 탐색 여부	×	×	×	×	×	×	×	×	○
취업가능성 여부	×	×	×	×	○	○	○	○	○
구직경로	×	×	×	×	○	○	○	○	○
구직(활동)기간	○	×	×	×	○	○	○	○	○
희망고용형태	×	×	×	×	×	×	×	○	○
희망근무형태	×	×	×	×	×	○	○	○	○
취업의사유무	×	×	×	×	○	○	○	○	○
비구직이유	○	○	○	×	○	○	○	○	○
지난 6개월간 구직여부	×	×	×	×	×	×	○	×	×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및 시기	×	×	×	×	×	×	×	○	○
전직유무	×	×	×	×	○	○	○	○	○
이직시기	×	×	×	×	×	×	×	○	○
이직이유	×	×	×	×	○	○	○	○	○
구직빈도	×	×	×	×	×	×	×	×	○
산업	○	○	○	○	○	○	○	○	○
직업	○	○	○	○	○	○	○	○	○
종사상지위	○	○	○	○	○	○	○	○	○
종업원규모	×	×	×	×	×	○	○	○	○
소득	×	×	×	×	○	○	○	×	×

출처 :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경제활동인구조사 30년」(199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지침서」(2000).

60) 각 관련 항목은 서로 중복 계산됨.

1963년이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일부 용어의 정의에 대해 변화가 있었다. 대부분 용어의 변화는 ILO의 국제적 지침과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중요한 변화를 보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의 정의가 바뀌었다. 1963년 농가의 정의는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가구로서 총토지면적 300평이상 경작하는 가구를 농가로 보았으나, 1983년에 이 정의는 가구의 생업 혹은 주된 업이 농업인 가구로 변화였다. 즉 일정량 이상의 농업생산물을 내느냐의 여부에서 가구의 생업이 농업인가로 농가의 정의가 변화였다. 둘째, 취업자의 기준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최소노동시간이 바뀌었다. 1969년에는 취업자로 인정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운 자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1976년에는 주당 15시간 일한 자를 취업자로 인정하였고 1980년 이후로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에 한해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구직단념자의 경우 1980년까지는 실업자의 범주에 두다가 1981년이래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있다.

### (3) 고용구조조사

「고용구조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될 수 없는 지역, 산업 및 직종간의 노동력 이동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노동력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983년에 처음 실시된 조사이다. 경제활동조사는 고용동향과 정부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주었지만, 국가의 중·장기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력의 유동실태, 취업의 구조, 고용형태, 잠재노동력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는 힘들었다. 이에 「고용구조조사」는 표본크기와 조사항목을 경제활동조사에 훨씬 크고 세밀히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인력 및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게 되었다. 표본크기는 1983년 조사 당시 150,400가구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5배 가량을 조사하였으나 현재 약 120,000가구<sup>61)</sup>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항목의 경우는 「경제활

61) 1983년 15,400가구, 1986년 137,500가구, 1989년 141,955가구, 1992년 146,965가구, 1997년 119,848가구가 조사됨.

동인구조사」의 설문항목에 비해 20~30항목이 더 많은 50~58개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표 IV-8> 고용구조조사 측정 개요

연도	표본 가구수	접근법	조사항목 갯수
1983	150,400	노동력접근법	58개(관리 10개, 인력·확인 14개, 취업자 14개, 실업자 8개, 비경제활동인구 4개, 노동력이동 8개)
1986	137,500	노동력접근법	60개(관리 9개, 인력·확인 11개, 취업자 16개, 실업자 12개, 비경제활동인구 4개, 노동력이동 8개)
1989	141,955	노동력접근법	60개(관리 7개, 인력·확인 11개, 취업자 17개, 실업자 13개, 비경제활동인구 4개, 노동력이동 8개)
1992	146,955	노동력접근법	53개(인력·확인 11개, 취업자 17개, 실업자 13개, 비경제활동인구 4개, 노동력이동 8개)
1997	119,848	유업자접근법	50개(인력·확인 13개, 유업자 18개, 무업자 10개, 노동력이동 9개)

출처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1985,1986,1990,1994,1998),  
「고용구조조사지침서」(1997).

조사주기는 3년 주기로 조사하던 것이 1997년부터 5년 주기로 바꾸어 조사되었고, 접근법의 경우 원래 노동력접근법을 사용하였으나 1997년에는 유업자접근법을 통해 조사되었다. 조사항목의 개수는 초기 조사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으나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에 관한 항목은 가감되면서 조금 증가한 형태를 보인다. 단 1997년 조사의 경우 접근법이 달라져 항목에 대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 (4) 세 조사의 통계비교

「인구주택총조사」, 「고용구조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 노동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조사이다. 이들 조사들은 다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조사되고 있으나 노동력 통계에 있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용구조조사」는 지난 1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동안의 활동상태를 기준으

로 노동력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지난 1주간 동안의 단기간에 대한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비록 조사항목은 적으나 표본이 커서 남녀의 상세한 업종 및 직종분석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한 접근법으로 조사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교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표 IV-9> 주요 노동력 조사의 특징

통계명칭	연도	작성주기	조사규모	조사방법	접근법	조사사항
인구주택총조사	1995	5년 (11.1~10)	전수조사 (경제활동은 10% 표본: 약 1,299천 가구)	가구조사 (면접조사, 임시조사원)	유업자 접근법	▶가구원관련 사항(29개) (경제활동,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현직업근무연수 포함) ▶가구관련사항(16개) ▶주택관련 사항(5개)
	2000	5년 (11.1~10)	전수조사 (경제활동은 10% 표본: 약 1,431천 가구)	가구조사 (면접조사, 임시조사원)	노동력 접근법	▶가구원관련 사항(29개) (경제활동,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현직업근무연수 포함) ▶가구관련사항(16개) ▶주택관련 사항(5개)
경제활동인구조사	1995	매일 (15일이 포함된 1주간)	34천 가구	가구조사 (면접조사, 전담조사원)	노동력 접근법	▶인적사항(7개) ▶취업자관련항목(11개) ▶실업자관련항목(14개) ▶비경제활동인구관련 항목(15개)
	2000	매일 (15일이 포함된 1주간)	30천 가구	가구조사 (면접조사, 전담조사원)	노동력 접근법	▶인적사항(7개) ▶취업자관련항목(11개) ▶실업자관련항목(14개) ▶비경제활동인구관련 항목(15개)
고용구조조사	1992	5년 (9.1~10)	147천 가구	가구조사 (면접조사, 임시조사원)	노동력 접근법	▶인적 항목 및 기본항목(13개) ▶유업자항목(18개) ▶무업자항목(10개) ▶전직관련항목(9개)
	1997	5년 (9.1~10)	120천 가구	가구조사 (면접조사, 임시조사원)	유업자 접근법	▶인적 항목 및 기본항목(13개) ▶유업자항목(18개) ▶무업자항목(10개) ▶전직관련항목(9개)

주: 조사항목은 각 항목별로 중복 계산될 수 있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지침서(2000),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1996),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고용구조조사」지침서(1999),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3),

접근법은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이다. 동일한 유업자접근법의 「인구주택총조사」(1995)와 「고용구조조사」(1997)의 유업률은 각각 53.7%, 54.2%이고 성별로 보면 여성은 36.6%와 37.6%, 그리고 남성은 71.6%와 71.8%를 보인다. 연도에 따라 유업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감안하면 동일 접근법의 두 조사는 거의 동일한 유업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노동력접근법으로 조사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95년과 1997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61.9%(여 48.3%, 남 76.5%)과 60.7%(여 48.3%, 남 74.0%)로서 유업률과 비교하면 6~7%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표 IV-10> 지역 및 성별 경제활동참가율(혹은 유업률)  
단위 : %(천명)

구분		조사명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유업자비율	인구주택총조사(1995)	53.7 (17,988)	36.6 (6,334)	71.6 (11,654)
		고용구조조사(1997)	54.2 (18,928)	37.6 (6,763)	71.8 (12,165)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60.7 (21,950)	48.3 (9,000)	74.0 (12,950)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61.9 (20,853)	48.3 (8,397)	76.5 (12,456)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60.9 (19,499)	47.3 (7,830)	75.5 (11,669)
		고용구조조사(1992)	58.1 (18,584)	41.5 (6,848)	75.9 (11,736)
비농가 (동부)	유업자비율	인구주택총조사(1995)	51.0 (13,357)	32.6 (4,381)	70.6 ( 8,977)
		고용구조조사(1997)	51.6 (15,968)	33.8 (5,389)	70.5 (10,578)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59.3 (19,448)	46.2 (7,810)	73.3 (11,638)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60.6 (18,057)	46.0 (7,076)	76.3 (10,981)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59.2 (16,200)	44.4 (6,297)	75.2 ( 9,902)
		고용구조조사(1992)	54.6 (14,776)	35.9 (5,036)	74.7 ( 9,740)
농가 (읍면부)	유업자비율	인구주택총조사(1995)	62.3 ( 4,631)	50.5 (1,953)	75.2 ( 2,677)
		고용구조조사(1997)	74.6 ( 2,960)	67.5 (1,374)	82.0 ( 1,586)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74.5 ( 2,502)	68.7 (1,189)	80.6 ( 1,313)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72.2 ( 2,795)	66.3 (1,320)	78.5 ( 1,475)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70.8 ( 3,299)	64.5 (1,533)	77.4 ( 1,767)
		고용구조조사(1992)	77.8 ( 3,809)	73.7 (1,812)	81.9 ( 1,996)

주 : 「인구주택총조사」의 지역구분은 동부, 읍면부로 되어 있음.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3,1998).

KOSIS 통계 DB service.

성별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유업률과 비교하여 여성의 경우 약 10~12%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남성의 경우 약 2~5%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즉 여성참가율의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유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비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활동인구가 일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한다는 것만 감안해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당연히 높을 것이다. 그러나 접근법의 비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통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접근법에 훨씬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업자 접근의 「고용구조조사」(1997)는 남녀 유업률의 차이가 34.2%포인트가 나고 있는 반면, 노동력 접근의 「경제활동인구조사」(1997)는 25.7%포인트의 참가율 차이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업률 접근법의 조사에서는 노동력접근법에 비해 여성노동을 과소 집계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일접근법을 사용함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1992)와 「고용구조조사」(1992)를 비교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용구조조사」에 비해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sup>62)</sup>.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로 참가율을 비교해보니 남성은 취업자 수와 참가율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여성은 취업자 수와 참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은 「고용구조조사」(1992)가 「경제활동인구조사」(1992)에 비해 0.4%포인트(67천명) 높긴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고용구조조사」에 비해 높은 5.8%포인트(982천명)의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로 보아도 남성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농가의 경우 두 조사를 비교해 보면 여성은 9.2%포인트의 참가율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남성은 4.5%포인트의 차이를 보인다. 비농가의 경우도 농가에서와는 달리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더 높은 참가율을 보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 비슷한 차이를

62) 사실 92년 경제활동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 시계열이 조정된 값으로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추정된 92년 「고용구조조사」와 비교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긴하다. 그래서 시계열 조정이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로 되어 있는 92년 9월 경제활동조사의 비율을 보았다. 이 때 비율이 전체 61.7%, 여자 48.4%, 남자 75.9%로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조정된 비율(전체 60.9%, 여자 47.3%, 남자 75.5%)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15세 이상 인구의 분포를 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1992)는 총 32,023천명(여 16,571천명, 남 15,452천명)이고 농가 4,660천명(여 2,378천명, 남 2,282천명), 비농가 27,363천명(여 14,193천명, 남 13,170천명)이었다. 이를 「고용구조조사」(1992)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60천명(여 +80천명 남 -20천명) 많게 집계되었고 지역별로는 농가의 경우 236천명(여 81천명, 남 155천명) 적게, 비농가의 경우는 역으로 많게 집계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농가가 비농가에 비해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구조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높은 참가율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나, 그렇지 못한 것은 표본비율의 차이가 경제활동참가율에 원인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1992년 「고용구조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855천명 많게 집계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02천명 많게 집계되었고, 남성은 역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43천명 많게 나타났다. 실업자 통계<sup>63)</sup>에서 두 조사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다수의 여성이 「고용구조조사」에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3) 실업자 수를 보면, 여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많은 반면, 남자는 「고용구조조사」에서 더 많은 수의 실업자를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199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구조조사의 실업자>

단위: 천명

	전체	여자	남자
경제활동인구조사	466	161	306
고용구조조사	484	146	33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0),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3).

&lt;표 IV-11&gt; 성 및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구분	조 사 명		전체	가사·육아	통학	기타
무업자	인구주택총조사(1995)	전체	15,609	-	-	-
		여자	10,983	-	-	-
		남자	4,626	-	-	-
	고용구조조사(1997)	전체	16,008	8,153	4,785	3,069
		여자	11,237	7,918	2,221	1,098
		남자	4,771	235	2,565	1,971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전체	13,180(556)	6,498	4,434	2,243
		여자	9,064(204)	6,023	2,040	1,000
		남자	4,116(352)	475	2,394	1,243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전체	12,811(420)	6,682	4,143	1,986
		여자	8,987(140)	6,194	1,887	906
		남자	3,824(335)	488	2,256	1,080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전체	12,524(466)	6,406	4,359	1,900
		여자	8,741(161)	5,946	1,920	875
		남자	3,824(306)	460	2,339	1,025
	고용구조조사(1992)	전체	13,379(484)	5,951	4,323	3,104
		여자	9,643(146)	5,883	1,956	1,803
		남자	3,736(338)	68	2,367	1,301

주: 1. ( )는 실업자 수.

2. 기타는 심신장애, 연소연로, 자원봉사 등.

3.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시계열을 조정한 것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2, 1998).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2000).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를 보면, 「고용구조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차이가 기타(심신장애, 연소연로, 자원봉사 등)에서 +1,104천명(여 +928천명, 남 +176천명)으로 가장 많이 났고, 가사·육아에서 -455천명(여 -63천명, 남 -392천명), 그리고 통학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결과적으로 두 조사의 참가율 차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된 다수의 여성 인구가 「고용구조조사」에서는 심신장애, 연소연로, 자원봉사 등의 비경제활동인

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각 조사에 대한 산업별 취업자 수의 분포를 보면, 유업자 접근의 「고용구조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는 노동력 접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1차 산업 취업자는 많고 2, 3차 산업 취업자수는 적게 집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접근법에 의한 차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즉 접근법이 다른 「고용구조조사」(1997)와 「경제활동인구조사」(1997)를 비교하면, 1차 산업은 「고용구조조사」가 456천명(여 92천명) 많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각각 479천명(여 433천명), 2,155천명(여 1,651천명) 많게 나타나지만, 동일한 접근법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난다. 1992년 두 통계를 보면, 1차 산업에서 「고용구조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768천명(여 638천명) 취업자가 많게 집계하고 있고 2, 3차 산업의 경우 각각 625천명(여 599천명)과 975천명(여 753천명)가량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많게 집계됨에 따라 총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932천명 많게 집계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구조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접근법과 관계없이 산업별 분포에 차이가 있고 차이의 대부분은 여성취업자 통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별 분포의 차이는 「고용구조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농가부분의 표본이 크기 때문<sup>64)</sup>으로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활동구분의 설문방식이 동일한 「고용구조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농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반면 2,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비농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sup>65)</sup>. 이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조사」의 조사원 신분일 것이다. 즉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전임조사원을 활용하고 「고용구조조사」는 임시조사원을 활용함으로써 생긴 오류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임조사원은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

64) 15세 이상 농가인구수는 「고용구조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총 258천명, 여자 135천명, 남자 122천명 많게 조사된다.

65) 1992년 농가의 경우 「고용구조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7%포인트, 여성 9.2%포인트, 남성 4.5%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비농가의 경우 역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고용구조조사」에 비해 전체 4.6%포인트, 여성 8.5%포인트, 남성 0.5%포인트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은 자로서, 대규모조사를 위해 임시로 모집한 조사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통계수집이 가능했을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사회문화적 성역할 분리<sup>66)</sup>의식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한 교육과 인식이 없는 임시조사원 활용은 여성통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lt;표 IV-12&gt;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천명

구분	접근법	조사명	총 취업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전체	유업자 접근법	인구주택총조사(1995)	17,988	2,855	4,315	10,818
		고용구조조사(1997)	18,928	2,841	4,029	12,058
	노동력 접근법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21,048	2,385	4,508	14,213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20,432	2,534	4,824	13,074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19,032	2,998	4,923	11,111
		고용구조조사(1992)	18,100	3,766	4,198	10,136
여자	유업자 접근법	인구주택총조사(1995)	6,334	1,353	1,258	3,723
		고용구조조사(1997)	6,763	1,311	1,166	4,287
	노동력 접근법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8,939	1,403	1,599	5,938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8,256	1,206	1,764	5,287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7,416	1,150	1,944	4,322
		고용구조조사(1992)	6,702	1,788	1,345	3,569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2,1998),  
 「경제활동인구연보」(2000).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1992년 「고용구조조사」가 무급가족종사자에서 동일 연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많이 집계하고 고용주와 자영자, 임금근로자의 경우 낮게 집계하고 있었다. 「고용구조조사」는 무급가족종사자 수를 2,558천명으로 집계했고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93천명으로 집계하여 535천명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이 차이의 대부분은 여성통계 집계상의 차이(520천명)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고용구조조사」는 「경

66) 여성은 가사의 책임자로, 남성은 임금별이자로 보는 의식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1,468천명 적게 집계하고 있는데 이 차이 또한 여성의 차이(1,192천명)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1997년 서로 다른 접근법에 의해 조사된 두 통계의 종사상지위를 비교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임금근로자의 차이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주택총조사」와 동일 연도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교에서도 동일한 통계차이를 보인다.

<표 IV-13> 성 및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유업자) 분포

단위: 천명

구분	조사명	고용· 자영업주	무급가족종 사자	임금근로자	
전체	유업자	인구주택총조사(1995)	5,165	1,890	10,932
		고용구조조사(1997)	5,722	1,847	11,360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5,981	1,899	13,226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5,694	1,955	12,784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5,421	1,993	11,618
		고용구조조사(1992)	4,892	2,558	10,150
여자	유업자	인구주택총조사(1995)	1,284	1,663	3,503
		고용구조조사(1997)	1,307	1,731	3,725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1,777	1,713	5,196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1,617	1,761	4,879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1,504	1,753	4,413
		고용구조조사(1992)	1,203	2,278	3,221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2,1998),  
 「경제활동인구연보」(2000).

세 조사의 비교분석을 종합해 보면, 접근법의 선택은 노동통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동일한 접근법에서 고용구조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취업자 집계는 적게,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많게 집계하고 있었고 이 차이의 대부분은 여성통계에서 나타났다.

## 나) 노동부

노동부는 대표적인 기업체대상 조사로서 주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로시간, 임금 등 종사자수와 근로조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분석하여 발간되는 자료는 총 9종<sup>67)</sup>이며, 이중 노동부가 직접 수행하는 주요 통계조사로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의 3가지이다. 이외 발간 보고서는 앞의 세 조사와 통계청조사의 원자료를 재가공한 것이다.

## (1)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는 상용근로자수가 4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조사로서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과 규모는 상용근로자 수가 1~4인 규모의 사업체<sup>68)</sup>중 14,000개 표본사업체를 선별하여 임시통계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타계식 면접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조사기준기간은 10월이고 조사는 11월과 12월에 걸쳐 1개월 정도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성별, 연령, 학력, 입직경로,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종, 근로일수, 실근로시간수, 임금산정기준,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등 13개의 근로자 항목과 사업체명, 사업체 형태 등 기업체에 관한 사항 14개를 질문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 4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체를 조사라는 점에서 여성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5인 이상<sup>69)</sup> 기업체 조사의 통계를 보면 여성은 대개 30%미만<sup>70)</sup>으로 나타나지만, 4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여성은 통상 과반수<sup>71)</sup>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는

67)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노동력유동실태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노동통계연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노동통계연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제조업고용동향전망조사보고서,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보고서.

68) 농·임·어업은 제외

69) 노동부의 기업체 조사는 모두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기업체 규모를 분류한다.

70)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체의 1998년 여성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7.5%로 나타난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체의 취업정도가 높은 여성의 취업상태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를 상용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1968년부터 조사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구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표본 수는 약 5,500개의 사업체<sup>72)</sup>를 대상으로 매년 6월에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는 (1) 취업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2)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로서 조사기준일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이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자, (3) 중역과 이사 등의 임원일지라도 상시 사업체에 출근하여 피고용자로서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고 임원으로서의 보수 이외의 급여규정에 의거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자, (4) 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주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상시 그 사업체에 근무하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로자대상 조사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로조건에 대한 풍부하고 일관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직급별 분포 등은 여성근로자들의 낮은 직급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계자료이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상용근로자만 포함됨으로써 그 외의 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3개월 통산하여 45일 미만 취업한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가 제

71) 2000년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4인 이하 근로자는 총 1,516,800명(농림어업은 제외)이며 이중 여성근로자가 726,982명으로 47.9%의 분포를 보였다.

72) 1998년 조사까지는 10인 이상 3,200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음.

외되며, 재택근무자, 가내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가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여성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가 아닌 여성근로자들의 통계를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국단위의 대규모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의 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별 근로자의 특성 및 근무여건이 이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여성근로자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취업상태가 혼인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역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구에서 공식통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개별 연구자의 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3) 매월노동통계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68년 4월 지정통계로 승인되어, 매월의 상용고용 및 노동이동, 임금, 근로시간의 변동상황을 조사하여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본 수는 총 5,600개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999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고, 조사기준기간은 매월 급여계산기간으로 하고 있다.

「매월노동통계조사」는 매월 근로자의 산업별 이동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노동력 수급정책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사이다. 또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달리 일용근로자와 인턴사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전일제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입하게 함으로써 근로형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사 역시 5인이상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여성비율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과 노동시간, 노동이동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이상의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요 노동통계조사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 IV-14>와 같다.

&lt;표 IV-14&gt; 노동부 기업체 조사의 특징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조사목적	임금정책의 기초자료	경제시책과 임금정책의 기초자료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
조사주기	1년, 10월 기준	1년, 6월 기준	매월, 급여계산기간
조사규모	1~4인사업체14,000개 표본, 단, 농림어업은 제외.	5인 이상 사업체 5,500개 표본, 단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부문은 제외.	5인 이상 사업체 5,300개 표본, 단 농림어업은 제외.
조사방법	타계식 조사	자계식 조사 단, 5~9인 사업체는 타계식	자계식 조사 단, 자계식이 어려울 경우 타계식 조사
조사항목	종사상지위 및 성별 근로자 수, 연령, 학력, 입직경로, 근속년수, 직종, 근로일수, 실근로시간수, 임금산정기준,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종,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급,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최저임금 적용여부	권월 및 당월말 상용근로자 수, 상용근로자의 이동(입·이직)상황, 실근로일수, 실근로시간수, 정책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 2) 설문지

### 가) 통계청

설문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접근법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이하 「센서스 경황」)은 노동력 접근법을 기초로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구조조사」는 유업자 접근법을 기초로 조사된다.

접근법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센서스 경황」은 「고용구조조사」와 다른 형식의 질문으로 활동상태를 묻고 있다. 「센서스 경황」<sup>73)</sup>은 경제활동과 관

73) 「센서스 경황」은 2000년 설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통계비교는 이전 것으로 하고 설문지분석은 최근 것으로 하게 되었다. 이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나 향후 노동력 조사가 「센서스 경황」은 노동력 접근법으로, 그리고 「고용구조조사」는 유업자 접근법으로 계속 조사될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 설문지를 분석하게 되었다.

련하여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현 직업의 근무연수 등 총 5개 문항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상태의 분류는 세 단계의 질문으로 분류한다. 활동상태에 관한 첫 질문은 '지난 일주일동안(2000년 10월 22일~10월 28일)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취업자를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항으로 ①있음, ②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③없음(가사, 학업 등)의 3가지를 제시하여 ①과 ②를 응답자는 취업자로 간주하여 종사상지위에 관한 질문을, 그리고 ③번 응답자는 구직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직 경험으로 '지난 달(10월) 동안 수입이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았습니까?'란 질문을 한다. 그리고 '찾아보았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원서제출, 취직 시험응시, 전화 취업상담, 직업소개소 등록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구직을 하지 못한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다시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란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 주에 일을 할 수 있었던 인구를 실업자로 구분하고, 할 수 없었던 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게 된다.

「고용구조조사」<sup>74)</sup>의 최초 질문은 '평소에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로 시작한다. 평소에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 즉 ①주로 일을 하고 있음, ②주로 가사를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 ③주로 통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④가사 및 통학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유업자로 분류하고, 이외 범주의 집단을 무업자로 간주한다. 「고용구조조사」에서 '일을 하고 있음'이란 평상시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평소에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직전<sup>75)</sup> 며칠동안 임시로 일을 한 경우는 무업자로 구분하게 되고, 계절적인 일이나 병 때문에 잠시 쉬고 있을 때는 유업자로 구분하게 된다. '수입이 되는 일'에는 가족사업을 무보수로 도와주는 일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활동상태가 정해지면 유업자와 무업자 각각은

74) 「고용구조조사」는 1983년 첫 조사 이래 1992년까지 3년 주기로 노동력접근법(현상태 접근법)을 사용하여 노동력을 파악해 왔으나, 1997년부터 유업자 접근법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하고 있다.

75) 1997년 「고용구조조사」는 9월 1일 이루어졌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상세한 질문을 하게 된다. 유업자는 직업, 종사상지위, 근무 형태, 근무장소, 1년간 취업일수, 규칙성여부, 평일 취업시간, 연간소득, 계속 취업희망 등 23여개 항목에 대해 질문하고 있고, 무업자에 대해서는 취업희망여부, 희망지위, 희망근무형태, 구직여부, 취업가능유무 등 약 20여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취업자를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다?’로 물어 1차로 분리한 뒤, 다음 문항에서 ‘지난 1주간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2차로 취업자를 판별하고 있다. 전자의 질문은 9개 범주<sup>76)</sup>의 답항 중 ‘일하였습니다’의 범주에 속한 인구만을 취업자로 분류하고 후자의 질문에서는 1차 질문에서 빠뜨린 취업자에 대해 3개의 답항<sup>77)</sup>을 두어 추가로 취업자와 그외 활동인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기준기간 동안 일한 적이 없는 인구는 일시휴직여부를 통해 마지막으로 취업자를 거르게 되고 나머지 인구에 대해 실업자를 판별하는 질문을 한다. 단,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취업시간을 물어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종사한 인구는 취업자로, 그리고 이하 종사자는 다시 실업자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간다. 실업자를 구분하는 핵심질문은 구직여부와 취업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인데, 구직여부는 1주일과 1개월 동안의 구직여부를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1개월내에 구직경험이 있는 인구는 취업가능여부를 통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한다.

#### (1) 취업자

세 조사가 취업자<sup>78)</sup>를 판별하는 방법을 보면, 세 조사 모두 취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76) ①일하였습니다, ②일시휴직, ③구직활동, ④육아, ⑤가사, ⑥통학, ⑦연로, ⑧심신장애, ⑨기타의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77) ①있었습니다, ②무급가족종사자, ③없었습니다

78) 「인구주택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노동력접근법을 사용하여 취업자를 구분하고 있으나, 「고용구조조사」의 경우 유업자접근법으로 조사되어 취업자란 말 대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즉 유업자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경제활동조사」는 지난 일주일동안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사람<sup>79)</sup>과 일시휴직자를 취업자로 간주하고, 「고용구조조사」는 평상시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유업자<sup>80)</sup>로 관별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의 분류방법은 현재 ILO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최소시간의 노동을 취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노동력 시장에서 저평가될 수 있는 집단의 노동력을 파악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특히 여성과 같이 간헐적이고 불완전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은 경우 이들 경제활동규모의 과소집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두 조사의 취업자 분류 방법을 비교해 보면, 「센서스 경황」과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시간 이상 수입을 위해 일한 모든 사람, 일시휴직자, 무급가족종사자 모두를 취업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취업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분류는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시간과 연계하여 그 범주를 분리하고 있다. 즉 취업시간이 18시간 이상인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18시간 미만의 경우는 구직여부와 취업가능여부를 통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리하게 된다. 하지만 「센서스 경황」의 경우는 취업시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음에 따라 1시간 이상(조금이라도) 수입 있는 가족 일을 도울 경우 모두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사일이나 학교(학원)에 다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수입 있는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분포가 높은 여성노동통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요인의 영향<sup>81)</sup>을 제어할 수 있다면 「센서스 경황」은 「경제활동인구조

79) 무급가족종사자는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종사한 자.

80) 「고용구조조사」는 유업자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업자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약간 곤란하다. 취업자가 현상태의 개념에서 사용된다면, 유업자는 평상상태의 개념으로 평상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조사직전 며칠동안 임시로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유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절적인 일이나 병 때문에 잠시 일을 쉬고 있을 경우는 유업자로 분류한다.

81) 조사원의 신분(전임이나 혹은 임시나), 문장의 구성, 표본설계 등.

사」에 비해 다소 높은 취업자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sup>B2)</sup>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은 「센서스 경황」과 달리 취업여부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므로 서 최초의 질문에서 누락된 취업자를 걸러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먼저 취업자를 분리하는 질문으로 '주로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주로 한 것이 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시 '지난 1주간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는가'를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질문은 확실히 누락된 취업자를 걸러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비공식부문에 속한 기혼여성의 일 특히 작업장과 집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거나 일정한 감

<표 IV-15> 우리나라 노동력조사의 취업자(유업자) 판별 기준 및 최초질문

조사명	인구주택총조사	고용구조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최초의 질문	지난 일주일동안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일을 하여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③ 없음(가사, 학업 등)	평소에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주로 일을 하고 있음. ② 주로 가사를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 ③ 주로 통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④ 가사 및 통학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⑤ 가사를 돌보고 있음 ⑥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음 ⑦ 통학(학교, 학원)만하고 있음 ⑧ 기타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① 일하였음 ② 일시휴직 ③ 구직활동 ④ 육아 ⑤ 가사 ⑥ 통학 ⑦ 연로 ⑧ 심신장애 ③ 기타  지난 1주간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음 ③ 무급가족종사자 ③ 없었음
취업자	판별기간	지난 1주일	평소
	자격	수입이 있는 일 (1시간 이상)	수입이 되는 일
	무급가족종사자	1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평상시 무급가족종사자 (1년 30일 이상)
	일시휴직자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경우	계절적 일, 병, 여행 때문 잠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만 포함
접근법	노동력접근법 (현상태접근법)	유업자접근법 (평상상태접근법)	노동력접근법 (현상태접근법)

B2)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편이 발간되지 않아 통계비교는 불가능하다.

독체계가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은 본인들이 유급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주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응답에 자신있게 '일하였음'이란 답항에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은 대개 가사와 함께 행해지기 때문으로 다수의 기혼여성은 본인들의 주된 일이 가사로 여길 수 있다. 그리고 답항을 보아도 이들의 생각에 부합될 만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숙아, 가사 등과 같은 비경제활동에 대한 답항을 함께 제시하여 응답자들에게 주로 했던 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응답자가 질문의 조사목적에 충분히 이해하고 설문에 임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비공식부문의 기혼여성의 경우 노동통계에서 사용되는 취업의 정의가 '최소한(1시간 이상)의 유급 일'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며 혹시 이를 알 수 있더라도 본인을 취업상태라고 응답하긴 어려울 것이다. 응답자의 다수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즉 임금별이인가 주부인가 혹은 학생인가에 의존하여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이 같은 잘못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추가질문을 하고 있다. <표 IV-16>을 보면, 추가질문은 확실히 취업자에서 누락될 수 있는 다수의 사람을 통계조사 목적에 부합하게 걸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최초의 질문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다수의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 질문에 대해 일한 것으로 체크하고 있다. 세분화해서 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그리고 지역별로는 농가가 무급가족종사자를 고려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취업자를 걸러내고 있다. 확실히 추가질문은 여성노동과 비공식부문 노동 등에 대한 편견을 걸러주는 역할을 함으로 통계의 목적과 부합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질문도 가사의 담당자가 여성이란 성별분업의 고정관념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경제활동을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즉 응답자가 추가질문에 앞선 질문을 번복해야하는 심리적 저항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 연구자들은 20세기 초반의 미국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오늘날과 근사한 50%대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로 발표된 원인을 당시의 응답자와 조사원 모두

&lt;표 IV-16&gt;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분류

단위 : 천명

		전체	여자	남자	농가		비농가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985	일하였음	14,576	5,613	8,963	1,553	2,081	4,060	6,883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음	356(59)	240(42)	116(17)	119(31)	85(15)	120(11)	31(2)
	취업자	14,935	5,828	9,107	1,642	2,153	4,185	6,954
1995	일하였음	19,730	7,773	11,957	1,272	1,435	6,501	10,522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음	595(88)	454(70)	141(18)	72(29)	47(10)	382(41)	94(10)
	취업자	20,237	8,157	12,080	1,315	1,474	6,842	10,606
1999	일하였음	19,490	7,802	11,688	1,147	1,293	3,355	10,395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음	554(181)	389(134)	165(47)	37(52)	43(17)	352(82)	122(30)
	취업자	20,283	8,304	11,979	1,179	1,340	7,125	10,638

- 주 : 1. '일하였음'은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에 대한 답함.  
 2.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음'은 취업여부에서 '있었음'을 응답한 경우.  
 3. 실제 취업자는 '일하였음'과 취업여부에서 '있었음'이란 응답을 합친 것보다 큰 수치가 나와야하나(일시휴직자 때문), 여성은 두 수치를 합한 값이 큰데 이는 18시간 미만의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4. ( )는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수지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5,1990,1995,1999), 원자료

가 집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노동은 경제활동이 아니라는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sup>83)</sup>

「고용구조조사」의 유업자 범주는 '평소 수입이 되는 일을 하였는가?'를 통해 구분된다. 만약 평소상태가 일정치 않을 경우는 연중 30일 이상 일을 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형태로 일을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유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일

83) Bose, Cristine E.(1987), "Devaluing Women's Work in the Third World: Problems and Suggestions" in *Women and Poverty in the Third World*  
 Folbre, Nancy(1991), "The Unproductive Housework : Her Evolution in Nineteenth-century Economic Thought", *Sigma* Vol. 16, 1991 : no31.

을 한 경우에 대해 답항을 보면, 여성을 고려한 부분이 있다. 즉 '①주로 일을 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틈틈이 일을 한 경우 그 답항을 보면 '②주로 가사를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 '③ 주로 통학(학교, 학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④ 가사 및 통학 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으로, 가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한 여성이 유업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답항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도 '수입이 있는 일'에 포함된다는 주(主)를 두어 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답항의 분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주로 한 일에 대해서는 응답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있다. 지침서에 의하면 근로학생인 경우, 정규 직장인으로서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통학하는 경우에는 '주로 일을 하고 있음'에 해당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주로 통학(학교, 학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가내작업을 하고 있는 주부의 경우 가사, 육아, 가내작업 중 주된 일이 어떤 것인지 본인의 의사와 함께 가내작업의 시간 및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주로 일을 하고 있음'과 '주로 가사를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고용구조조사」가 유업자와 무업자로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만, 유업자접근법이 '장기간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는가?'를 물음으로서 어떠한 형태로 노동력을 공급하는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로 한 것에 대한 첫 질문은 너무 섬세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녀의 성역할이 뚜렷한 경우 비공식적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이 주간의 대부분을 가내작업과 자영업에 무급종사자로 일할지라도 가사를 함께 했다면 쉽게 자신을 '주로 일을 하고 있음'에 체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유업자의 활동상태를 보면, 남성은 총 유업자 12,165천명 중 63천명만이 주로 가사를 돌보며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지만, 여성은 6,763천명 중 1,730천명이 주로 가사를 돌보며 일한다고 응답했다. 물론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가구별로 보면 농가여성은 2,035천명 중 734천명(농가여성의 36.1%)이 주로 가사를 돌보며 일한다고 했고 농가 유배우 여성은 1,011천명 중 54.4%인 550천명이 이와 같은 답

항에 체크를 하고 있다.

<표 IV-17> 활동상태, 혼인상태, 종사상지위 및 성별 유업자 분포(1997)  
단위 : 천명

구분	총수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임시		일용근로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주로 일함	계	4,951	12,026	206	1,218	803	3,162	789	97	2,927	6,805	226	744
	미혼	1,533	1,963	28	54	60	146	14	58	1,409	1,574	22	131
	유배우	2,653	9,692	128	1,137	414	2,890	757	34	1,231	5,080	122	551
	사별/이혼	765	371	51	27	329	126	18	5	287	151	81	62
틈틈이 일함	계	1,812	139	26	5	272	30	942	18	398	65	175	20
	미혼	86	68	1	0	8	6	9	12	59	39	9	12
	유배우	1,527	60	23	5	180	20	906	5	297	25	121	6
	사별/이혼	199	11	3	0	84	4	26	2	41	2	44	3

출처 : 통계청, '1997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8).

또한 틈틈이 일을 했다<sup>B4)</sup>고 응답한 남녀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여성은 총 1,812천명 중 942천명(유배우 여성 906천명)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했으나, 남성은 상용/임시가 139천명 중 65천명으로 가장 높고 무급가족종사자로 틈틈이 일한 경우는 30천명을 보였다. 즉 여성은 틈틈이 일할 경우 50%이상이 무급가족종사자이고 혼인상태별로는 대부분이 유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남자는 주로 일함<sup>B5)</sup>을 체크하는 반면 여자는 틈틈이 일함<sup>B6)</sup>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주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판단의 주관성을 객관화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으로는 답항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B4) '주로 가사를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 '주로 통학(학교, 학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가사 및 통학 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의 3가지의 경우이다.

B5) 남성은 무급가족종사자 115천명 중 주로 일한다가 97천명으로 84.3%를 차지하고 있다.

B6)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 1,731천명 중 942천명이 틈틈이 일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른 방법은 각주와 지침서에 주로 한 것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지표와 예를 두어야 할 것이다.

## (2) 실업자<sup>B7)</sup>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되며 실업자의 범주는 취업자의 범주를 구분하는 것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실업의 정의는 첫째, 조사기간동안 일하지 않고 둘째, 구직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셋째, 직장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업의 개념은 위의 세 가지의 상태를 겸비해야 실업자로 간주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기준기간을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일하지 않은 기간을 1주일로 하되 구직여부를 1주일과 1개월로 병행 조사하고 있다. 구직기간을 두 가지로 잡은 이유는 국제비교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국내실업통계는 1주일을, 그리고 국외실업통계 발표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발표하고 있다. 반면 「센서스 경황」은 일하지 않은 기간을 1주일로 하고 구직여부는 1개월로 하여 취업여부를 고려해 분류하고 있다. 활동상태에 대한 기준기간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일하지 않은 기간은 1주일로 하고 구직기간은 1개월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일하지 않은 기간은 1주일로 하고 구직기간은 1주일과 1개월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실업자를 판별하는 기준기간을 다양하게 조사하는 것은 구직인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실업의 형태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두 가지의 기준기간을 함께 조사에 포함하고 있음은 실업의 측정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인지적 형태를 갖추었다고 본다. 1개월간의 구직여부<sup>B8)</sup>는 무엇보다 이전 통계에서 실망실업자로 분리되어 비경

B7) 실업자의 개념은 노동력접근법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센서스 경황」은 간단한 항목의 조사만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논의하기 어려우며, 유업자 접근법의 무업자의 개념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으로 실업자의 개념과 달라 이에 비교에서 제외한다. 단지,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항의 분류 문제의 성인지적 분석부분만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B8) 1개월간의 구직여부는 1983년과 1984년에 질문한 적이 있으나 이후 1997년까지 질문하지 않다가 1998년 이후 다시 설문지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계활동인구의 범주에 속했던 다수의 인구가 실업자의 범주에서의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실망실업자의 다수가 여성<sup>89)</sup>인 것을 고려하면 구직기간을 1개월로 확대한 것은 은폐된 여성실업자가 다소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망실업자의 규모에 대한 추정도 1997년 6개월 동안의 구직경험여부에서 1998년 이후 지난 1년 간의 구직경험으로 늘려 이전 조사에 비해 실망실업자의 규모를 보다 현실화했다.

실업을 측정하는 질문이 국제적 방식을 도입하고 현실화되었지만 실업이유를 묻는 항목을 보면 여전히 남성위주의 답항을 제시하고 있다.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란 질문에 대해 다수의 여성이 혼인과 육아, 출산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둬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이에 대한 적합한 답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그만둔 여성은 '㉠개인·가족적 이유' 혹은 '㉡기타' 이유에 체크할 가능성이 있다. 1997년 고용구조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답항을 제시하고 있어 어느 정도 여성의 실적이유를 파악할 수 있으나 여전히 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포괄적인 답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사내 심각한 성희롱의 문제와 남녀차별적 대우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이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항목은 빠져 있고 '㉢회사내 인간관계 때문'이란 포괄적인 답항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회사내 인간관계란 항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 다수의 직접적인 퇴직 원인이 성희롱과 남녀의 차별적 대우임에도 회사내 인간관계라는 포괄적인 항목에 묶여 실적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89)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공식실업률은 1997년 전체실업자의 36.7%에 불과하나 실망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4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직을 단념한 실망실업자(6개월간의 구직경험 여부로 판단)의 여성비율이 67.1%로 다수가 여성인 것을 알 수 있다.

	공식실업자				실망실업자				실망실업자포함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1995	419	280	139	33.2	210	68	142	67.6	629	348	281	44.7
1996	425	290	134	31.5	203	72	131	64.5	628	362	266	42.4
1997	556	352	204	36.7	347	114	233	67.1	903	466	437	48.4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1999),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p. 37.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최근 실적이유를 반영하여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IMF 이전 조사된 고용구조는 이와 같은 항목이 없는 대신 자기·가족사업 준비란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조사가 거듭될수록 답항을 일정부분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실적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수정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나) 노동부

노동부의 노동력조사는 기본적으로 기업체조사이기 때문에 설문지의 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업체의 기록이다. 즉 피고용자의 수, 근로시간, 임금 등에 있어 기업체의 기록정도와 조사목적에 부합한 자료의 보유여부가 설문지 작성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기업체조사는 가구조사와는 달리 기업체의 기록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설문지 작성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의 설문지는 대개 사업체관련 항목, 근로자관련 항목, 근로시간 및 임금관련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체관련 항목은 사업체 명, 대표자 명,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연간 총매출액, 업종, 직종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항목은 근로자수, 고용형태, 근무형태, 입직경로,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급 등으로, 그리고 근로시간과 임금관련 항목은 실근로일수, 실근로시간수,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조사목적에 따라 이들 항목을 기본으로 재구성하거나 세분화하여 작성하게 된다.

현재 노동부에서 직접 실시하는 조사는 모두 세 종류로서, 임금정책을 위한 기초자료생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별로 보면,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는 소규모 기업체에 대한 임금정책의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조사되고 있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경제시책과 임금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그리고 「매월노동통계조사」는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목적에 따라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체에 대한 조사 항목의 비중을 비슷하게 두어 조사하고 있으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경우 임금과 관련된 항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매월노동

통계조사<sup>90)</sup>는 두 조사에 비해 비교적 조사항목 수가 적으나, 매월 고용과 임금에 대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조사 통계에서 쟁점<sup>90)</sup>이 되는 부분은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 등이다. 이와 같은 쟁점은 기업체 기록과 통계조사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이지만 설문지에서 이들 항목에 대해 어떻게 묻고 있는가는 중요하다. 먼저 근로자 수를 보면,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의

<표 IV-18> 노동부 통계조사의 질문항목 비교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성별	○	○	○
연령	○	○	×
학력	○	○	×
고용형태	×	○	○
근무형태	×	○	○
입·이직자 수	×	×	○
입직경로	○	×	×
근속년수	○	○	×
경력년수	○	○	×
직무내용	○	○	×
직급	×	○	×
실근로일수	○	○	○
실근로시간	○	○	○
임금산정기준	○	○	×
정책급여	○	○	○
초과급여	○	○	○
특별급여액	○	○	○
기술기능정도	×	○	×

주 :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수습근로자로 분류함.  
근무형태는 정상근무(full time), 시간제 근무(part time)로 분류함.  
임금산정기준은 시간급, 일급, 월급, 도급, 연봉급으로 분류함.

자료 : 노동부,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2000년 설문지,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0년 설문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2000년 설문지.

90) 본장의 "1. 조사방법의 특징 및 쟁점"을 볼 것.

경우 고용형태별<sup>91)</sup>로 나누어 근로자의 수를 파악하고 있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매월노동통계조사」의 경우 고용형태와 근무형태<sup>92)</sup>별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수에서 젠더 쟁점은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가 근로자 수에 미포함되는 경향이 높은 데 있다. 그리고 이는 상대적으로 일용직이나 시간제의 분포가 높은 여성근로자를 통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매월노동통계조사」는 다소 성 인지적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매월노동통계조사」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때 상용근로자<sup>93)</sup>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게 구성되어 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가 고용형태와 근무형태별로 분석 가능하여 시간제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수습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알 수 있게 구성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sup>94)</sup>.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의 경우 세 조사 모두 정상근로와 초과근로(휴일근로)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고, 임금의 경우 정액급여(기본급 및 계수당), 초과급여(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특별급여(상여금 등)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실제 이들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 젠더 쟁점으로 떠오를 만한 문제점<sup>95)</sup>은 없다. 단지 근로조건을 나타내는 이들 변수가 얼마나 남녀 피고용자의 상태를 잘 반

9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습근로자로 구분하며, 「매월노동통계조사」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분리해서 조사하고 있다.

9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경우 정상근무(full time), 시간제 근무(part time)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매월노동통계조사」의 경우 전체근로자와 시간제 근무를 조사하고 있다.

93) 상용근로자의 정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로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라도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근로한 자를 포함한다.

94) 「임금구조기본조사」의 경우 고용형태와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만 실제 발간에선 이들 변수를 고려하여 임금자료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95) 여기서 쟁점이 없다는 것은 기업체의 기록이 통계목적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기업체의 기록이 통계에서 목적과 동일하지 않다면 통계상의 문제와 쟁점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영하여 집계될 수 있느냐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 보면, 세 조사의 젠더 쟁점은 근로자 수에서 언급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기업체 조사는 가구조사와는 달리 연구자가 문항의 추가와 수정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 또한 취업자에게만 관련된 것으로 대체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는 4인 이하 조사로서 여성근로자의 노동과 근로조건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습근로자에 대한 노동상태는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4인 이하의 조사가 보다 성인지적 조사가 되기 위해선 고용형태 혹은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매월노동통계조사」의 경우도 근로자를 상용, 임시, 일용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급증하는 수습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형태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업체조사가 성 인지적이지 못한 부분은 발간에서 많이 나타난다. 즉 조사는 하되 분석하여 발간하지 않는 문제이다. 발간의 성 인지적 부분은 제 5장에서 다루고 있다.

#### 4. 노동력 측정에서의 성 인지적 개선 사항

성인지적 통계수집은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남녀의 노동력을 누락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통계정의와 부합한 모든 남녀의 경제활동을 수집하고 활동상태를 중복 없이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 언급한 측정방법과 통계청과 노동부의 노동력조사의 분석을 근거로 성인지적 통계수집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통계청

### 1) 경제활동특별조사 실시

「센서스 경찰」과 「고용구조조사」는 최근 조사에서 그 접근법을 변경하였다. 「고용구조조사」는 원래 표본크기와 조사항목 수, 조사비용 등의 이유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다루거나 분석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였다. 「고용구조조사」는 지역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크기를 「경제활동인구조사」에 4~5배로 증가하였고, 조사항목 또한 크게 증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고용구조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다룰 수 없던 다양한 항목의 분석이 가능하고 비공식부문 노동의 접근에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훨씬 성 인지적 노동통계를 생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동력 조사가 모두 현상태인구의 활동상태를 파악하는 노동력접근법만으로 조사됨에 따라, 「센서스 경찰」의 제한된 문항만으론 1년 동안의 평상상태에 대한 노동력과 실업의 심층적 파악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통계청은 「고용구조조사」를 일본의 노동력 조사 패턴과 비슷하게 맞춰 유업자접근법으로 전환해 조사했고, 「센서스 경찰」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검증통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동력접근법으로 바꿔 조사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접근법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센서스 경찰」이 사실상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본격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이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교검증통계로 활용하고 「고용구조조사」를 평상상태인구의 활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은 다양한 노동력 형태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활동조사의 심층분석의 역할을 해왔던 「고용구조조사」의 접근법이 달라짐에 따라 현상태 노동력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불가능해 졌다. 사실상 매월 실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정규직에 대한 심층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노동시장의 성별 특정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분석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설문지를 보완한 「경제활동특별조사」를 제안한다. 특별조사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비교 가능한 통계로서 기존 조사항목에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실시하고, 조사항목에 매년 특별조사항목을 포함하여 숨겨진 노동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본의 크기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크기로 조사해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매년 포함될 특별조사항목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여성노동, 비공식부문노동, 연소·노령노동, 노동이동 등 일련의 순서를 정해 조사하되 4~5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조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활동형 설문조사 실시

현재 노동력 조사의 활동상태는 핵심단어형 질문을 통해 분류하고 있다. 이들 단어는 활동상태를 분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회·문화적 성 역할 의식, 응답자의 태도와 능력에 따라 통계수집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음을 여러 실험조사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오류의 가능성에도 핵심단어형 설문지가 보편적인 노동력 조사방법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핵심단어형 설문지가 활동상태를 구분하는 데 이론적 접근과 분석 그리고 자료수집이 수월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핵심형 설문지가 여성의 노동력 파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는 노동력 조사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성 인지적 노동통계가 남녀의 노동력을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지하느냐의 문제로 본다면, 이론적 접근의 편리성과 다양한 분석의 가능성과는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응답자가 노동력 정의에 적합한 바람직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주요 노동력에 대한 특별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응답자가 '일'로 여기지 않을 만한 몇몇 활동에 대해 좀더 특별한 형태의 질문을 추가 혹은 수정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각종 활동에 대해 나열하여 활동한 것을 체크하게 하는 활동형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이다.<sup>96)</sup> 전자의 경우는 설문지의 문항과 답항의 추가와 수정을

96) Anker, R.(1980) *Research on women's role and demographic change: Survey questionnaires for households, women, men and communities, with background*

통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아직 한번도 우리나라에 선 실시한 경험이 없는 방법<sup>97)</sup>으로 활동형 설문지는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모호함을 가질 필요 없이, 단지 한 일에 대해 그 활동을 했는가 혹은 하지 않았는가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커다란 이득이 있다. 활동형 설문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활동형 설문지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조사된 노동력 자료를 필요에 따라 다른 목적과 정의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으며, 둘째 개개인의 활동이 얼마나 완전히 경제에 통합되어 있고 불완전고용 범위에 통합 가능한 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것으로, 활동형 설문지는 여성에 의해 행해진 많은 활동을 손쉽게 합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동형 설문지<sup>98)</sup>는 세밀한 활동을 나열하여 조사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활동형 설문방식은 잘 훈련된 조사원이 필요하고 또한 면접조사시간과 자료처리 비용이 매우 높다. 더욱이 수집된 정보는 집합적인 형태를 제외하고는 너무 세세하여 사용하기에 분석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감안하여 활동형 설문조사를 핵심단어형 설문조사시 병행조사 할 것을 제안한다. 조사방법은 핵심단어형 설문조사의 보조설문 형식으로 조사되는 것이 비용과 노동력 통계의 비교 측면에서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주기는 「경제활동특별조사」와 더불어 실시하되 여성노동력에 대한 특별조사가 이루어질 때와 맞춰 보조설문지로 작성해 4~5년 주기로 1회 실시하면 될 것이다.

---

*explanations* Geneva, H. O.

[LO(1981) 'An alternative approach for collection and presentation of labour force data', background paper for Meeting of Experts on Household Survey, 6-10 April, Geneva, Doc. MEHS/1981/D. 4:mimeographed.

- 97) 넓은 의미에서 시간사용조사도 일종의 활동형 설문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측정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진 않다.  
 98) 1999년 실시한 시간사용조사 등의 설문방식도 일종의 활동형 설문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시간사용조사의 경우는 응답자가 직접 그 활동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3) 조사원의 성 인지 교육 강화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임조사원을 활용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있지만, 「고용구조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는 임시조사원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임시조사원의 활용은 대규모조사를 단기간에 실시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199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조사」의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구조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상당히 저평가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두 조사의 여성경제활동차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사원의 신분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두 조사가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표본설계 되어 조사되었고 「고용구조조사」가 농가의 인구표본이 더 큼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up>99)</sup>. 잘 훈련된 전임조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예민할 뿐 아니라 매월 조사된 가구를 다시 방문하여 조사하게 됨에 따라 5년 주기로 임시조사원을 활용하는 「고용구조조사」에 비해 여성경제활동이 누락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다<sup>100)</sup>. 전임조사원이 모두 임시조사원보다 편견이나 주관적 판단을 작다고 볼 수 없지만, 잘 훈련된 조사원은 정의에 충실한 자료를 수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원이 남녀의 노동상태를 편견 없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성 인지 교육과 조사에 대한 기초정의 및 목적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 조사원의 오류는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호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들 오류는 근본적으로 경제활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의 인식차이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부호화 작업에서 조사원은 응답자가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 달리 부호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남자는 취업자 혹은 자영업자로 분류하지만 여자는 무급가족종사자 혹은 비경제활

99) 일반적으로 농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농가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높다.

100) 그리고 1999년 1월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CAPI)를 실시함에 따라 활동상태에 대한 실수가 더욱 줄일 수 있었다.

동인구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조사원의 교육은 첫째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둘째 남녀 경제활동에 대해 조사원의 편견을 해소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 경제활동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 교육담당자는 조사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지침서의 내용에도 남녀 경제활동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능한 형태의 예시를 포함시켜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예시 내용은 남녀의 특수한 경제활동상태를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이 조사원 개인의 인식차이로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설문지 수정

##### 가) 질문항목의 추가

##### (1) 근무형태 및 근무장소에 대한 항목 추가

인구센서스의 경제활동은 최소한의 경제활동만을 묻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구센서스 10%의 표본이란 거대한 표본에도 불구하고 남녀 노동력의 특징을 분석하기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인구주택총조사」가 본격적인 경제활동조사가 아닌 만큼 많은 항목의 조사를 포함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의 노동력 조사일지라도 중요한 쟁점은 다루어져야 하며, 기존 통계와 비교 가능한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센서스의 경황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 가능한 통계이다. 성인지적 노동통계생산의 측면에서 두 통계의 공통점은 조사항목에 비공식부문을 알 수 없거나 누락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다수가 비공식부문에서 노동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 통계는 다수인 한쪽 성의 노동을 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취업 시간을 통해 일정부분 시간제 인구를 추정해볼 수는 있으나 35시간 이하 근로자를 모두 시간제 인구 혹은 불완전 노동인구로 분류할 순 없다.

「센서스 경황」과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목적 혹은 조사주기와 기간, 그리고 표본크기로 인해 비공식부문의 조사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비공

식부문의 노동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항목과 표본크기를 늘리는 것 또한 비용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비공식부문의 세밀한 조사는 「경제활동특별조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센서스 경황」과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노동력의 거시적이고 총량적 성격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특별조사」는 비공식부문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항목 즉 노동형태와 근무장소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현재 실업자에 대해 원하는 고용형태와 근무형태에 대한 항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취업자의 경우 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의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공식부문<sup>101)</sup> 노동의 증가로 인해 이들 노동력의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두 항목을 「센서스 경황」과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 그 형태는 「고용구조조사」처럼 종사상지위의 답항인 임금근로자와 연결해서 질문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취업자의 경우 종사상지위를 묻고 임금근로자에 대해 근무형태와 근무장소를 순서대로 묻는 문항을 만들면 된다.

## (2) 6세미만 자녀 유무

6세미만의 자녀의 유무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보육시설<sup>102)</sup>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6세미만의 자녀 유무에 대한 질문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6세미만 자녀의 여부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패턴을 알 수 있게 하며 보육시설의 수요파악과 노동력 공급의 예측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101) ILO에서 정의하는 비공식부문의 특성을 네 가지로 나타냈다. 첫째 근무장소가 주거지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즉 자기 집 혹은 집 주위에서 노동활동이 이루어진다. 둘째,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중 자본의 중요성이 매우 낮다. 대부분의 경우 자본이 없거나 있다 해도 극히 미미하다. 때문에 비공식부문의 생산은 주로 고용창출에 목적이 있다. 셋째 소규모로서 자본과 노동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상 회계장부가 없는 경우가 많고, 가계지출과 생산활동을 위한 지출사이에 구분이 어렵다. 넷째, 생산활동에 일정한 감독체계가 없다.

102) 노동부의 「여성과 취업」에 의하면 1999년 현재 총 보육시설수는 18,768개소이고 운영주체별로 보면 국·공립 1,300개소, 민간 10,558개소, 직장 207개소, 가정 6,703개소로 나타난다.

현재 6세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원자로 변형을 통해 가능하나 자료변형이 어렵고 접근법의 잦은 변경으로 사실상 시계 열적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조사」에 이를 포함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6세미만의 자녀유무를 포함함으로써 기혼여성의 활동상태와 취업구조의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패턴 파악에 중요한 변수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구조조사」의 경우 유업자와 무업자에 대한 다양한 변수와 분석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진입과 퇴장의 원인을 파악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질문 및 답항의 재구성

설문지 구성은 남녀의 노동형태와 산업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남녀노동력 공급형태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설문지에 있어 질문의 구성은 물론이고 답항의 구성도 응답자가 명확히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조사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조사」를 보면 이전 조사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질문지가 수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조사의 설문지를 보면 비정규노동과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질문과 답항을 보면 응답에 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과 명확성에 문제를 보이는 곳이 있다.

#### (1)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98년 제 16차 국제노동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불완전취업자 및 실망실업자에 대한 개념에 대한 통계작성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조사항목을 보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 통계에 비해 설문지의 많은 부분이 남녀의 상태를 잘 반영하도록 작성되었지만 여전히 몇몇 곳은 수정할 부분이 있다. 첫째는 근로시간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실망실업자에 관한 것이다.

취업자의 근로시간의 경우 먼저 그 질문을 보면 '지난주에 통틀어 몇 시간 일

을 했습니까?’를 물어 36시간이상 일한 사람은 직업, 종사상 지위, 종사상 규모를 묻는 질문으로, 36시간 미만 일한 사람은 36시간미만 일한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간다. 36시간 미만 일한 사람 중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실업과 비경제활동 구분을 하는 질문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 순서는 평소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지난주에만 36시간 이상 일하면 전일제(full time)근로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다. 즉 평소시간은 35시간 이하의 일을 하고 있을 지라도 지난주에 36시간 이상을 했다면 전일제(full time) 근로로 인정되어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바로 직업과 종사상 지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표 IV-18>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시간과 36시간미만 일한 이유의 질문순서와 답항 수정

기존 질문과 답항	개정 질문과 답항
<p>12. <b>지난주</b>에 통틀어 몇 시간 일 했습니까? ( )시간</p> <p>1.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10번으로)</p> <p>2. 1~35시간</p> <p>3. 36시간이상(30번으로)</p>	<p>12. <b>평소 1주간</b> 몇 시간 일하십니까? ( )시간</p> <p>1. 36시간 미만</p> <p>    평소 1주간에 36시간미만 일하는 이유?</p> <p>11. 일거리가 없어서</p> <p>12. 시간제로 일했기 때문</p> <p>13. 건강 때문 14. 육아 15. 가사</p> <p>16. 통학</p> <p>17.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p> <p>18. 본인이 원해서</p> <p>19. 기타( )</p> <p>2. 36시간 이상</p>
<p>13. <b>평소 1주간</b>에 36시간미만 일하십니까?</p> <p>·그리함</p> <p>    평소1주간에 36시간미만 일하는 이유는?</p> <p>1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p> <p>12. 건강 13. 육아 14. 가사</p> <p>15. 통학 16. 본인이 원해서</p> <p>17. 일거리가 없어서 18. 기타( )</p> <p>·그렇지 않음</p> <p>    그러면, 지난 주에 36시간미만 일한 이유는?</p> <p>21. 일시적 병, 사고 22. 일기불순</p> <p>23. 연가, 교육 24. 육아</p> <p>25. 가족적 이유 26. 노사분규</p> <p>27. 사업부권 28. 기타( )</p>	<p>12-1. <b>지난주</b>에 통틀어 몇 시간 일 했습니까? ( )시간</p> <p>1.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10 번으로)</p> <p>2. 1~35시간</p> <p>3. 36시간이상(30 번으로)</p> <p>13. <b>지난주</b>에 36시간미만 일한 이유는?</p> <p>1. 일거리가 없어서 2. 일시적병, 사고</p> <p>3. 일기불순 4. 휴가 5. 육아</p> <p>6. 가족적 이유 7. 노사분규</p> <p>8. 교육 및 훈련 9. 사업부권</p> <p>10. 기타( )</p>

답항의 경우도 평소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일거리가 없거나' '시간제로 일했기 때문'이란 대답이 많을 것인데, 제시된 답항을 보면 1번은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고 '일거리가 없어서'는 7번에, 그리고 '시간제로 일했기 때문'이란 아예 답항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시간제 노동의 경우 대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란 점에서 1번의 답항을 체크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제로 일한 것을 정규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정규근무시간이란 말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을 <표 IV-18>과 같이 질문 순서와 답항을 수정하여 제시한다.

실망실업자는 비취업자로서 취업하기 원하지만 현재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를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비취업자로 1개월내 구직경험이 없지 만 지난 1년 중 구직경험이 있고 일하기 원하는 사람을 실망실업자로 집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망실업자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의 범주로 분류한다. 따라서 실업자에게 묻고 있는 희망고용형태(임금근로, 비임금근로)와 희망근무형태(주로 하는 일, 틈틈이 하는 일)에 관해 질문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는 실망실업자가 적극적인 구직을 하고자 하면 자연히 실업자로 분류되어 희망고용형태와 근무형태를 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여성의 구직이 남성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이와 같은 설문방식은 잠재적 여성노동력의 저평가를 가져올 것이다. 다수의 여성은 적극적인 구직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취업을 원하고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실망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자에게 묻고 있는 고용형태와 희망근무형태의 질문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질문의 형태는 희망고용형태의 경우 그대로 하고 희망근무형태의 경우 질문을 '어떠한 근무형태를 원하십니까?'로 바꾸어 묻고 답항을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로 바꾸어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희망근무형태를 '주로 하는 일을 원하십니까? 가사나 통학을 하면서 틈틈이 하는 일을 원하십니까?'와 같이 물을 경우 이는 가사와 통학을 하면 틈틈이 하는 일을 해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답항의 분류는 희망근무형태뿐 아니라 비구직이유(25번)<sup>103)</sup>, 실적을 한 이유

(29번)에서 수정을 요한다. 먼저 비구직이유 의 경우 9개 항목의 답항을 보면 중요한 이유를 대부분은 포함하고 있으나, 여성이 구직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원하는 직장 혹은 직종의 채용차별이 심해서'란 내용이 빠져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 남성과의 채용경쟁에서 빈번히 차별을 받을 경우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를 생략함으로써 여성의 비구직 이유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실업의 이유를 묻는 질문은 사내 심각한 성희롱과 남녀차별 대우로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따라서 비구직이유는 '원하는 직장 혹은 직종의 채용차별이 심해서'란 답항을 추가하고, 실업의 이유 경우는 '직장내 성희롱 때문에'와 '남녀차별 대우 때문에'란 항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표 IV-19>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망실업자에 대한 질문 추가 및 답항의 수정

구분		(추가)질문내용	(추가)답항
질문 추가	희망 고용형태	24-1. 원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1.임금근로 2.비임금근로
	희망 근로형태	24-2. 어떠한 근무형태를 원하십니까?	1.전일제 근로 2.시간제 근로
답항 추가	비구직이유	25. 지난주에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직장 혹은 직종의 채용차별이 심해서
	실업이유	29. 직장(일)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직장내 성희롱 때문에 · 남녀차별 대우 때문에

## (2) 고용구조조사

1997년 「고용구조조사」는 비교적 상세한 부분의 질문을 통해 남녀의 노동상태를 파악하고 있어 설문지의 주관성제거와 답항의 추가 및 수정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설문지의 주관성 부분은 활동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답항의 '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즉 가내작업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돌

103) ( )는 2000년 설문지의 질문 번호임.

보는 경우, 시간제 아르바이트이지만 주 36시간 일하며 통학하는 경우 등은 주로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지침서에 의하면 가내작업의 경우 시간 및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주로 일을 하고 있음'과 '주로 가사를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을 나눌 수 있다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주관적 판단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은 주로 한 것을 가내작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 다수의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주로 한 것으로 그리고 가내작업은 부차적인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지침서를 보면 '주로 일을 하고 있음'의 개념은 임금이나 다른 소득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과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지만 일과 시간의 대부분 일한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주로 가사 혹은 통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은 가사 혹은 통학을 주로 하면서 틈틈이 일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임금과 소득을 목적으로 하든 무급가족종사자든 대부분 일한 사람이란 정의는 도대체 어느 정도 일해야 대부분에 속하는지 뚜렷하지 않다. 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따라 이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 주로 한 것에 대해 응답할 때 정규직으로 일하지 않는 이상 취업시간과 관계없이 주로 한 것이 통학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집 근처에서 일하면서 가사를 돌보는 기혼여성의 경우 실제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가사를 함께 동시에 하고 있음에도 주로 한 것은 가사로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틈틈이 일하면서 주로 가사를 돌본 경우는 무업자의 범주인 '가사를 돌보고 있음' 혹은 '어린이를 돌보고 있음'에 체크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활동상태에 대한 이런 주관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주로 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한 시간의 기준을 만들고 또한 다양한 예시를 통해 조사원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주 44시간 이상(혹은 36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고용 및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로 한 것을 일로 본다든가 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유업자 답항의 주관성의 수정뿐 아니라 무업자의 답항도 명확한 의미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무업자의 답항은 '가사를 돌보고 있음', '어린이를 돌보고 있음', '통학(학교, 학원)만 하고 있음', '기타'의 4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무

업자의 답항은 유업자 답항 다음에 제시하고 있어 주로 가사 혹은 통학을 하며 일을 한 여성에게 매우 혼란을 줄 수 있다. 답항 중 '통학(학교, 학원)만 하고 있음'은 조금 덜 혼란스럽겠지만 '가사를 돌보고 있음'과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음'의 경우는 주로 가사를 돌보며 틈틈이 일하는 여성(특히 비공식부분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무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각각 '일하지 않고 대부분 가사를 돌보고 있음', '일하지 않고 대부분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음', '일하지 않고 통학(학교, 학원)만 하고 있음'으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직과 비구직이유의 답항은 내용추가가 필요하다. 비구직이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하게 '원하는 직장 혹은 직종이 채용차별이 심해서'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이직의 경우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안한 실업이유의 추가항목 즉 '직장내 성희롱 때문에'와 '남녀차별이 심각해서'의 항목을 추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나. 노동부

측정방법의 전반적 논의가 가구조사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고, 기업체 조사가 기업체의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측정방법 관점에서 새로운 방법의 조사와 제안 보다 설문지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기업체 조사는 가구조사와는 달리 연구자가 문항의 추가와 수정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사목적에 훼손하지 않고 충분히 조사 가능한 항목이라면 이는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형태와 근로형태는 기업체 취업형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1순위로 뽑을 수 있다. 세 조사는 두 항목에 대해 모두 혹은 일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별로 보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두 항목이 모두 존재하고 이들 항목과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지만,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경우 근로형태<sup>104)</sup>는 조사항목에 없고 고용

104) 정상근무자(full time) 혹은 시간제근무자(part time).

형태는 조사하지만 근로자에 관한 항목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매월노동실태조사」의 경우도 두 항목을 모두 조사하지만 근로자에 관한 항목<sup>105)</sup>과 연관하여 분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모든 조사가 근로자에 관한 항목과 고용 형태 혹은 근로형태를 연관하여 분석할 필요는 없다. 조사비용과 시간, 조사목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근로자에 대한 분리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매월노동실태조사」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조사주기와 목적,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두 항목을 근로자에 관한 항목과 연관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경우는 이들 항목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항목과도 연관되어 분석할 수 있도록 설문지 구성을 변경해야 한다. 설문지 구성에서 「Ⅱ.근로자에 관한 사항(상용근로자만 해당됩니다)」에서 ‘상용근로자만 해당됩니다’를 빼고 조사항목에 고용 형태와 근무형태를 포함시켜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항목에 혼인상태를 포함시켜 기혼 여성의 취업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06)</sup>.

105) 연령, 학력,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종명(직무내용),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 등

106) 그런데 사실 기업체 통계의 성인지 문제는 발간에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경우 시간제, 일용 및 임시 등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되긴 하나 실제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이는 표본수와 기업체 기록 문제 등으로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예상하나, 표본수의 조정과 기업체 작성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여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통계자료의 발간과 보급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 
1. 통계자료 발간의 젠더 쟁점 147
  2. 국내 노동통계 발간에 대한 분석 150

## 1. 통계자료 발간의 젠더 쟁점

통계자료의 보급은 결과를 표나 도표로 만드는 과정과 통계표 또는 원자료를 자료의 사용자에게 간행물, 보고서 또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통계자료 발간의 주요 젠더 쟁점은 노동통계가 남자와 여자간의 차이점과 유사점,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과 유사성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이다(Mata-Greenwood, 1998).

통계자료 발간 상의 가장 기본적인 젠더 쟁점은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노동인구의 특성-구직활동, 소득, 종사상의 지위, 취업시간, 직업 등을 나타내는 통계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하여 조사도구가 자료의 성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또한 성별로 분리하여 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별의 구분만으로는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다른 상태를 기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공식 노동통계상에 나타난 여성 노동의 특징은 대체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남성보다 근로시간이 짧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고, 직업도 관리, 감독직 보다는 생산과 서비스직종에 집중되며, 남성보다 소득이 낮다는 점인데 이는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기대하는 주요 역할이 가정생활과 관련된 육아와 가족 돌보기, 가사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육아 및 가족, 가사 돌보기를 맡아 하도록 기대되는 여성들은 남성만큼 직장 일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이고 때로는 출산과 다른 가정 사정으로 간헐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나야 할 때가 많다. 고용주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여성을 고용하지 않거나 책임 있는 직무를 맡기려 하지 않고 또한 한 직장에서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여성은 직장 일을 위한 투자나 교육을 남성만큼 하려하지 않는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식부문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의 축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단순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에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도 취업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와 같이 가부장적 윤리의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부부가 함께 가족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남편

은 자영자, 아내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 여성 노동활동은 무보수노동으로서 통계에는 생산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반영된다. 노동자료가 남자와 여자의 경제적 기여도와 조건, 그리고 제약점에 있어서 차이를 잘 나타내려면 노동시장에서 남녀간의 차이점과 유사성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즉 취업자의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가족 상황-개인의 성별 이외에 적어도 교육수준, 결혼 상태, 가정에 영유아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다른 가족원이 있는지를 포함하여-과 연결하여 노동자료가 발간, 보급되어야 한다(Mata-Greenwood, 1996). 이러한 요인들이 남자와 여자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동통계상 같은 범주에 속했다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성별로 고용상태와 지위, 또는 실업상태가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고용통계는 하나의 통계적인 범주가 질적으로 다른 하위범주로 구성되었을 경우 보다 세분화된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경제시장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나라마다의 경제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노동시장 상황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특히 임시직 종사자와 시간제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노동통계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발간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다. 보다 세분된 하위영역으로 범주화시킴으로써 남녀의 노동시장에서의 차이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통계적 범주는 다음과 같다.

-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을 원하지 않는 집단, 취업을 원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집단, 그리고 취업을 원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집단으로 세분화
- 실업자를 자발적 실업자와 강제 실업자로 세분화
- 취업자 가운데 직장(일)이 주된 활동인 집단과 다른 주된 활동을 하면서 일하는 집단을 구분
- 취업자 가운데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집단을 구분
- 임금근로자는 상용과 임시근로자, 시간제 취업과 전업 취업을 구분

<표 V-1> 노동통계 발간의 성 인지적 쟁점

노동통계	성 인지적 쟁점	자료발간상의 쟁점	
경제활동인구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된 활동이 일이 아닌(가사, 통학 등) 사람의 취업 포함</li> <li>·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주로 여성- 제외됨</li> <li>· 무급가족종사자, 계절노동자, 일이 있을 때 또는 할 수 있을 때만 일을 하는 노동자-주로 여성-는 조사대상 기간 중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됨</li> <li>· 비공식부문 또는 비시장생산활동 종사자-주로 여성-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일)이 다른 활동과 병행되는지 구분</li> <li>· 조사주기를 줌-매월 조사 등</li> <li>· 조사대상기간을 확대(1년)하고 근로기간을 함께 제시</li> </ul>
	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을 원하지만 육아 및 가사로 현재 일을 할 수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제외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활동은 하지 않지만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구분</li> </ul>
	불완전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다른 직장(일)을 하고자하고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는 불완전취업자 주로 남자</li> <li>·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는 불완전취업자-주로 여성-은 제외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완전 취업의 기준-근로시간-필요</li> <li>· 구직활동은 하지 않지만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구분</li> </ul>
비경제활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종사자-주로 여성</li> <li>· 취업하기를 원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주로 여성</li> </ul>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간 직업분리현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분화된 직업 범주별로 남녀 종사자수 제시</li> <li>· 동질적인 직업군으로 세분화</li> </ul>	
종사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사업종사자중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남성은 자영자로 분류되는 경향</li> <li>· 임금근로자와 자영자를 하위집단으로 세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근로자와 자영자를 보다 세분화</li> </ul>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간 소득 차이가 존재</li> <li>· 가족수당, 의료비 공제, 성과급, 비정규보수 등에서 남녀 차이가 보다 큼</li> <li>· 남녀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자영자소득이 측정에서 제외됨-남자는 주로 자영자, 여자는 주로 무급종사자임에 기인하는 남녀소득차도 물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근로자, 자영자의 모든 형태의 소득을 세분화하여 조사하여 남녀차이가 보다 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li> <li>· 부업소득포함</li> <li>· 무급가족종사자 기여분을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자영자 소득을 조정</li> </ul>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는 남자보다 일 시간이 적은 경향</li> <li>· '실제 일한 시간', '정규근무시간'의 일시간 조사에 자영자와 임시근로자를 제외하는 경향</li> <li>· 남녀별 근로상태 차이에 기인하는 노동시간의 차이 존재-여성이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 가사와 일이 동시에 행해지거나 이동시간이 적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 측정</li> <li>· 근로시간의 세분화-초과근무, 결론, 재택근무, 이동시간 등</li> </ul>	

- 자영자 집단을 세분화
- 직업은 동질적인 직업군으로 세분화
- 임금근로자와 자영자의 소득을 구분
  - 근로소득은 정규소득 뿐 아니라 가족수당, 의료비공제, 성과급, 비정규적 보수를 포함하여 측정하고 소득의 각 하위범주별로 세분화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제적 기여분을 추정하여 제시하고 자영자 소득을 조정
- 근로시간은 정규근무, 초과근무, 결근, 재택근무, 가사시간, 이동시간으로 구분

## 2. 국내 노동통계 발간에 대한 분석

이 절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주요 노동통계자료의 개요 및 특징과 더불어 위에서 살펴본 통계자료 발간상의 젠더 쟁점이 자료의 발간 및 보급에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즉, 여러 가지 고용통계가 성별로 분리되어 발간되고 있는가, 성별 이외에 고용통계의 차이를 설명하는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들로 구분하여 발간되고 있는가, 그리고 각종 고용통계가 질적으로 다른 하위범주로 적절하게 구분되어 나타나 있는가를 중심으로 통계자료 발간 현황을 소개한다.

통계제도는 집중형과 분산형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집중형(centralized system)은 하나의 통계기관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통계를 작성하는 형태이고 분산형은 여러 기관에서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작성하는 형태이다. 우리 나라의 통계제도는 분산형이라 할 수 있다. 분산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주요 노동통계를 통계청과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조사」를 통하여, 노동부에서는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매월 노동통계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의 노동력 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고용상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수와 근로시간, 급여 등 종사자수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각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발간되는 고용통계 유형을 <표 V-2>에 정리하였다. 다음은 각 통계조사 보고서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자료발간 상황을 평가하여 보고자 한다.

<표 V-2> 국내 노동력조사와 발간자료

조사기관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주기	발간 노동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가구	5년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직업 및 산업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가구	매월	경제활동상태, 산업 및 직업, 고용상태, 근무시간, 불안권취업, 무급가족종사, 구직활동
	고용구조조사	표본가구	5년	경제활동상태, 산업 및 직업, 고용상태, 근로기간, 구직활동, 직업훈련, 과거직장경력, 연간소득
노동부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표본사업체	매년	입직경로, 근로일수, 급여, 경력년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표본사업체	매년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기간, 급여, 산업, 직업
	매월노동통계조사	표본사업체	매월	근로자수, 근로일수 및 시간, 급여

### 가. 통계청

#### 1) 인구주택총조사<sup>107)</sup>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인구에 대하여 실시되는,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이다.<sup>108)</sup>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5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직업 및 산업에 관한 고용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1)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자, (2)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는자, (3)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히 일을 하고

10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108) 자세한 사항은 앞의 제3장 참조

있는 자, (4)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는 자, (4)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는 자로, 비취업자는 (1)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는 자, (2) 집안 일을 돌보고 있는 자, (3) 학교(원)에 다니고 있는 자, (4) 놀고 있는 자와 (5)기타로 구별하고 있다.

취업자의 산업과 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를 따랐고 종사상의 지위는 고용원을 둔 사업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 및 봉급 근로자로 범주화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경제활동편」에서 성별, 연령,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의 개인 특성변수와 취업상태, 직업 및 산업 등의 고용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별로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자수에 대한 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발간된 통계표는 다음과 같다.

<표 V-3>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발간사항

· 성, 연령 및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
· 성, 연령 및 종사상의 지위별 인구
· 취업상태 및 산업별 취업자
· 취업상태 및 직업별 취업자
· 취업상태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성, 직업 및 산업별 취업자
· 성, 연령 및 산업별 취업자
· 성, 연령 및 직업별 취업자
· 성, 연령,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 성, 연령, 혼인상태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성, 연령, 혼인상태 및 산업별 취업자
· 성, 연령, 혼인상태 및 직업별 취업자
· 성, 교육정도 및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 성, 교육정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성, 교육정도 및 산업별 취업자
· 성, 교육정도 및 직업별 취업자
· 거처의 종류, 가구의 규모 및 취업자수별 가구(일반가구)
· 가구의 성, 경제활동상태 및 가구의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 가구의 성, 종사상의 지위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
· 세대구성 및 가구의 직업별 가구(일반가구)
· 세대구성 및 경제활동상태별 여성인구
· 자녀수 및 부부의 취업상태별 가구(일반가구)
· 산업 및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별 가구(일반가구)
· 직업 및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별 가구(일반가구)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시점마다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고 있어서 남녀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시계열적인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우리 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에 따른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데서 비롯되는 정보의 손실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경제활동상태의 구분에 필요한 조사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는 유업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여성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절노동자와 간헐적인 노동자를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지만, 95년 조사에서는 1개월을 기준으로, 2000년 조사에서는 1주일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접근법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여성노동력의 규모 파악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표는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로 분리되어 발간되고 있다. 성별 분리 뿐 아니라 혼인상태, 연령, 교육 수준의 개인 특성별 변수로 범주화하여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개인 특성에 따른 성별 차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취업자는 주로 일하는 집단과 틈틈이 일하는 집단, 잠시 쉬는 집단으로 구분하고, 틈틈이 일하는 집단을 다시 가사, 통학, 다른 활동 여러 가지 활동으로 분리함으로써 여성 취업자의 노동력 참가 실태를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일을 하지 않는 배경 변수(가사, 통학, 기타)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발간되지 않았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을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성별 분포를 타나내는 자료가 발간된다면 절반 이상의 여성노동력의 실태를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임금 및 봉급근로자도 고용상태 및 지위에 따라 성별로 구분된 자료는 발간되지 않았다. 자영업자는 세분화되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하위범주들이 같은 집단으로 취급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2)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을 위하여 1962

년 8월부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sup>109)</sup> 조사결과는 월, 분기, 년 단위로 보고하고 있으며, 연 평균 통계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다루고 있는 통계표는 다음과 같다.

<표 V-4> 경제활동인구조사항목과 답변범주(1)

구분	조사항목	범주
인적 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배우자/미혼자녀/기혼자녀/손자녀/부모(장인, 장모)/조부모/미혼 형제자매/기타
	생년월일/성별	
	혼인상태	미혼/유배우/사별/이혼
	교육정도	무학/초등/중학/고등/전문대/대학/대학원 - 계열: 인문/사회/자연/의약/예체능/사범/기타(상농공수산) - 수학여부: 졸업/재학/중퇴/휴학
화면 사항	지난 1주간 활동 상태	일/일시휴직/구직/육아/가사/통학/연로/심신장애/기타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본업 또는 가구원의 일을 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있었음/무급가족종사자/없었음
	지난 주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음	있었음-이유: 일시적 병, 사고/연가, 교육/가족사정/노사분규/조업중단/기타
	지난주 구직 여부/지난 1개월 내 구직 여부/지난 주 일 시간	
완전 취업자	산업 및 직업	
	고용상태	상용/임시/일용/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	
불완전 취업자 (일 시간이 36시간 미만)	평소 일 시간이 36시간 미만 여부	그러함-이유: 정규 근무시간/건강/육아/가사/통학/본연희망/일거리가 없어서/기타 그렇지 않음-이유: 일시적 병, 사고/일기불순/연가, 교육/육아/가족사정/노사분규/사업부진/기타
	추가직장 또는 일시간 늘리기 희망 여부	현재 일 시간을 늘리고 싶음/현재 일 이외의 다른 일을 하고 싶음/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현재 일이 더 많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었음/할 수 없었음
	다른 일을 더 하거나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것이 언제쯤 가능	1주일 이내/1주일-1개월 이내/1개월 후/잘 모름
	지난 주 다른 일 구직 여부/지난 주 다른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는지 여부	
	구직방법	직업소개소 등록/취직시험/학교, 학생 추천/사업체 방문/전문기관 소개/자영업 준비/신문, 잡지 등 구인구직정보/기타
	구직활동기간	
	원하는 고용형태	임금근로/비임금근로
	원하는 일의 형태	주요하는 일/가사, 통학하며 틈틈이 하는 일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음	있었음-그만 둔 지 얼마나 경과?
	그 직장을 그만 둔 이유	개인, 가족이유/건강/정년퇴직, 연로/작업여건(시간, 보수) 불만족/해설, 휴업/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일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환로/일거리가 없음 또는 사업경영상악화/기타

109)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표 V-5> 경제활동인구조사항목과 답변범주(2)

구분	조사항목	범주
일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무급가족 종사자	지난 주 구직 여부	
	지난 1개월 내 구직 여부	
	지난 주 다른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는지 여부	
	구직방법	직업소개소 등록/취직시험/학교, 학원 추천/사업체 방문/전구전 지 소개/자영업 준비/신문, 잡지 등 구인구직정보/기타
	구직활동기간	
	지난 주에 일을 원했는지 여부	예/아니오
	지난 주 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는지 여부	있었음/없었음
	지난 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질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음/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음/근처에 일거리가 없음(교육, 기술, 경험 부족/연령이 문제/이전에 구직했으나 일거리들 찾을 수 없어서/육아, 가사/통학/기타
	지난 1년 간 구직활동여부	있었음-마지막 구직활동 시기/없었음
	구직활동기간 중 직장을 구한 횟수	1년간 1회/6개월간 1회/3개월간 1회/1개월간 1회/1개월간 2-3회/1개월간 4회 이상
	전에 수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음	있었음-그만 둔 지 얼마나 경과?/없었음
	그 직장을 그만 둔 이유	개인, 가족이유/건강/경년퇴직, 연로/작업여건(시간, 보수) 불만족/폐업, 휴업/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일거리가 없음 또는 사업경영상 악화/기타

<표 V-6> 경제활동인구연보 발간사항

- 경제활동인구 총괄
-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 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교육정도별 취업자
-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 산업별 취업자
- 직업별 취업자
- 산업 및 연령계층별 취업자
- 산업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산업 및 취업시간별 취업자
- 연령계층별 실업자
- 교육정도별 실업자
- 전산업 및 전직 실업자
- 실업률
- 계절조정 실업률

1999년 「경제활동인구연보」에는 취업자의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발간하고 있다. 이전에는 상용과 임시, 일용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자료를 제시하였다.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는 또한 계절조정 실업률을 제외하고 남녀로 구분하여 통계를 발간하고 있어서 자료의 성별 차이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및 가족사항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상태, 가족형태, 그리고 영유아자녀유무별 여성의 노동력 참가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는 발간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1999년부터 많은 수의 여성이 포함되리라 예측되는 불완전취업자 및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조사 항목을 보완하여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도 보고서 내용은 이전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사한 정보를 발간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노동시장참여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를 파악하는데 중요하지만 발간되지 않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V-7>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추가분석이 필요한 통계

분석대상집단	필요한 발간통계
· 비경제활동인구	- 직장을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자수와 구직단념 이유 - 활동상태
· 일주일에 18시간 미만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경제활동상태(실업/비경제활동) - 실업무급종사자의 희망 고용상태-고용형태 및 완전/불완전 형태 - 비경제활동무급종사자의 구직단념 이유
·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불완전취업자	- 권직장 유무 및 퇴직이유

이외에도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이상의 통계를 성별뿐 아니라 결혼상태, 연령, 영유아자녀유무별로 분리하여 발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고용구조조사

1963년부터 시작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30,000 표본가구에 대한 월별조사로서 전국단위 취업과 실업의 변동 추이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으나 제한된 조사항목(32문항)으로 인하여 국가의 장·단기 고용정책수립에 필요한 노동력의 유동실태, 취업구조, 고용형태, 잠재노동력실태 등에 관한 자료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 1983년 120,000가구의 대규모 표본에 대하여 「고용구조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용구조조사의 구체적인 조사목적은 첫째, 지역, 산업 및 직종간의 노동력 이동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지역별 유업자의 구조 및 무업자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인력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조사주기는 처음에는 3년이었으나 1997년부터 5년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어서 2002년에 제 6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고용구조조사」에서는 인적사항 및 확인사항 등 13개 기본항목, 산업, 직업, 고용형태, 추가취업의사여부 및 이유, 근속기간 등 18개 유업자에 대한 항목, 취업의사여부 및 형태, 구직활동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을 포함한 무업자 관련 항목 10개, 5년간 전직횟수, 산업, 직업, 시작 및 이직시기, 이직이유 등을 묻는 전직관련 9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표 V-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V-8> 고용구조조사 조사항목과 범주

구분	조사항목	범주
인적 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배우자/자녀/자녀의 배우자/손자녀 및 그 배우자/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기타 친인척
	생년월일	
	혼인상태	미혼/배우자있음/사별/이혼
	교육정도	무학/초등/중학/고등/전문대/대학/대학원 고등학교: 인문계/실업계/예체능계/사범계 - 전문대이상: 인문/사회/이학/공학/의약/예체능/사범/기타 계열 - 이수여부: 졸업/제학/중퇴/휴학
확인 사항	유업자: 주로일을 하고 있음/주로 가사를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주로 통학(학교, 학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가사 및 통학 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무업자: 가사를 돌보고 있음,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음, 통학(학교, 학원)만 하고 있음/기타	
유업자 사항	직업 및 직명/ 산업	
	고용지위	상용/임시/일용/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 - 상용 및 임시: 근무형태-권일제/시간제 근무장소-직장내/직장이외/재택/가내수공업
	직장의 종사자 수	
	일 한 기간	1년간 취업 일수 규칙성 여부-불규칙적/계절적/규칙적 평일 취업시간
	연간소득	
	일을 계속하기 원하는지 여부	계속하기 원함/이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고 싶음/직장(일)을 그만 두고 싶음 - 계속하기 원함: 취업시간이-지금 그대로가 좋음/늘리고 싶음/줄이고 싶음
	다른 직장(일)로 바꾸고 싶은 이유	보수/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음/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음/작업시간 또는 환경이 좋지 않음/일거리가 없음/자기 및 가족 사업/회사내 인간관계/기타
	원하는 고용지위	상용/임시/일용/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 - 상용 및 임시: 근무형태-권일제/시간제 근무장소-직장내/직장이외/재택/가내수공업
	구직 및 사업 준비 여부	구직/새로운 사업 준비/하지 않음
	취업전 직업훈련 (교육)여부	없음/받았음-사설학원/공공 직업훈련기관/사내 훈련기관
	취업후 직업훈련 (교육)여부	없음/받았음-사설학원/공공 직업훈련기관/사내 훈련기관
	현재 일을 한 년수	
	1년권 활동	다른 일-주로 일함/가사, 통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 함 일을 하지 않음-가사/통학/기타
	취업 이유	실업중/학교졸업/생필비/학비 및 용돈/여가활동/지식 및 기술활동/사회적 일원/기타
	지난 5년간 다른 직장 및 일	있었음/없었음

(계 속)

구분	조사항목	범주
무업자 사항	일하기 원하는지 여부	
	일하기 원하는 이유	실업중/학교졸업/생활비/학비 및 용돈/여가활동/지식 및 기술활동/사회의 일원/기타
	원하는 고용지위	상용/임시/일용/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 - 상용 및 임시: 근무형태-권일제/시간제
	구직 및 사업 준비 여부	구직/새로운 사업 준비/하지 않음
	구직 및 개업준비 방법	취직시험/학교학원 추천/친구친지소개/공사립 직업소개/신문, 잡지 등 구인구직정보/공사립 직원훈련원등록/자기, 가족사업준비/기타
	구직 및 개업준비 기간	
	취업의사가 있는데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	본인의 지식, 기술에 적합한 일거리가 없음/원하는 임금수준에 맞는 일거리가 없음/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음/가사 또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과 병행하기 어려움/학원수강, 취직, 고시 등 시험준비/권에 구직했으나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건강상 이유/서둘러 구할 필요 없음/기타
	일이 생기면 곧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	
	1년권 경제활동 상태	일하지 않음-가사/통학/기타 일함-주로 일함/주로 가사, 통학하며 일함
	지난 5년간 직장 경험	
전직자 사항	지난 5년간 권직 갯수	
	해당 직장 그만둔 년도	
	당시 살던 지역	
	해당 직장 시작 년도	
	해당 직장의 직업 및 산업	
	해당 직장의 고용지위	상용/임시/일용/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
	해당직장 종사자 수	
	그만 둔 이유	계약해고/소득, 보수/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음/적성, 지식, 기 능이 맞지 않음/작업시간 환경이 좋지 않음/일거리가 없음/자기 및 가족 사업, 결혼, 육아, 가사 등 결혼 사정/건강/회사내 인간관계/기타

「고용구조조사보고서」에는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특성별 취업자수, 무업자, 전직자 수를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에 발간된 통계는 다음과 같다.

&lt;표 V-9&gt; 고용구조조사보고서 발간사항

분석대상집단	발간통계사항
활동상태별 인구	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
유업자 수	교육정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유업상태, 평일 취업시간, 연간취업일수, 취업 규칙성, 근속연수, 추가직업, 권력의사여부, 권력희망 이유, 직업훈련이수여부, 직업훈련 기관, 근무형태, 연간소득
유업자-권력희망자	연령, 구직활동유무, 권력희망이유, 종사상 지위, 근속연수, 산업, 직업, 연간취업일수, 취업 규칙성, 평일 취업시간
유업자-계속취업희망자	연령, 종사상지위, 취업시간증감 희망여부, 근속연수, 산업, 직업, 연간취업일수, 취업 규칙성, 평일 취업시간, 근무형태
유업자-추가취업희망자	연령, 교육정도, 종사상지위, 구직활동유무, 근속연수, 근무형태, 연간소득, 희망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연간취업일수, 평일 취업시간
무업자	교육정도, 취업의사유무, 일을 원하는 이유, 구직활동 유무, 방법, 기간, 비구직 이유 및 무업상태, 1년전 활동상태
취업의사표시 무업자	연령, 교육정도, 희망근무형태, 취업희망이유
계속취업자	혼인상태, 종사상지위, 계속취업년수, 권력유무, 산업, 직업
권력자	연령, 권력 종사상 지위, 권력 이유, 권력 산업, 권력 직업
지난 5년 간 권력자	연령, 혼인상태, 권력 횡수, 교육정도,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활동상태, 근속연수, 연령, 평균근속기간, 평균재취업기간
이직자	연령, 권력 종사상 지위, 이직 이유, 권력 취업년수, 권력 산업, 권력 직업
신규취업자	1년전 활동상태, 연령, 종사상 지위, 신규취업이유, 산업, 직업

고용구조조사는 유업자 접근법으로 경제활동을 정의하여 취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확대된 취업자 범주를 동질적인 하위범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종사상의 지위 뿐 아니라 고용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변수-유업상태(주로 일함, 틈틈이 일함-가사, 통학, 기타), 연간취업일수, 취업의 규칙성, 평일 취업시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연간취업일수는 200일을 기준으로 두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업자 기준이 연간 취업일이 30일이고 간헐적인 취업자가 많은 여성 노동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범주를 세분화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취업의 규칙성은 불규칙 취업, 계절적 취업, 규칙적 취업의 3가지 범주<sup>110)</sup>

110) 불규칙적은 일이 있을 때만 또는 비활 때만 일하는 경우, 계절적은 농번기, 생애기 등과 같이 특정적인 계절에만 일하는 경우, 규칙적은 요일을 정하여 몇일 또는 매월 날짜를 정하여 몇일간 규칙적으로 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로 구분하고 규칙적 취업은 평일 취업시간에 따라 4시간 미만, 5-6시간, 7-8시간, 9-10시간, 11-12시간, 13시간이 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유업자(취업자)는 전직 희망자, 계속취업희망자, 추가취업희망자로 세분화하여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고용구조조사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성별로 분리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성별 뿐 아니라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연령, 교육정도와 같은 개인 및 가족 특성별로 분리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어서 가족과 개인특성과 연관된 남녀의 노동시장 참가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유업상태, 교육정도, 혼인상태 및 종사상의 지위별로 유업자와 혼인상태, 연령계층 및 연간취업일수, 취업규칙성, 평일취업시간별 유업자는 4차원과 5차원의 변수 구분을 통하여 노동시장 참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인구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와 그렇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양분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발간하고 있는 반면 「고용구조조사」는 무업자를 취업의사유무별, 구직활동유무별, 1년전 활동 상태별, 일을 원하는 이유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별로 세분화하여 자료를 발간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의 노동력 현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구조사를 기초로 하는 「고용구조조사」에서는 사업체 형태 및 규모별 취업자의 남녀 차이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력이 공식부문보다는 영세사업체와 비공식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을 분리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 및 발간이 요구된다.

## 나. 노동부

### 1)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는 상용근로자수 1~4인 소규모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

조사는 1994년에 첫 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10월을 조사기준기간으로 농·임·어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4인 규모의 사업체 중 14,000개 표본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sup>111)</sup>

표본들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용근로자가 1~4인 전사업체를 지방노동관서별, 산업중분류별로 분류하여 사업체명부를 작성하여 만들었으며, 전국 46개 지방관서의 임시 통계조사원이 선별된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타계식 면접조사로 조사하고 있다.

<표 V-10>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의 조사항목

조사항목	범주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요생산품목	
사업체형태	단독사업체/본사/지사/지점/영업소 등
임금인상여부, 상여금지급여부, 퇴직시 퇴금지급여부	정률인상(인하)/정액인상(인하)/변동없음 정률지급/정액지급/미지급 지급/미지급
휴일휴가 실시상황	휴일수/하계휴가/경조휴가/연차휴가
사업체의 성별종사자지위별 근로자수	상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수/수습근로자수
성별	남자/여자
연령	
학력	중졸이하/고졸/초대졸/대졸이상
입직경로	연고자 소개/공개채용/학교·학원 추천/직업소개소/기타
근속년수	년/월
경력년수	1년미만/1~3년미만/3~4년미만/4~5년미만/5~10년미만/10년이상
직종명(직무내용)	
실근로일수	정상근로일수/휴일근로일수
실근로시간	정상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임금산정기준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연봉급
월급액	임금총액/초과근무수당
특별급액	

111) 농·임·어업외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학교·병원·도서관, 국제기구 및 기타의 외국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여 사업체에 관한 사항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요생산품명, 사업체형태, 휴일·휴가실시 상황, 사업체의 성별 종사상지위별 근로자수 등을 조사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sup>112)</sup>은 성별, 연령, 학력, 입직경로, 근로년수, 경력년수, 직종명(직무내용), 실근로일수, 실근로시간, 임금산정기준, 월급여액, 특별급여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보고서의 발간은 다음해 5월 중 4~7개 변수를 조합하여 조사항목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통계표는 8개의 범주의 표를 분석하고 있고, 모든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성별 구분하여 제시할 뿐 아니라, 성별 연령, 성별 월급여액, 성별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수 등의 변수로 1~4인의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특히 표본조사임에도 조사결과를 산업과 직업의 중분류까지 성별로 상세히 통계표를 제공하고 남녀의 노동력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가 조사항목의 대부분을 성별 변수를 통해 자세히 발표하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여전히 성인지적 관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근로자에 대한 사항의 경우 조사된 다양한 변수를 통해 남녀의 노동상태를 여러 방향으로 잘 분석하여 놓았으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상용근로자로 한정시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종사상지위에 대한 통계표를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의 종사상지위를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습근로자로 나누어 기입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발간에선 상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수습근로자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변수와의 분석은 물론이고 성별 등 기본적 총량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112) 상용근로자만 조사함.

<표 V-11>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발간 통계표

- 산업중분류별, 성별 연령,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및 근로자수
- 산업대분류별, 학력별, 연령계층별, 성별 연령,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및 근로자수
- 직종대분류별, 학력별, 연령계층별, 성별 연령,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가특별급여액 및 근로자수
- 산업중분류별, 근속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 산업대분류별, 연령계층별, 임금계층별(임금종액), 성별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수
- 직종대분류별, 연령계층별, 임금계층별(임금종액), 성별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수
- 직종중분류별, 성별 연령,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및 근로자수
- 직종중분류별, 경력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구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의 5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5,500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6월 한 달을 기준으로 노동부 주관 하에 매년 실시된다.<sup>113)</sup>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조사항목은 <표 V-12>와 같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산업별 근로자의 평균 연령, 근속년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및 근로자수를 성별로 분리하여 발간하고 있다. 성별 이외에 학력, 연령계층, 혼인상태, 경력년수 등의 개인 특성변수별로 분리하여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다른 조사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직급별 분포를 발간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서 남녀 지위의 차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통계를 제시하는 주요 분리변수로 직종, 사업체 규모, 임금

113) 자세한 사항은 제4장 참조

<표 V-1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조사항목

조사항목	범주
성별	-
연령	-
혼인상태	미혼/기혼
학력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
직종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전문개기술공 및 준전문가/사무직원/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장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단순노무직 근로자
산업	농업, 임업 및 수렵업/어업/광업/제조업/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숙박 및 음식점업/운수, 창고 및 통신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근속연수	-
경력연수	1년 미만/1-2년/3-4년/5-9년/10년 이상
직급	임원/부장/과장/계장/실장/조장/반장 비직급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정상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월급여액	정액급여/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액	-
최저임금적용여부	-

계층을 적용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서 남녀별 노동력 분포와 근로상태의 차이를 알려준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견된다.

첫째, 유급종업원이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여성 노동력이 집중된 간이판매점이나 영세사업체, 가사서비스업 등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외되어서 성별 노동조건 및 상태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통계표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소득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월급여는 정액급여(기본급+기본급이외의 급여)와 초과급여의 두 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남녀간에 차이가 크다고 예측되는 기본급이외의 급여-연령급, 근속급, 능률급, 가족수당, 직무수당에서의 성별 차이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 3) 매월노동통계조사<sup>114)</sup>

「매월노동통계조사」는 5,6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상용고용 및 노동이동, 임금, 근로시간의 변동상황을 조사하여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사기준기간은 매월 급여계산기간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표 V-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13>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조사항목과 답변분류

조사항목	범주
사업체 명칭	-
사업내용 및 생산품명	한국표준산업분류
근로자수	전체근로자-시간제 근로자구분 상용/임시/일용 남녀
근로자수	권월말 근로자수/당월 입직자수-신규채용자수/당월 이직자수-퇴직해고자수/당월말 근로자자수
근로일수 및 시간수	출근일수-정상출근/휴일출근 근로시간수-저당근로/초과근로
월급여액	정액급여(기본급 및 계수당)/초과급여(연장근로, 휴가근로, 야간근로수당)/특별급여(상여금 등)
기타급여	연월차수당/임금인상소급분/제력단련비/성과급/학자금/휴가비/기타

조사결과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상용근로자수, 노동이동,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월 급여액이며 주요 분리변수는 산업, 사업체 규모, 성별로서 산업대분류별, 규모별, 성별

114) 자세한 사항은 제4장 참조

통계표와 산업종분류별, 규모별, 성별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의 성별 이외의 개인특성-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등-은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변수에 따른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 노동시장내 노동이동의 역동성에 대한 남녀 간 차이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만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월급여의 범주가 세분화되지 않아서 남녀 간 임금 차이가 임금의 어느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



##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171
2. 정책제언	177

---

## 1. 결론

노동통계가 노동시장내의 남녀간 현실적 차이점과 유사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여성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경제활동의 미세한 변화들을 포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 가. 노동통계의 주제

CEDAW와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개진하고 있는 노동통계에 관한 성 인지적 관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성과 남성의 경제에 대한 기여를 완전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공식부문의 통계 강화, 무보수 노동 또는 비시장 노동에 대한 자료수집의 개선, 여성의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과소 평가하는 측정방법 개선, 가구의 소득 및 기타 특성과 여성노동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조사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노동통계의 주제를 검토한 결과 무보수 노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족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통계조사가 부족하다. 둘째, 가구의 소득과 분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맞벌이 부부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가구소득에의 기여정도는 가족내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셋째, 도시 비공식 부문에 대한 통계가 빈약하다. 여성의 경제에 대한 기여는 남성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는데 남성에 비해 자료수집이 어려운 비공식부문의 종사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무보수 노동에 관한 조사가 빈약하다. 무보수노동의 주요 유형으로는 가사노동, 무급가족종사자 노동, 자가소비를 위한 노동, 자원봉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노동은 남성이, 무보수노동은 여성의 참여도가 높다. 북경행동강령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완벽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보수 및 무보수 노동의 불평등한 분포를 가시화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사용조사를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1999년에 본격적인 시간사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무보수노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조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계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의 특성에 따른 심층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의 취업현상에 대한 횡단조사와 더불어 종단조사라 할 수 있는 생애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남성은 학교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일정 연령전까지 경제활동상태를 지속하나, 여성은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상태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보인다. 대표적인 이동유형의 하나로 출산이후의 노동시장 퇴장과 자녀양육기를 마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들 수 있다.

#### 나.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와 분류에 따라 통계조사 결과 경제활동 상태가 왜곡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일에 대한 개념의 문제이다. 현재 노동통계에서 취급하는 일의 범위에는 판매와 교환을 위한 생산과 용역제공이 포함되나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활동은 일부만이 포함된다. 그런데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의 경제에 대한 총기여를 노동통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경제활동인구의 분류에서 실업자에 대한 개념이다. 현재 주요 노동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의 기준으로 취업희망여부, 지난 1주간 구직활동 여부, 지난 1주간 일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의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에 한해서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구직활동기간 대해서는 4주와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소위 숨겨진 실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공식집계발표가 없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집단에는 여성 뿐 아니라 학생, 고령자 등 소위 취약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실업률의

개발과 각각의 실업자 집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무급가족종사자의 기준으로 일반 취업자와 동일한 기준인 주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에 포함할 것을 ILO에서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18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높게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일한 시간이 1시간 이상 18시간 미만인 무급가족종사자가 누락되고 있으며, 이들의 규모조차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다. 조사방법

노동통계를 수집하는 대표적 방법은 가구조사, 사업체조사, 행정통계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사업체 조사는 특정기간 동안 고용시간, 임금과 근로기간에 대한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축적된 조사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체 조사는 정규직 피고용자만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계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으며, 사업체 조사시 조사문항이 제한적이어서 성별 차이를 충분히 보여 주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행정통계는 수집비용이 적게 들고 작은 행정단위까지도 조사가 가능한 이점이 있으나, 통계작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단만이 조사되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 대상이 아닌 경우 누락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재해에 관한 통계의 경우 공식적으로 보고된 상해만 집계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의 경우 누락될 확률이 높아 과소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 가구조사는 수집자료의 종류와 범위, 기본적 개념, 자료항목의 정의와 분류에서 조정이 가능하여,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가장 보편적인 조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구조사시 설문지의 작성과 조사과정에서 통계의 오류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 라. 가구조사의 설문지 구성과 조사과정

가구조사시 설문지 구성은 수학적 방법으로 크기를 가능할 수 없는 비표본

오차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설문지 구성시 제기되는 문제로는 정의와 인지의 측면에서 핵심단어 중심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일의 개념과 정의에서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분류 문제는 직업, 산업 등과 질문의 답항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의 세분화와 누락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조사과정에서 가져오는 대표적인 오류로는 정의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와 주관성에 의한 오류와 조사표 기입에 따른 조사원의 오류를 들 수 있다.

#### 마. 성별 분리 통계 작성과 발표

통계조사의 주제선정과 조사과정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수행하였더라도, 최종 생산단계인 통계의 작성과 발표에서 통계표를 분리하지 않거나, 성별 특수성을 나타내는 통계를 간과한다면 수요자가 성 인지적 통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인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경제활동편」, 「경제활동인구연보」, 「고용구조조사보고서」와 노동부의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 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는 유업자에 대해서는 상태별로 자세하게 분류하여 보여주고 있으나 무업자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일을 하지 않는 배경 변수(가사, 통학, 기타)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발간되지 않았다.<sup>115)</sup>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을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성별 분포를 타나내는 자료가 발간된다면 절반 이상의 여성노동력의 실태를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임금 및 봉급근로자도 고용상태 및 지위에 따라 성별로 구분된 자료는 발간되지 않았다. 자영업자는 세분화되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하위범주들이 같은 집단으로 취급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115) 2000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음.

「경제활동인구연보」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를 1999년부터 세분화하여 이전에는 상용과 임시, 일용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자료를 제시하였다.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는 또한 계절조정 실업률을 제외하고 남녀로 구분하여 통계를 발간하고 있어서 자료의 성별 차이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및 가족사항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상태, 가족형태, 그리고 영유아 자녀유무별 여성의 노동력 참가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는 발간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1999년부터 많은 수의 여성이 포함되리라 예측되는 불완전취업자 및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조사 항목을 보완하여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도 보고서 내용은 이전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사한 정보를 발간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고용구조조사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성별로 분리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성별 뿐 아니라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연령, 교육정도와 같은 개인 및 가족 특성별로 분리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어서 가족과 개인특성과 연관된 남녀의 노동시장 참가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무업자를 취업의사유 무별, 구직활동유무별, 1년전 활동 상태별, 일을 원하는 이유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별로 세분화하여 자료를 발간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의 노동력 현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어 사업체 형태 및 규모별 취업자의 남녀 차이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력이 공식부문보다는 영세사업체와 비공식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을 분리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 및 발간이 요구된다.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조사항목의 대부분을 성별 변수를 통해 자세히 발표하고 있지만 근로자에 대한 분석을 상용근로자로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총량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습근로자는 보고서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가 보다 성인지적인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용근로자로 제한한 조사표의 수정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이미 조사되고 있는 종사상지위에 대한 성별 통계가 발간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산업별 근로자의 평균 연령, 근속년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및 근로자수를 성별로 분리하여 발간하고 있다. 성별 이외에 학력, 연령계층, 혼인상태, 경력년수 등의 개인 특성변수별로 분리하여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다른 조사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직급별 분포에 대한 통계를 발간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서 남녀 지위의 차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통계를 제시하는 주요 분리변수로 직종, 사업체 규모, 임금계층을 적용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서 남녀별 노동력 분포와 근로상태의 차이를 알려준다. 그렇지만 동 보고서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견된다. 첫째, 유급종업원이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여성 노동력이 집중된 간이판매점이나 영세사업체, 가사서비스업 등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외되어서 성별 노동조건 및 상태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통계표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소득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월급여는 정액급여(기본급+기본급이외의 급여)와 초과급여의 두 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남녀간에 차이가 크다고 예측되는 기본급 이외의 급여-연령급, 근속급, 능률급, 가족수당, 직무수당-에서의 성별 차이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상용근로자수, 노동이동,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월 급여액이며 주요 분리변수는 산업, 사업체 규모, 성별로서 산업대분류별, 규모별, 성별 통계표와 산업중분류별, 규모별, 성별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노동이동의 역동성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는 「매월노동통계보고서」만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성별 이외의 개인특성-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등-은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포함한 노동이동 발표가 불가능한 점이 있다. 또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월급여의 범주가 세분화되지 않아서 남녀간 임금 차이가 임금의 어느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

## 2. 정책제언

### 가. 제도의 개선

#### 1) 성 인지적 노동통계의 담당조직의 개설

우리 나라의 주요 노동통계는 통계청과 노동부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조직상 성 인지적 관점에서 통계생산을 담당할 주요 담당부서가 부재하여, 생산작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 혹은 노동부에 담당부서 혹은 담당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당부서 혹은 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성 인지적 노동통계 생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현재 생산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개선, 통계 담당자 및 관련자에 대한 성 인지적 관심제고를 위한 훈련실시 등이 될 것이다.

#### 2) 사용자 집단의 의견 수집을 위한 기구 개설

통계개선을 위한 조직상의 개편작업의 하나로 성 인지적 노동통계를 사용하는 사용자집단을 구성하여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형태로는 첫째, 노동통계의 생산부서와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특별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발간단계에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성 인지적 개선을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수요자 집단은 여성부, 6개부처 여성정책실,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실 또는 과, 여성정책 연구자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능한 형태는 연구조사회설의 결성이다. 여성 경제활동의 특성상 현재의 통계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통계를 어떻게 현재의 통계체계에 편입 또는 수정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설정이나 개념, 용어 등 뿐 아니라 각종 조사표나 발간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과 분야에서 특별히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설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조사회를 결성하여 해결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 3) 성 인지적 통계 생산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노동통계는 여성의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노동통계의 생산부서는 주로 통계청과 노동부이나, 여성의 경제활동의 특성상 여성문제, 노동문제 연구기관과 타 부처의 연계작업이 필요하다. 노동통계생산의 세부계획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 평등의 달성을 원칙으로 하여 구체적인 목표, 주관기관, 시행시기 등에 대해 수립되어야 하며, 다른 조직과의 연계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향후 일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성 인지적 통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기존 조사의 개선사항

### 1) 질문 항목의 추가

#### ○ 근무형태 및 근무장소에 대한 항목 추가

비공식부문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항목 즉 노동형태와 근무장소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면 여성노동의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현재 실업자에 대해 원하는 고용형태와 근무형태에 대한 항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취업자의 경우 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의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공식부문 노동의 증가로 인해 이들 노동력의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두 항목을 「인구 및 주택총조사보고서-경제활동편」과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추가하여 임금근로자에 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 ○ 6세미만 자녀 유무

6세미만의 자녀의 유무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6세미만의 자녀 유무에 대한 질문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6세미만 자녀의

여부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패턴을 알 수 있게 하며 보육시설의 수요파악과 노동력 공급의 예측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6세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원자료 변형을 통해 가능하나 자료변형이 어렵고 접근법의 잦은 변경으로 사실상 시계열적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조사」에 이를 포함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6세미만의 자녀유무를 포함함으로써 기혼여성의 활동상태와 취업구조의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패턴 파악에 중요한 변수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구조조사」의 경우 유업자와 무업자에 대한 다양한 변수와 분석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진입과 퇴장의 원인을 파악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질문 및 답항의 재구성 : 명확성과 세분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공식 실업자가 아닌 비구직 취업희망자에게도 실업자와 동일한 질문인 원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와 근무형태를 조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비구직 이유에 대한 답항에 현실적으로 그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원하는 직장 혹은 직종의 채용차별이 심해서', 직장(일)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한 답항에 '직장내 성희롱 때문에,' '남녀차별 때문에'를 추가하여 여성의 고용상의 차별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용구조조사」의 경우 설문지 중 활동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에서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주로 하는 것'의 분류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음'과 '주로 가사를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의 수정이 필요하다.

### 3) 조사원 교육의 강화

조사원의 오류는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호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들 오류는 근본적으로 경제활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나지만 개

인의 인식차이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부호화 작업에서 조사원은 응답자가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 달리 부호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남자는 취업자 혹은 자영업자로 분류하지만 여자는 무급가족종사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조사원의 교육은 첫째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둘째 남녀 경제활동에 대해 조사원의 편견을 해소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침서의 내용은 남녀 경제활동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능한 형태의 예시를 포함시켜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시 내용 중 특수한 활동상태에 대해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제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4) 발간상의 개선문제

발간과 보급에서 충분히 성 인지적 관점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 많은 여성들의 노동상태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각 보고서에서 성별로 분리 가능한 통계는 모두 분리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성별로 분리할 경우 해당되는 통계수치가 한 성이 극히 적어 통계적인 가치가 없거나, 소요되는 예산이 방대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발간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통계의 우선 순위를 정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기존의 보고서에 성별분리통계를 추가하는 것 외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여성통계연보」나 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과 같은 형태의 편집통계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동과 관련 원자료를 수집하여 재분석을 통하여 성별통계를 생산한 후 가칭 「젠더노동통계」등의 이름으로 통계보고서를 발간한다면 전문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서 200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여성보건복지: 현상과 통계」를 들 수 있다.

## 다. 통계생산을 위한 추가 조사와 연구

### 1) 경제활동 특별조사 실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가구단위의 노동통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조사」, 「인구 및 주택 총조사-경제활동 편」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 정확하게 조사되고 또 매월조사로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사내용이 풍부하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 반면 「고용구조조사」는 조사 항목이 다양하고 비공식 부문과 비정규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반면 조사주기가 5년으로 길고, 유업자 접근법으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연계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지를 보완한 「경제활동특별조사」를 제안한다. 특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 가능한 통계로서 기존 조사항목에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실시하고, 조사항목에 매년 특별조사항목을 포함하여 숨겨진 노동력을 가시화하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본의 크기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크기로 조사해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포함될 특별조사항목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여성노동, 비공식부문노동, 연소·노령노동, 노동이동 등 일련의 순서를 정해 조사하되 4~5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조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활동형 설문조사 실시

현재 노동력 조사의 활동상태는 핵심단어형 질문을 통해 분류하고 있다. 이들 단어는 활동상태를 분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회·문화적 성 역할 의식, 응답자의 태도와 능력에 따라 통계수집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음을 여러 실험조사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오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핵심단어형 설문지로 활동상태를 구분하는데 이는 이론적 접근과 분석 그리고 자료수집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 인지적 노동통계가 남녀의 노동력을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지하느냐의 문제로 본다면, 이론적 접근의 편리성과 다양한 분석의 가능성과는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응답자가 노동력 정의에 적합한 바람직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주요 노동력에 대한 특별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가능한 방법으로 각종 활동에 대해 나열하여 활동한 것을 체크하게 하는 활동형 설문지 사용을 들 수 있다. 활동형 설문지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조사된 노동력 자료를 필요에 따라 다른 목적과 정의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으며, 둘째 개개인의 활동이 얼마나 완전히 경제에 통합되어 있고 불완전고용 범위에 통합 가능한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것으로, 활동형 설문지는 여성에 의해 행해진 많은 활동을 손쉽게 합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동형 설문지는 잘 훈련된 조사원이 필요하고 또한 면접조사시간과 자료 처리 비용이 매우 높다.

이를 감안하여 활동형 설문조사를 핵심단어형 설문조사시 병행조사 할 것을 제안한다. 조사방법은 핵심단어형 설문조사의 보조설문 형식으로 조사되는 것이 비용과 노동력 통계의 비교 측면에서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주기는 「경제활동특별조사」와 더불어 실시하되 여성노동력에 대한 특별조사가 이루어질 때와 맞춰 보조설문지로 작성해 4~5년 주기로 1회 실시하면 될 것이다.

### 3) 특정 주제에 대한 추가조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동통계는 여성과 관련된 예민하고 특수한 노동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특유한 경제활동 상태의 파악을 위해서는 여성의 출산력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의 변화, 가구원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참여시간과 소득, 비공식부문에의 참여규모 및 특성,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실태, 영세규모 사업체의 노동실태 등에 대한 추가조사 및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태홍·문유경(2001), 「여성 무급노동의 경제적 평가와 정책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UNDP·여성부
- 문유경(1999), 「성 인지적 통계자료 구축」,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박래영 외(1996),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방향에 관한 종합보고서」, 경제활동인구조사개편연구회 미발간자료
- 윤진호(1986), 「도시 비공식부문의 노동력이동에 관한 일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5집, 인하대학교.
- 이재인(1997), 「공식통계에 대한 여성학적 재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복, 권태환(1986), 「경제인구학」, 서울대 학출판부.
- Adriana Mata Greenwood(1999), "Gender issues in labour statistic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8 no 3.
- Adriana Mata Greenwood(2000), *Incorporating Gender Issues in Labour Statistics* ILO, Bureau of Statistics.
- Anker, R., Khan, M. E., and Gupta, R. B.(1987) "Biases in measuring the labour force: Results of a methods test survey in Uttar Pradesh, India", *International Labour Review*, no. 2, March-April.
- L. Beneria(1999), "The enduring debate over unpaid labour,"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8 no 3.
- ILO(1982),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Thir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 ILO(1993), "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 ILO(1993),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 ILO(1998), "Resolution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underemployment and inadequate employment situations," Six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 ILO(1990),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bour statistics: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A critique of current definitions and data collection methods*.
- Rapph Turvey(ed)(1989),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bour statistics*. London: Pinter Publishers.

- S,Elder and L.J. Johnson, "Sex-specific labour market indicators: What they show",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8 no 4.
- UN(1984). *Improving Concepts and Methods for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 United Nations, New York, UN.
- UN(1995). *The Advancement of Women 1945-1995*. New York, UN.
- UN(1991, 1995,2000). *The World's Women* New York, UN.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 UNDP · UNSD · ILO(1998). Report Expert Group Meeting on Gender Issues in Labour Force Statistics.
- UNDP · UNSD · UNIFEM · 정부제2장관실, 한국여성개발원(1997), *Workshop of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 Waring, Marilin. *If Women Counted: A new Feminist Economics*. New York: Harper, 1988.
- 伊藤陽一 編著, 1994, 「女性と統計 —ジエダ—統計論序説—」 辛出版社

#### 인터넷 주소

- <http://www.nso.go.kr>  
<http://www.stat.go.jp>  
<http://www.ilo.org>  
<http://www.un.org/depts/unsd/timeuse/tusresource.htm>  
<http://www.unescap.org/stat/meet/techmeet.htm>

#### 참고 통계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각년도).
- 노동부,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각년도).
- 노동부, 「매월노동실태조사」.(각년도).
- 노동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각년도).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2000), 「경제활동인구조사지침서」.
- 통계청(1984, 1987, 1990, 1993, 1998), 「고용구조조사보고서」.
- 통계청(1997), 「고용구조조사지침서」.
- 통계청(1992, 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지침서」.
- 통계청(1992), 「한국통계발전사 I, II」.
- 통계청(1994),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 경제활동인구조사 30년」.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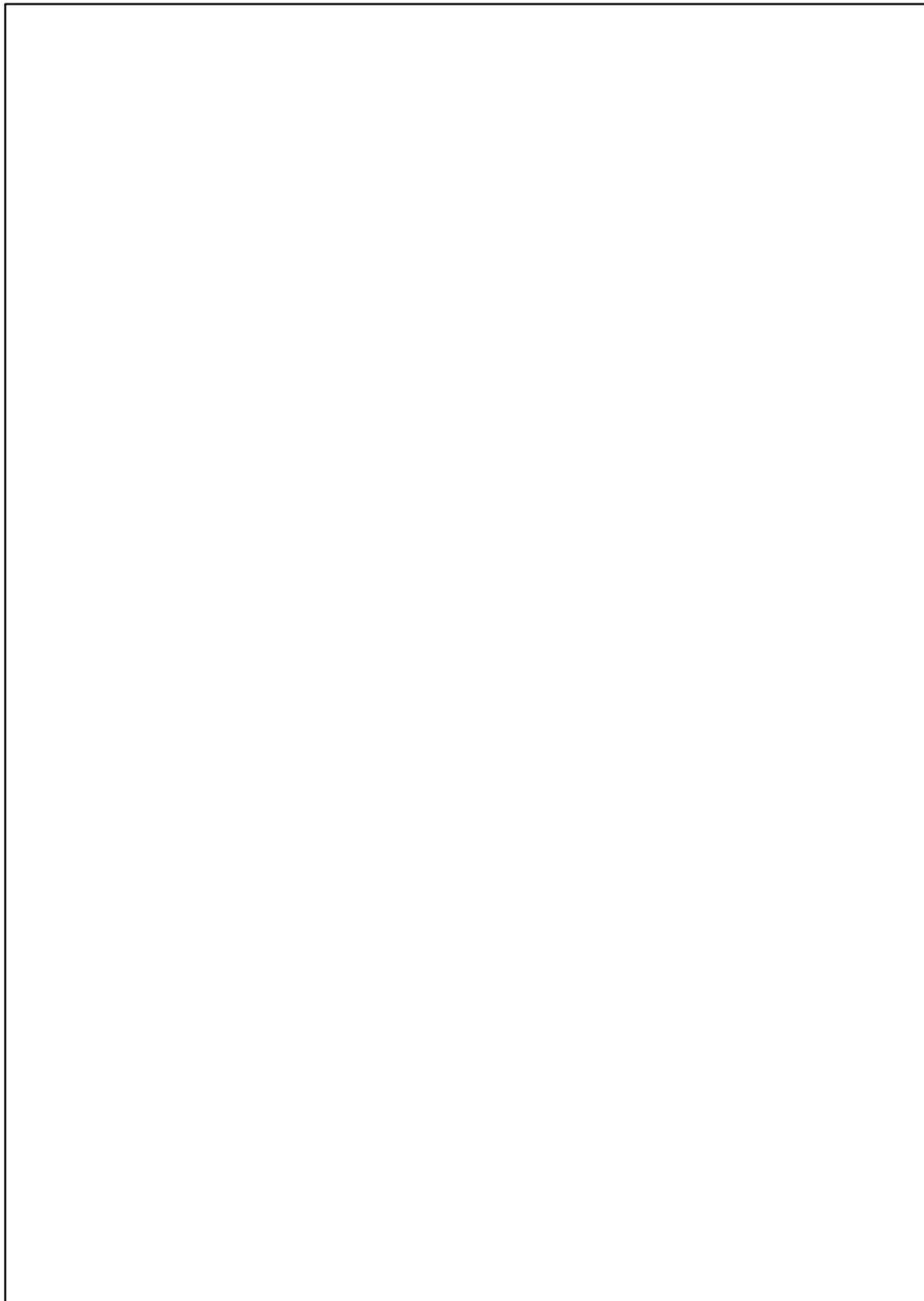
---

1. 「2000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187
2.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경제활동)	188
3. 「고용구조조사」 조사표	189
4.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조사표	194
5. 「매월노동통계조사」 조사표	195
6. 「임금구조기본통계개인조사」 조사표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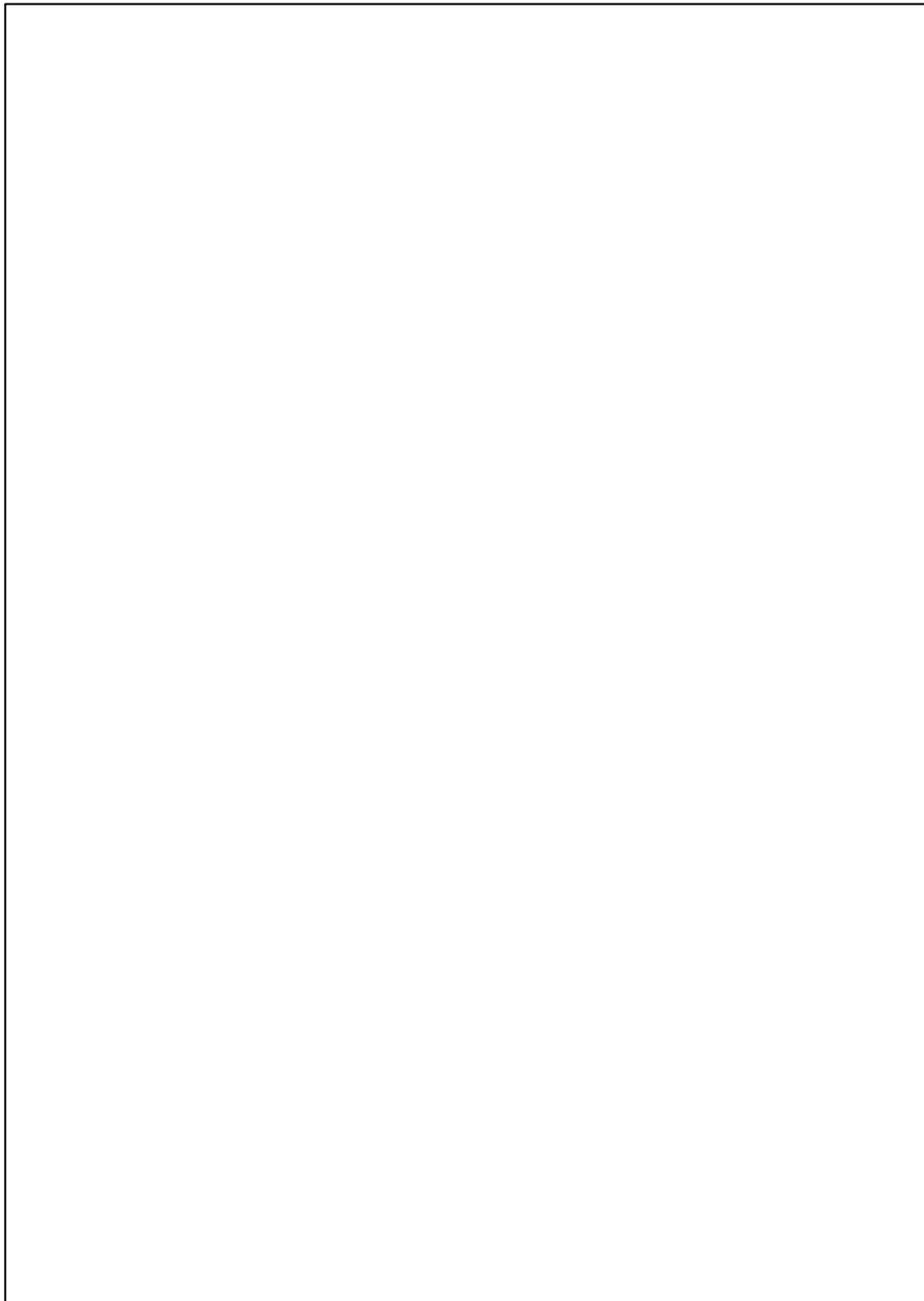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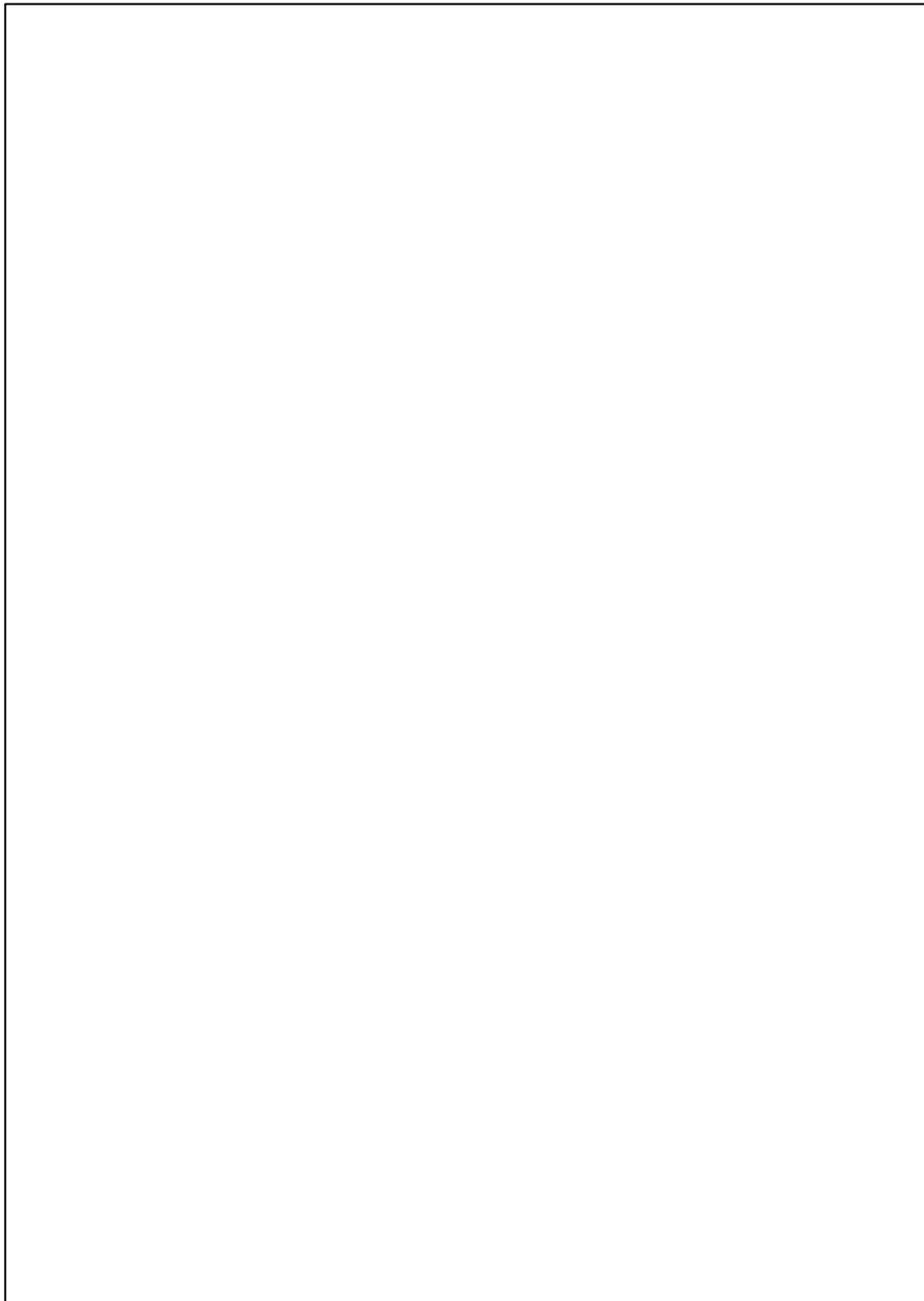
1. 「2000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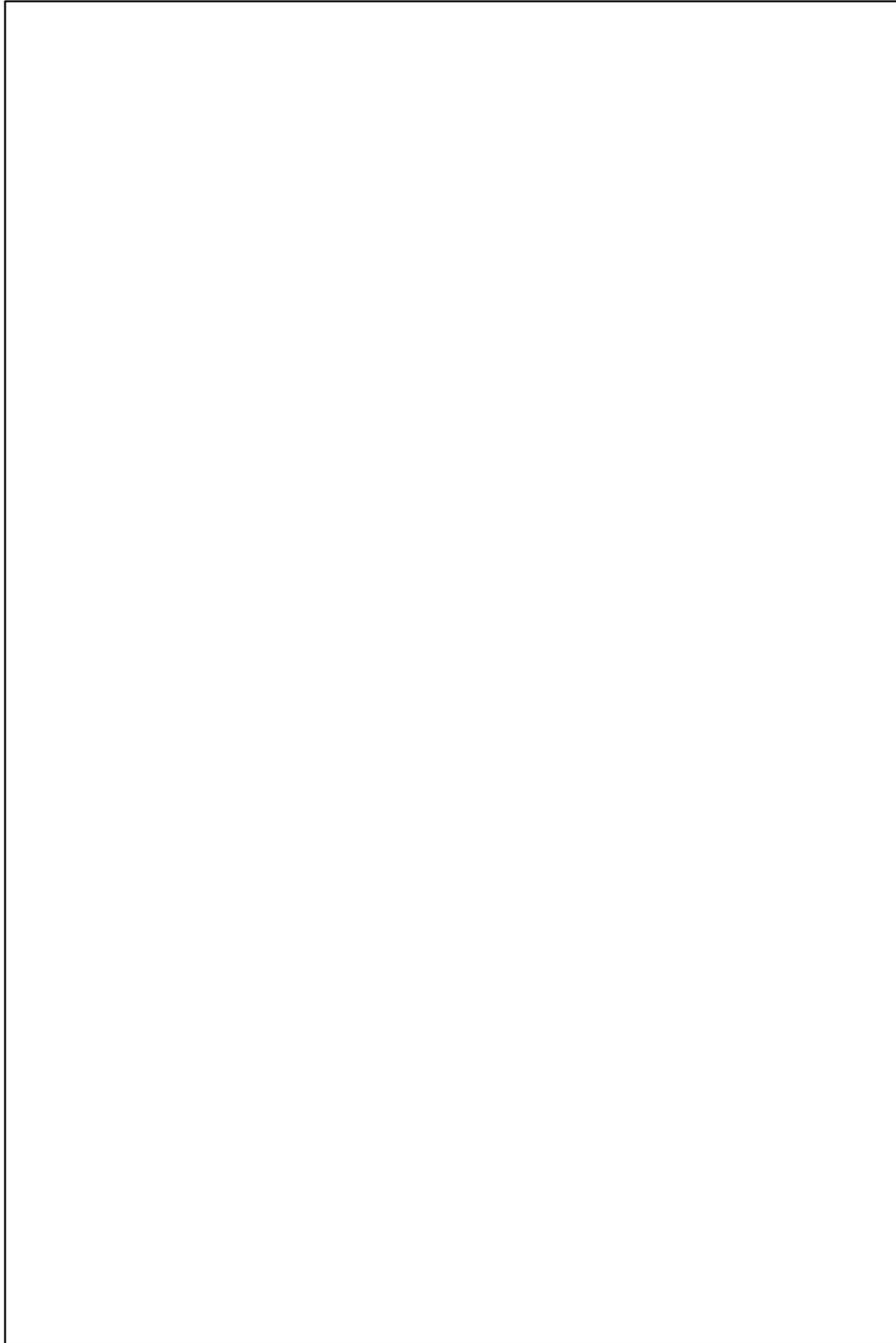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below the title. It is intended to contain the survey form for the 2000 Economic Activity Population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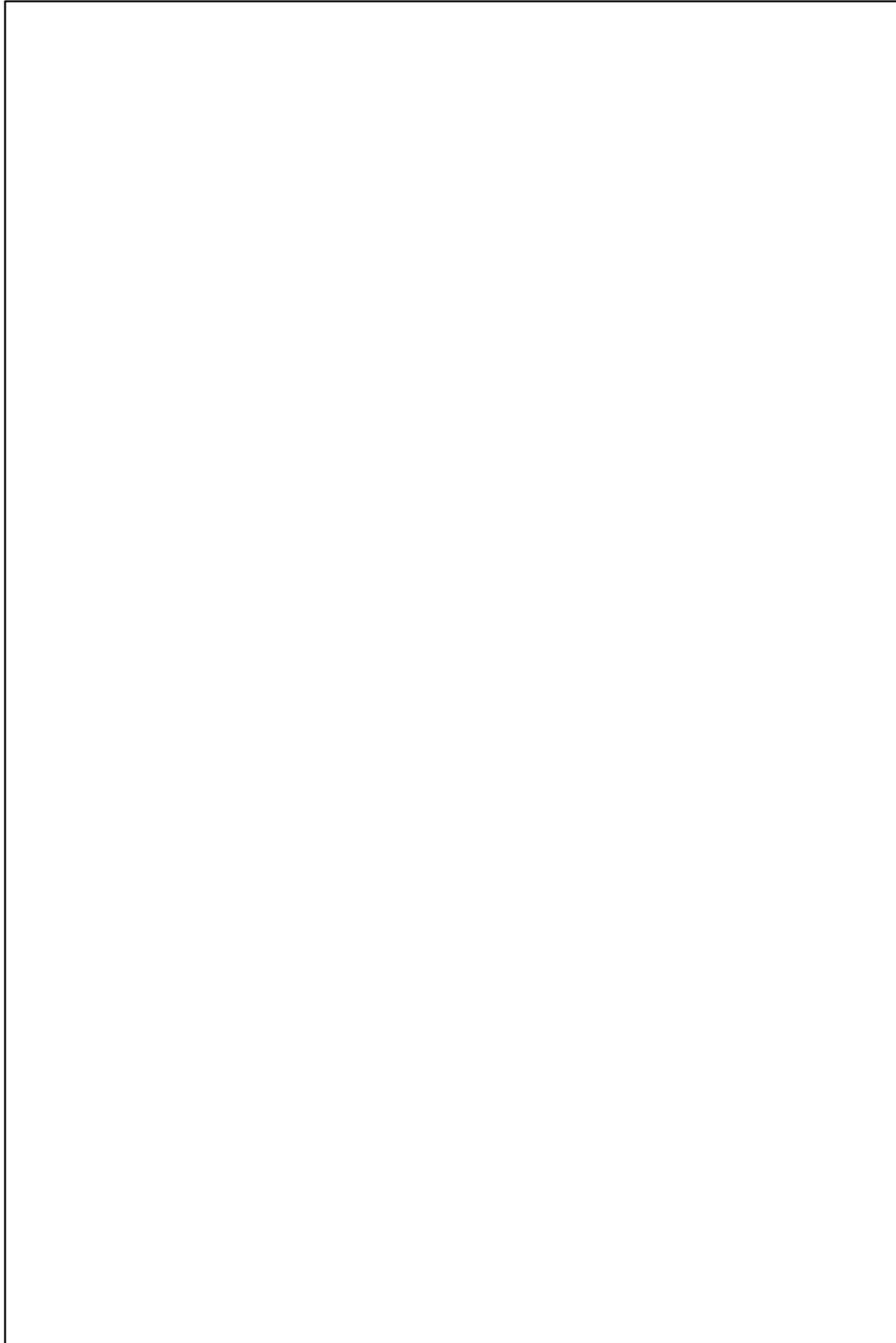
## 2.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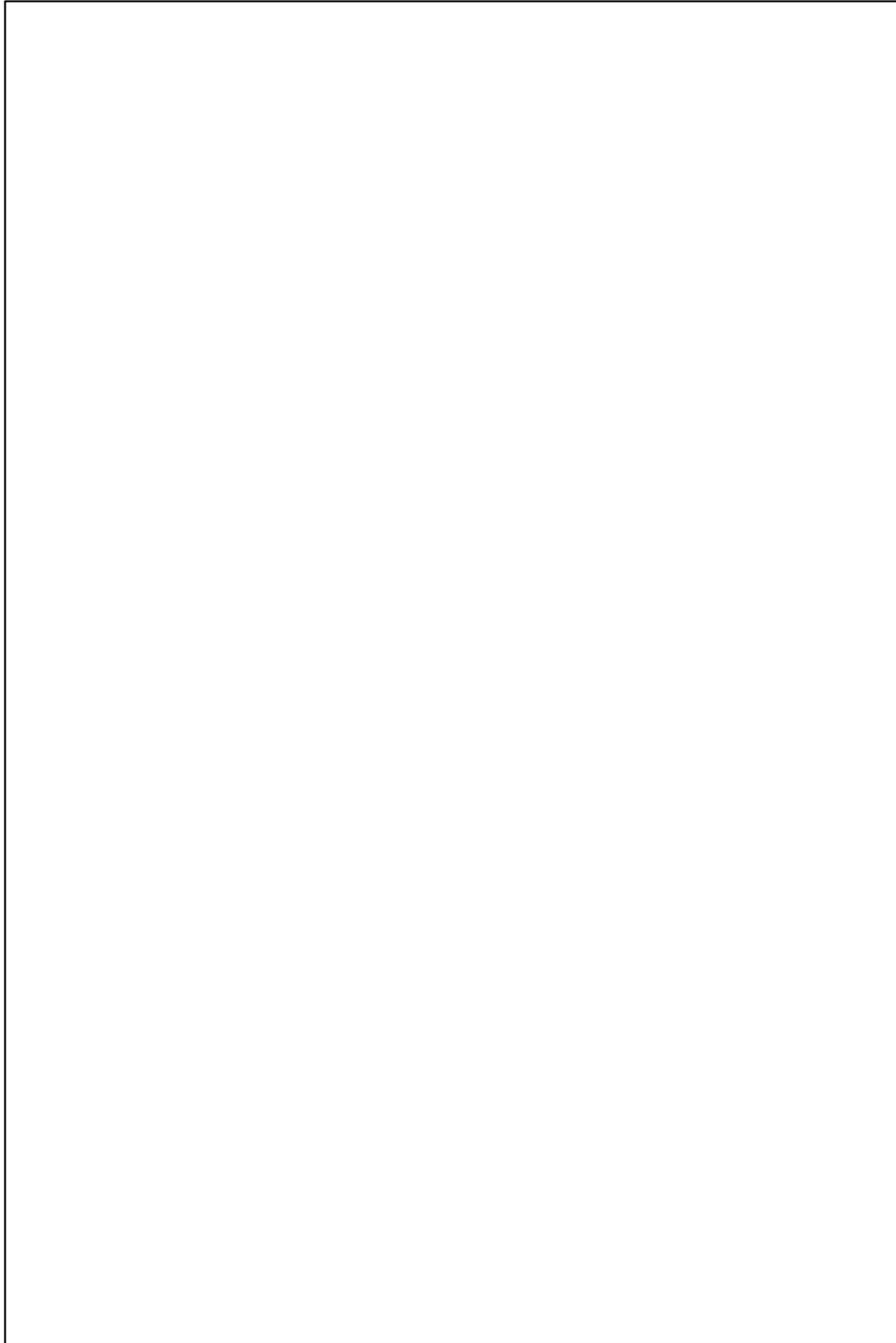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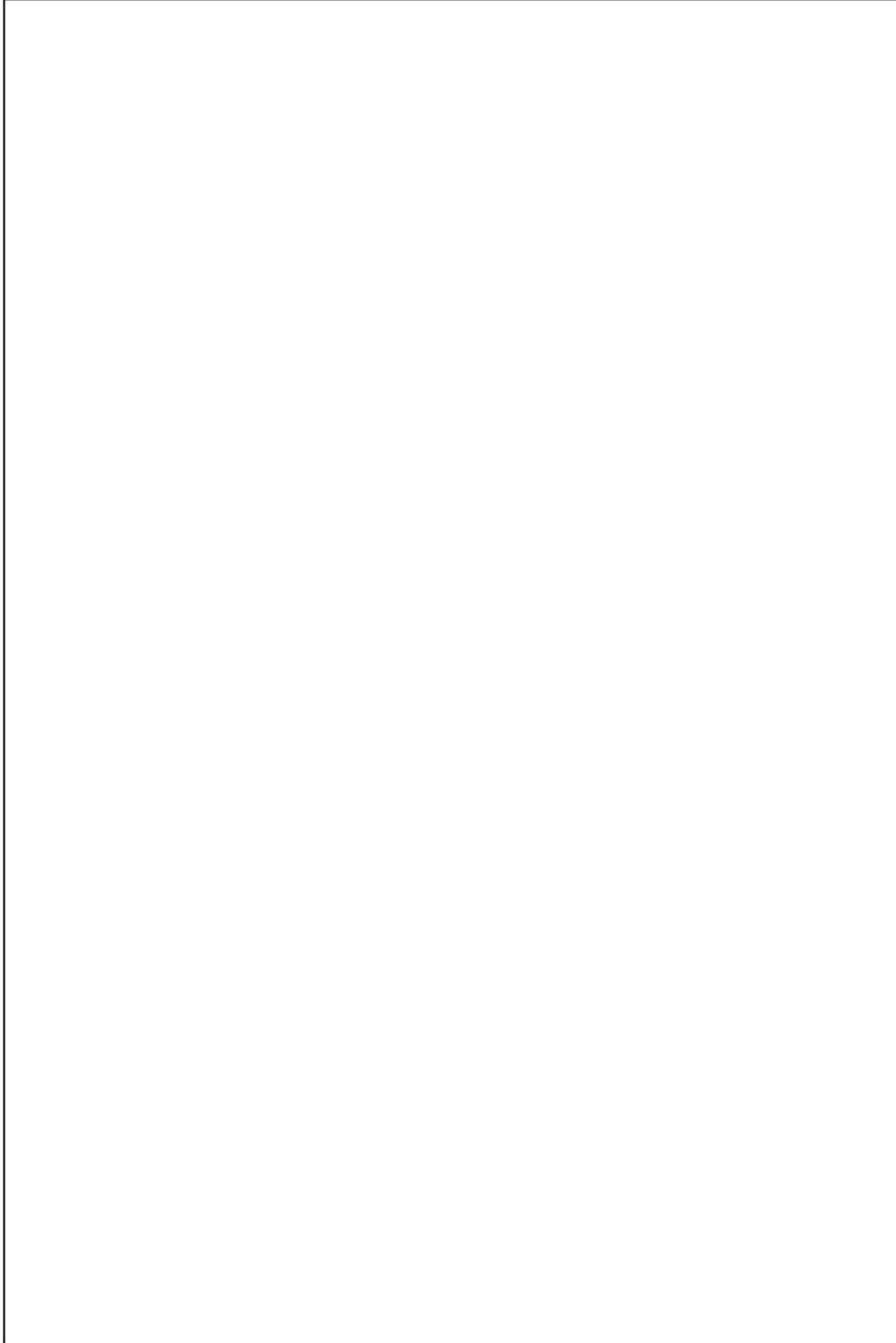
### 3. 「고용구조조사」 조사표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the survey form. The box is currently bl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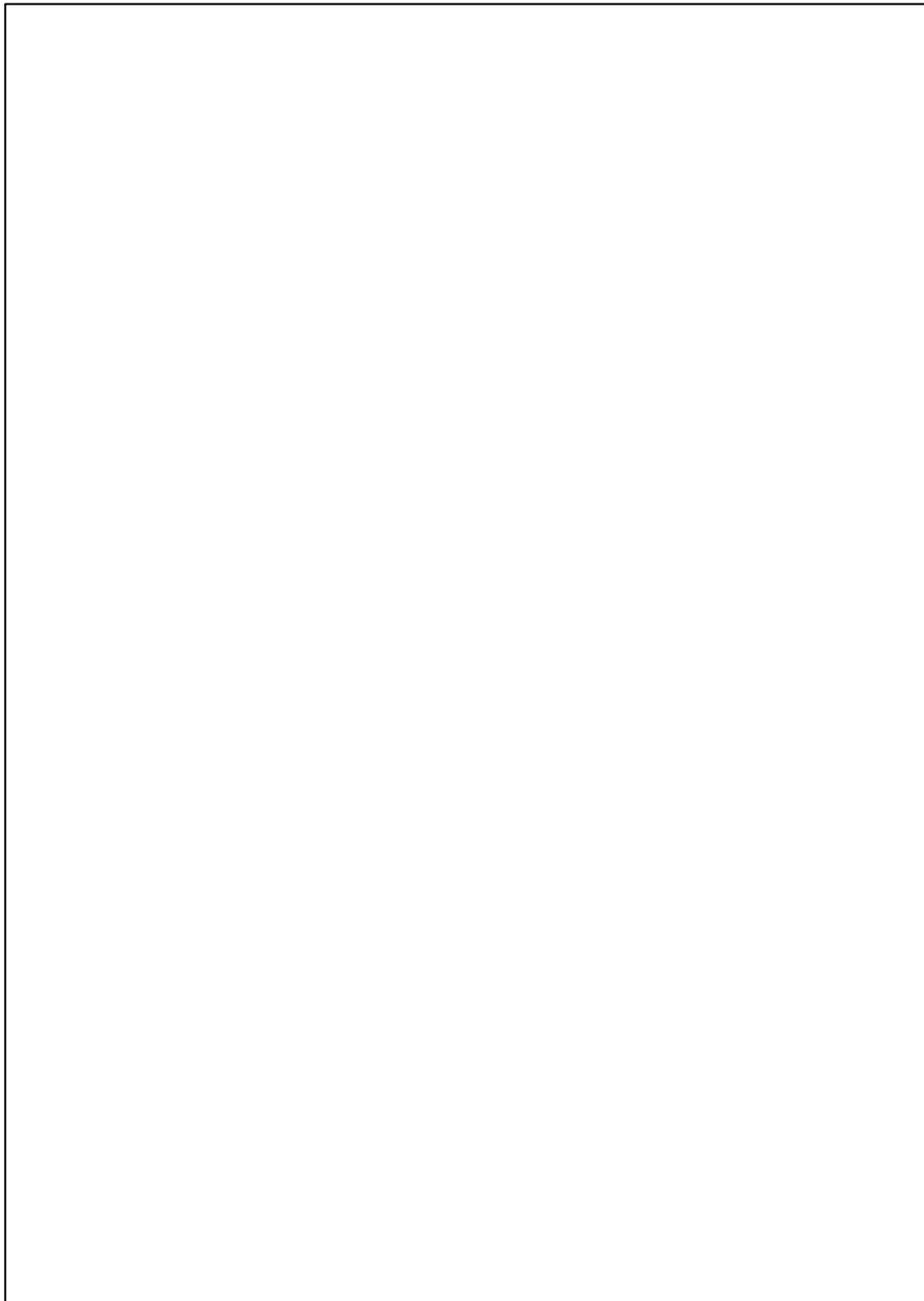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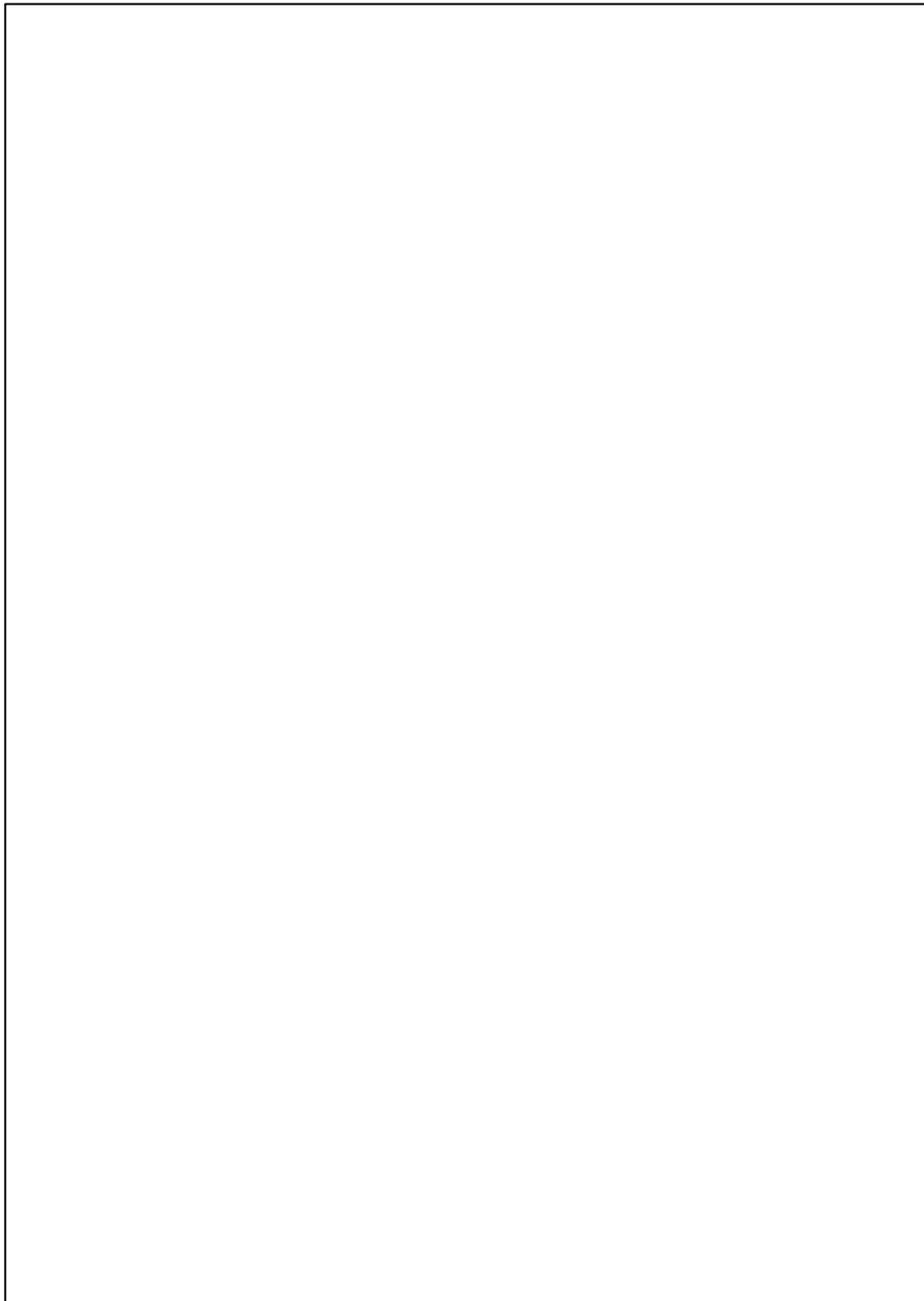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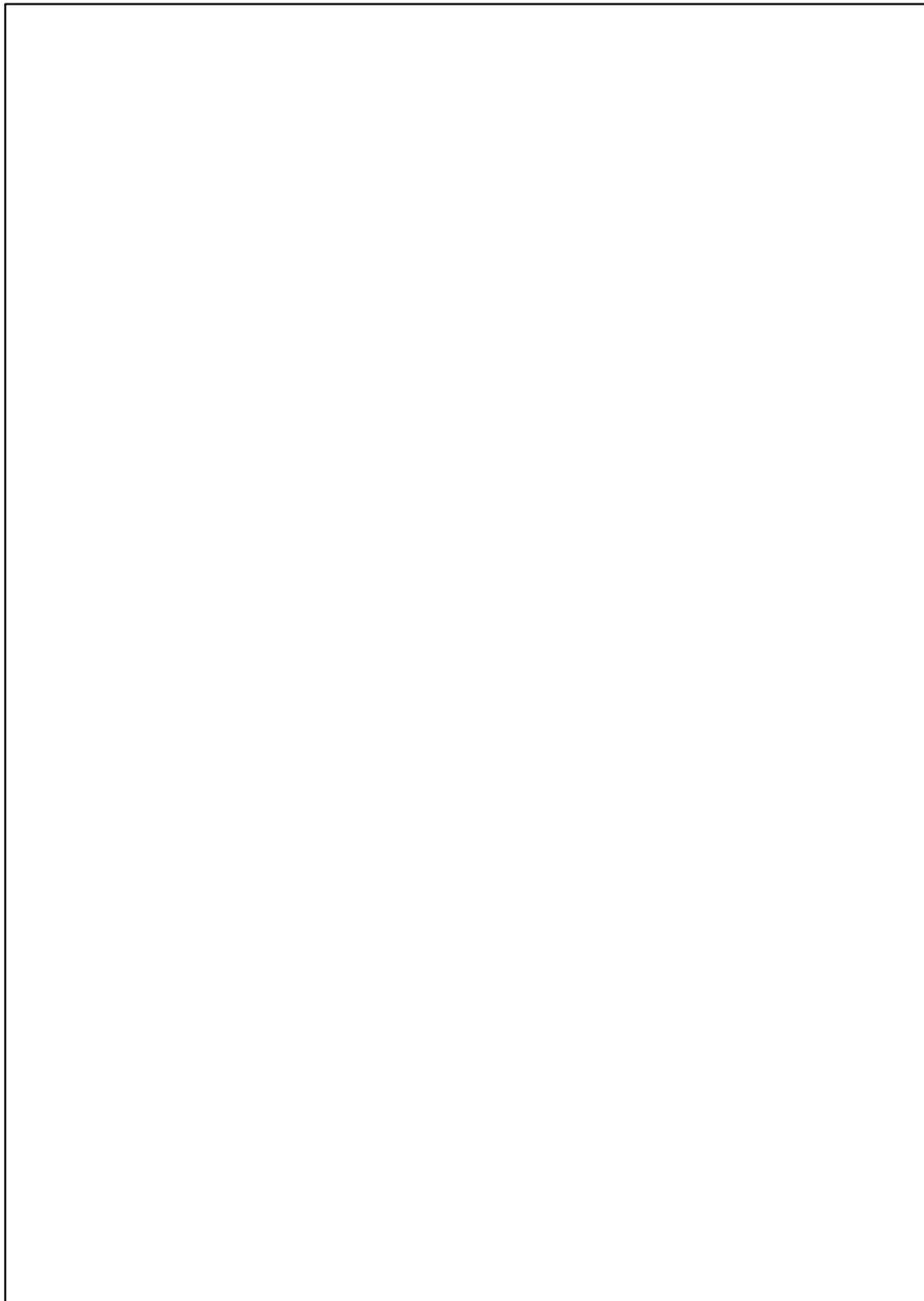
#### 4.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조사표



### 5. 「매월노동통계조사」 조사표



**6. 「임금구조기본통계개인조사」 조사표**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central portion of the page. This box is intended to contain the survey form for the 'Survey on Basic Wage Structure Statistics (Individual Survey)'. The interior of the box is completely blank.

2001 연구보고서 230-8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방안**  
**Gender Sensitive Analysis in Labor Statistics**

---

2001년 10월 15일 인쇄  
2001년 10월 22일 발행

발행인 : **잠 하 진**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56-007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313-7593 (代)

---

ISBN 89-8491-016-3      <정가 6,000원>  
93330